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for the Introduction of Suwon-Type Basic Livelihood Security

한연주

연구진

연구책임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0년 3월 31일
발행 2020년 3월 31일
ISBN 979-11-89160-85-2 (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한연주. 2019.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이다. 동 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적인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총 28차례에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제 및 재산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주거급여의 적정성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2013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부산시, 대구시, 세종시 등)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시에서도 민선7기 100대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를 수원시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쟁점 및 변화(제2장),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사례분석(제3장), 수원시 저소득 관련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제4장),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의 프로파일 및 실태조사 분석(제5장)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1.5%~1.7%로 전국(3.1~3.6%)과 경기도(2.0~2.4%) 평균 수급률보다 낮고, 이미 수원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88개 정책, 384,744,519천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동반적 변화, 소득역전 현상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 부양의무자 폐지 등이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제도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존립 가능성이 더욱 약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원시 비수급 탈락자의 프로파일 분석 결과,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기 때문에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원시 빈곤층도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원시에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와 유사성을 띄고 있는 무한돌봄사업(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과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긴급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대상자를 제외하면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의 특성,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외부환경 변화,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시 수원시의 인력 및 예산투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수원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지원정책의 단계적 확대',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과 지원정책을 연계한 복지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비수급 빈곤층,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및 쟁점	7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9
2. 급여지급의 원칙	9
3. 급여의 기능	10
4. 지원대상 및 수급자 선정기준	10
5. 급여의 종류	1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25
1. 조선구호령(1944~1961년)	26
2. 생활보호법(1961~1999년)	26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999년~현재)	29
4. 향후 변화	40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주요 쟁점	43
1. 부양의무자에 의한 사각지대	44
2.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제도 간의 연계성	45
3. 주거급여의 적정성	46
4.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로 인한 사각지대	46
제3장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사례분석	49
제1절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사례분석	51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51
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58

3. 대구형 기초보장제도	62
제2절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한계	67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동반적 변화	67
2. 소득역전 현상	68
3.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빈곤 사각지대	69
4. 사각지대 발굴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의 실효성	69
제4장 수원시 저소득 관련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73
제1절 수원시 저소득 관련 현황 분석	75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75
2. 차상위계층 수급자 현황	95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자 현황	98
4. 무한돌봄사업(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자 현황	101
제2절 수원시 저소득 관련 지원정책 분석	105
1. 의무정책	105
2. 수원시 자체정책	120
제5장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프로파일 및 실태조사 분석	125
제1절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	127
1. 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개요	127
2.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	129
제2절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실태조사 분석	180
1. 설문조사 개요	180
2. 분석결과	18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7
제1절 결론	229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29
2.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232
제2절 정책제언	238
1.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239

2. 지원정책의 단계적 확대	240
3.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과 지원정책을 연계한 복지플랫폼 구축	240
참고문헌	243
부록	247

표 차례

〈표 2-1〉 2015~2019년 기준 중위소득	11
〈표 2-2〉 소득인정액 및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11
〈표 2-3〉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2019년 기준)	13
〈표 2-4〉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15
〈표 2-5〉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내용	15
〈표 2-6〉 2019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16
〈표 2-7〉 2019년 긴급 생계급여액 기준	17
〈표 2-8〉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8
〈표 2-9〉 2019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및 지원 기준	18
〈표 2-10〉 2019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19
〈표 2-11〉 2019년 교육급여 지원내역	19
〈표 2-12〉 2019년, 2020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20
〈표 2-13〉 2019년 의료기관 등 이용시 본인부담금	21
〈표 2-14〉 보장시설의 범위	23
〈표 2-15〉 사회복지 구성요소 간 비교	26
〈표 2-16〉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1998년 기준)	29
〈표 2-17〉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31
〈표 2-18〉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유형_수급자 자격박탈 및 지원축소	32
〈표 2-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간 선정기준 및 방식 변화	34
〈표 2-2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경과_2013년	36
〈표 2-2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전·후 비교표(2015년)	38
〈표 2-22〉 맞춤형 급여 이후 급여별 수급자 규모 추이	39
〈표 2-23〉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1
〈표 2-24〉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41
〈표 2-25〉 2020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42
〈표 2-26〉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42
〈표 2-2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변화내용	43

〈표 3-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추진과정	52
〈표 3-2〉 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 산출식	53
〈표 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전·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비교(2인 가구)	54
〈표 3-4〉 2019년 서울시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56
〈표 3-5〉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기준	56
〈표 3-6〉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비교	57
〈표 3-7〉 2019년 서울시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 및 최소지원액	58
〈표 3-8〉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2017년 7월 개편 전·후 선정기준 비교	59
〈표 3-9〉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경과	60
〈표 3-10〉 2019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예산	61
〈표 3-11〉 2019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61
〈표 3-1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2018.11.30)	62
〈표 3-13〉 대구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경과	63
〈표 3-14〉 시민행복보장제도 행복급여 사업량 및 소요예산	64
〈표 3-15〉 시민행복보장제도와 타 복지제도와와의 비교	65
〈표 3-16〉 2019년 대구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65
〈표 3-17〉 2019년 대구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66
〈표 3-18〉 2019년 대구형 기초보장제도 행복급여 지급액	66
〈표 3-19〉 2019년 대구 시민행복보장제도 사업추진체계	67
〈표 3-20〉 연도별 추진실적(2013~2018년)	67
〈표 3-21〉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분석표(2019년 기준)	70
〈표 4-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형	76
〈표 4-2〉 전국, 경기도, 수원시 수급자 현황(2016~2019.9월)	77
〈표 4-3〉 전국·경기도·수원시 수급률 현황(2016~2019.9월)	78
〈표 4-4〉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가구원수별 수급가구 현황(2016~2019.9월)	79
〈표 4-5〉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별 현황(2016~2019.9월)	80
〈표 4-6〉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연령구간별 수급자 현황(2016~2019.9월)	81
〈표 4-7〉 수원시 연령대별 장애인포함 일반수급가구수 및 장애인 수급자수(2016~2019.9월)	83
〈표 4-8〉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유무(2016~2019.9월)	84
〈표 4-9〉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판정유형 수급자수(2016~2019.9월)	85
〈표 4-10〉 수원시 연령별 일반수급자 현황(2016~2019.9월)	87

〈표 4-11〉 수원시 가구구성별 수급가구수 및 수급자수(2016~2019.9월)	89
〈표 4-12〉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2016~2019.9월)_중복제거 ..	90
〈표 4-13〉 수원시 기초주거급여 주거유형별 수급가구수(2016~2019.9월)	91
〈표 4-14〉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2016~2019.9월)_중복허용 ..	92
〈표 4-15〉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연령구간별 수급자수(2016~2019.9월)	93
〈표 4-16〉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성별(2016~2019.9월)	94
〈표 4-17〉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종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 수(2016~2019.9월) ..	95
〈표 4-18〉 수원시 차상위계층 수급자 수(2016~2019.9월)_중복제거	96
〈표 4-19〉 수원시 차상위계층 자격구분별 연령구간 수급자수(2016~2019.9월)_중복허용 ..	97
〈표 4-20〉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현황(2016~2019.9월)	99
〈표 4-21〉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액 현황(2013~2019년 9월)	100
〈표 4-22〉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 위기상황	101
〈표 4-23〉 무한돌봄사업 소득기준(2019년 기준)	101
〈표 4-24〉 무한돌봄 지원내용	102
〈표 4-25〉 수원시 무한돌봄 지원대상자 현황(2016~2019.9월)	104
〈표 4-26〉 수원시 무한돌봄 지원액 현황(2013~2019.9월)	105
〈표 4-27〉 2019년 수원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무)	107
〈표 4-28〉 2019년 수원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지원정책(수원시 자체)	121
〈표 5-1〉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성별(2016~2019년 9월)	130
〈표 5-2〉 수원시 신청탈락가구 가구의 연령 및 가구원별 근로능력 유무(2016~2019.9월) ..	131
〈표 5-3〉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원 수(2016~2019.9월)	132
〈표 5-4〉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가구규모별 가구유형(2016~2019.9월)	133
〈표 5-5〉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주 연령대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구성 비율(2019.1~9) ..	134
〈표 5-6〉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2016~2019.9월)	136
〈표 5-7〉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및 재산 구간별 비중 (2019.1~9월 기준)	137
〈표 5-8〉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공제소득 현황(2016~2019.9월)	139
〈표 5-9〉 수원시 신청탈락가구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	140
〈표 5-10〉 수원시 신청탈락가구 수급자와 부양의무가구 가구원과의 관계	140
〈표 5-11〉 수원시 신청탈락가구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별의 부양능력판정	140
〈표 5-12〉 수원시 가구주 연령별 가구비중(2019.1~9)	141
〈표 5-13〉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일반적 특성	143

〈표 5-14〉 수원시 노인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144
〈표 5-15〉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	146
〈표 5-16〉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유무 현황	148
〈표 5-17〉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만) ..	150
〈표 5-18〉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실제소득 대비 소득 구성별 비율	151
〈표 5-19〉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급여액 및 수급률	153
〈표 5-20〉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가구의 비중	155
〈표 5-21〉 수원시 가구주 성별 가구비중	156
〈표 5-22〉 수원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일반 특성	159
〈표 5-23〉 수원시 여성가구주의 일반 특성	161
〈표 5-24〉 수원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	164
〈표 5-25〉 수원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유무 현황	168
〈표 5-26〉 수원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만) ..	171
〈표 5-27〉 수원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실제소득 대비 소득 구성별 비율(2019.1~9) ..	173
〈표 5-28〉 수원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급여액 및 수급률	176
〈표 5-29〉 수원시 여성가구주 가구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가구의 비중	179
〈표 5-30〉 조사설계	181
〈표 5-31〉 조사항목	182
〈표 5-32〉 응답자 일반사항	183
〈표 5-33〉 가구 일반사항	184
〈표 5-34〉 가구원 일반사항	186
〈표 5-35〉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연도	187
〈표 5-36〉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사유	188
〈표 5-37〉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 후 생계유지 방법	189
〈표 5-38〉 주관적 경제생활상태	190
〈표 5-39〉 경제적 문제에 대한 현재 만족도	191
〈표 5-40〉 가구의 소득 및 생활수준 변화	192
〈표 5-41〉 최근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총 생활비)	193
〈표 5-42〉 생활비 지출 중 부담항목	194
〈표 5-43〉 생활유지를 위한 월평균 추가필요 생활비	195
〈표 5-44〉 최근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196

〈표 5-45〉 가구의 자산현황_2020년 1월 기준	198
〈표 5-46〉 부채보유 여부 및 부채금액	199
〈표 5-47〉 부채용도	200
〈표 5-48〉 최근 1년간 가구부채 규모변화 및 부채로 인한 어려움	201
〈표 5-49〉 가구의 가구원 중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 경험여부	201
〈표 5-50〉 가구원의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 대한 가구의 어려움	202
〈표 5-51〉 향후 재정 필요를 대비한 준비사항	203
〈표 5-52〉 재정을 대비하고 있는 주된 목적_(1순위, 2순위)	203
〈표 5-53〉 주거생활(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등) 만족도	204
〈표 5-54〉 거주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205
〈표 5-55〉 주거복지 관련 정부지원서비스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07
〈표 5-56〉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실시해야 할 지원정책_(1순위, 2순위)	208
〈표 5-57〉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 미진료 및 중도포기 경험	209
〈표 5-58〉 병·의원 미진료 및 포기사유	209
〈표 5-59〉 미진료 등으로 인한 현재 생활상의 문제정도	210
〈표 5-60〉 건강보험 가입종류	210
〈표 5-61〉 지난 1년간 2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211
〈표 5-62〉 건강보험료 미납이유_전체가구	211
〈표 5-63〉 지난 1년간 전반적인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	212
〈표 5-64〉 지난 1년간 의료비 충당방식	213
〈표 5-65〉 최근 1년간 정부 및 공공(민간)기관 등의 지원경험 여부 및 지원 필요성	215
〈표 5-66〉 최근 1년간 정부 및 공공(민간)기관 등 지원기관 종류 및 도움 정도	218
〈표 5-67〉 현재 정부, 또는 시청(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현금) 수혜여부	219
〈표 5-68〉 현재 정부, 또는 시청(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현금) 종류 및 월평균 금액	220
〈표 5-69〉 4인가구 최소필요 생활비	221
〈표 5-70〉 4인가구 최소필요 저축액	221
〈표 5-71〉 독거노인 최소필요 생활비	222
〈표 5-72〉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인식	224
〈표 5-73〉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	226
〈표 6-1〉 2013년도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시 인력 확충사항	232
〈표 6-2〉 2020년 지자체별 기초보장제도 소요예산	233

〈표 6-3〉 2020~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요예산(추계) 233

〈표 6-4〉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시스템 운영 분담비(2020년 기준) 234

〈표 6-5〉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확대 내용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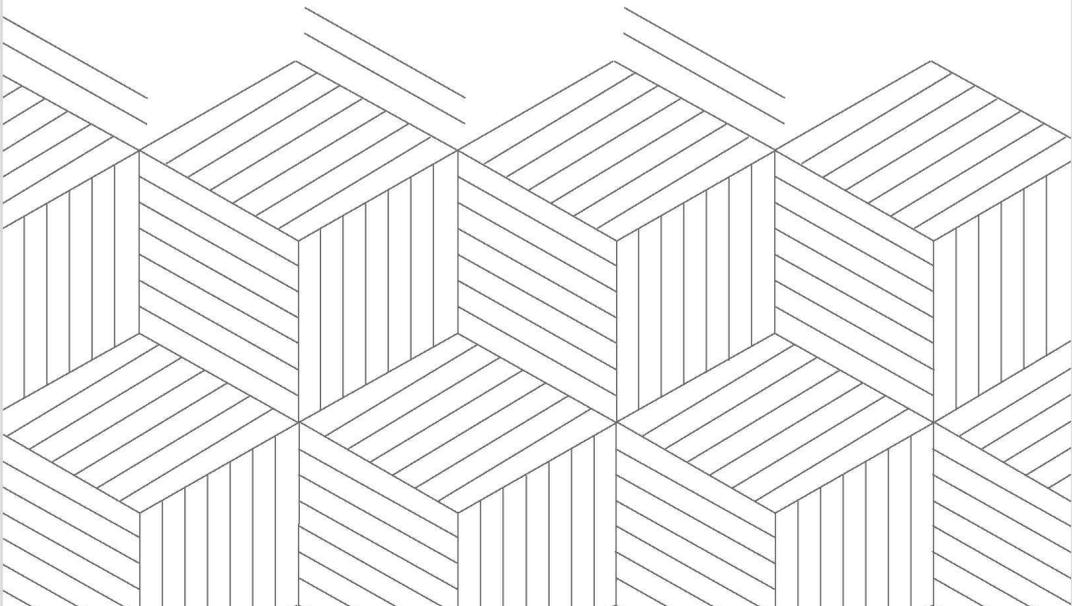
〈표 6-5〉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긴급지원사업 개요 236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5
〈그림 2-1〉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12
〈그림 2-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14
〈그림 2-3〉 자활사업 참여 자격	22
〈그림 2-4〉 생활보호법 변화(1961~1999년)	28
〈그림 2-5〉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_선정기준의 다층화	38
〈그림 4-1〉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연령구간별 수급자 현황(2016~2019.9월)	82
〈그림 4-2〉 수원시 연령별 일반수급자 비율(2016~2019.9월)	86
〈그림 4-3〉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연령구간별 수급자 비율(2016~2019.9월) ..	94
〈그림 5-1〉 신청탈락가구 가구주의 연령(2016~2019.9월)	131
〈그림 6-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업무 프로세스	232
〈그림 6-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추진체계	234
〈그림 6-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스템 운영 업무 흐름도	235
〈그림 6-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한돌봄사업, 수원시 긴급지원사업 대상자의 중위소득 ..	23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구(舊)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된 이후 28차 개정(19.9월까지)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2015년 7월 1일 개정을 통해 그 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모든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하던 방식을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욕구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됨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함(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 인정해 이들의 자활과 최저생활을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부문도 있지만 급격한 인구고령화, 저성장의 장기화, 실업 및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 인해 제도권 밖의 빈곤 사각지대가 확대됨(이승선·김연명, 2014)
- 이에 정부에서는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증가에 비해 빈곤율 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현실적 선정기준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축소되지 않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수많은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2~3%인 반면 절대빈곤율은 8~9%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빈곤율은 2018년 16.7%에 이르고 있음(통계청, 2018)
 - 빈곤 사각지대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제도 간 연계, 주거급여 문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산정방식 등의 요인이 지목되고 있으나,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 문제는 단계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한 쟁점임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의 비현실성은 경제 수준 변화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실태 변화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기적, 부분적 조정만 이뤄져 왔기 때문임(정은희, 2019)
-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한 소득 이하의 빈곤층에게만 선별적 급여를 제공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필연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공정성의 시비가 존재함
- 이에 2013년부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안적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세종시 등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임
- 수원시에서도 민선7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이 제안됨
 - 고령화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수원 지역특성에 맞는 비수급 빈곤가정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원시 특성에 맞는 수원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운영원칙)제5항에 의거하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과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의 특징과 외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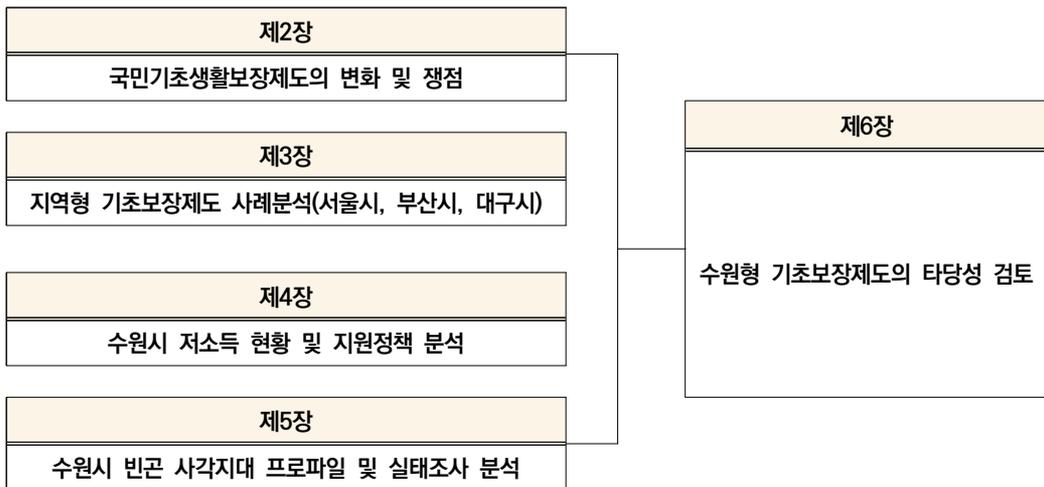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민선7기 100대 과제로 제시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함
 -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기술함
 - 제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및 쟁점을 분석함
 - 제3장에서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사례를 분석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안적 정책의 일

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사례(서울, 부산, 대구)를 분석함

- 제4장에서는 수원시 저소득 관련 현황 및 지원정책을 분석함
 - 수원시 저소득 관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자, 무한돌봄사업 대상자를 분석함
 - 수원시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의무정책과 수원시 자체 정책을 분석함
- 제5장에서는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프로파일 및 실태조사를 분석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사회보장정보원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빈곤 사각지대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인 비수급가구의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제6장에서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타당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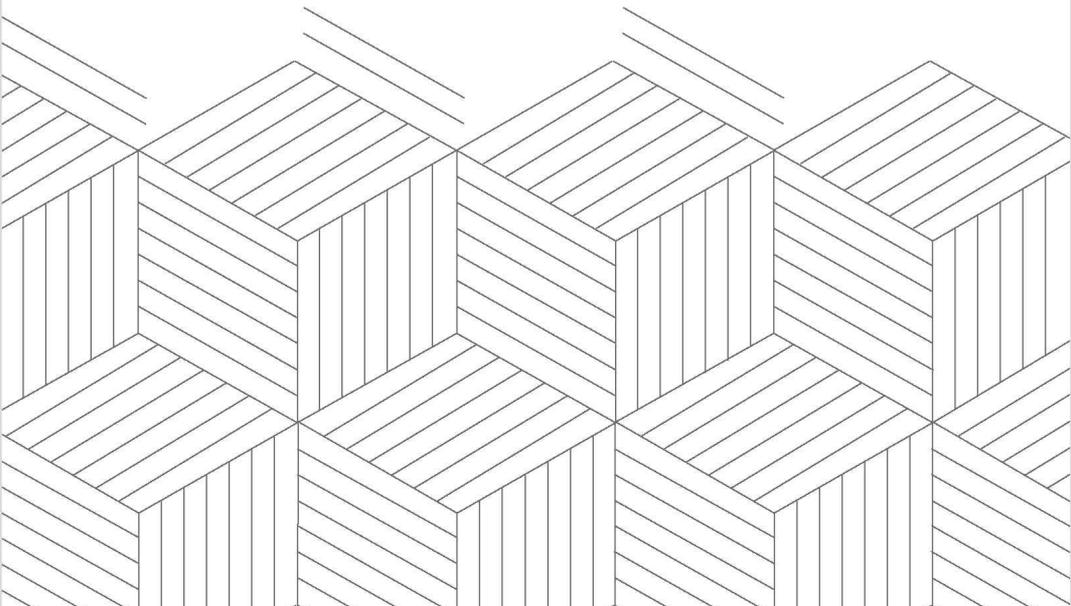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및 쟁점

-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 제3절 국민기초생활제도 관련 주요 쟁점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및 쟁점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임
 - 공공부조 제도는 필요한 모든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대상가구(원)의 소득 및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타 공공부조 제도에 비해 보다 엄격한 수급자격 기준이 적용되고 차등 적용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

2. 급여지급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
 - 신청주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임(법 제21조제1항)
 - 직권주의는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는 원칙임(법 제21조제2항)
- 급여의 기본원칙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임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함
 - 보충급여의 원칙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해야 함을 의미함
 - 자립지원의 원칙은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의미함

- 개별성의 원칙은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을 의미함
- 가족부양의 원칙은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을 의미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을 의미함
- 보편성의 원칙은 근로능력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빈곤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함을 의미함

3. 급여의 기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빈곤정책 수행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 ‘고용보장 기능’, ‘의료보장 기능’, ‘주거보장 기능’을 포함함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차적 기능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임
 - 고용보장 기능
 - 자활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장 기능을 담당하고자 함
 - 의료보장 기능
 - 의료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기능을 담당하고자 함
 - 주거보장 기능
 - 주거안정성과 더불어 적절한 주거수준과 주거비용을 보장하고자 함

4. 지원대상 및 수급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임
 - 최저보장 수준은 기준 현재의 중위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에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임
 -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기

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자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표 2-1〉 2015~2019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가구 중위소득	2015년	1,562,337	2,60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20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8	5,467,040	6,320,544

자료: 각 연도별(2015~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이를 통해 수급권자의 경제력을 평가하여 수급자를 선정함(한은희 외, 2018)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종류별 가액을 합산하고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다음 각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표 2-2〉 소득인정액 및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 1: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2: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3: 기본재산액=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3) 부양의무자

-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됨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를 의미함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미적용
- 부양능력은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따라 부양능력(없음, 미약, 있음)을 판정함
 - 부양능력 판정은 1) 부양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수급자 선정 제외), 2)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수급자 선정), 3)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부양비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각 급여 수급자로 선정)로 구분됨

〈그림 2-1〉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과 '재산 소득액'을 산정하여 판정함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3가지는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으로 다음의 <표 2-3>과 같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제외 또는 차감하는 항목을 적용한 후 소득액에 대해 부양능력 없음-미약-있음을 판정하는 소득으로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과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함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대도시(22,800만원), 중소도시(13,600만원), 농어촌(10,150만원)에 따라 적용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의 경우 월 1.04%,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월 4.17%를 적용함

<표 2-3>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2019년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소득·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소득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 \times 100\%$	부양의무자 기준 ○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times 18\%$	
	부양능력 미약	소득	$B \times 100\% \leq$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 \times 40\%) + (B \times 10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times 18\%$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소득	$(A \times 40\%) + (B \times 100\%) \leq$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기준 ○
		재산	$(A+B) \times 18\% \leq$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소득재산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해도 있음으로 판정		부양의무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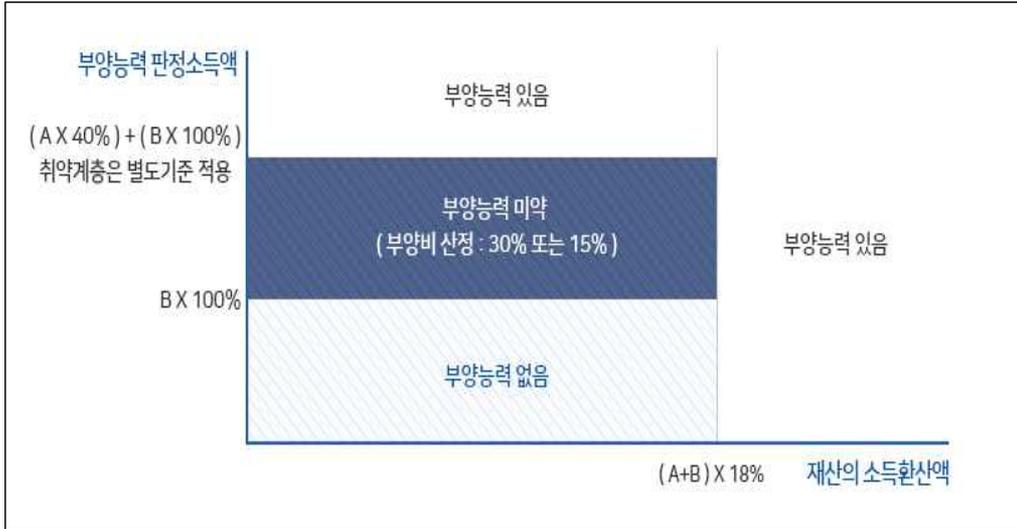
주 1: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반영

2: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자료: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 도해는 <그림 2-2>와 같으며 취약계층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

〈그림 2-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주 1: A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2: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자료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2: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 및 시행령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1)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2)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부양의무자, 3)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4)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5)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6)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7)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8)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9)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10)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가 해당됨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란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가 <표 2-4>의 소득·재산·가구특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함(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표 2-4〉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구분	내용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B×50%
재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50% 미만 - (A+B)×18%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50%
가구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개별 가구원을 포함하여 가구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재산가액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재산기준 특례를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적용을 받던 부양의무자 가구 중 소득과 재산형태·구성에 변화가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급여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됨

〈표 2-5〉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내용

구분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기준: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인 경우에 지급 지급조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시설생계비): 인원 시설기준 216,208원~248,371원/월
의료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귀성난치병질환자 1종 의료급여, 희귀성난치병 외의 질환환자는 2종 의료급여
주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가구: 급지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지원(147,000원~441,000원) 자가가구: 주택수선료지원/경보수(378만원), 중보수(7020만원), 대보수(1,026만원)
교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교재비: 초등학교(132,000원/연 1회), 중고등학교(209,000원/연 1회) 학용품비: 초등학교(71,000원/연 1회), 중고등학교(81,000원/연 1회) 교과서대: 고등학교(교과서 전체)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학교장 고지금액 전체)
장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1가구당 최대 750,000원
해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시 600,000원(출생, 사산,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상)시 지원) 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

구분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자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급여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후 급여 5만3,440원(5만7,440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후 급여 4만6,790원(5만790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근무, 급여 2만7,790원의 일자리 지원

주: 자활급여 중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한하여 4천원 추가 지급

- 자료 1: 보건복지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2019). 2019 의료급여사업안내
 3: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4: 교육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5: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자활사업안내(1)

1)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음
 - 일반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의미함
 -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등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생계급여수급자”라 함
 - 생계수급자에게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함

〈표 2-6〉 2019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월)

가구규모 2019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주: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56,051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408,265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긴급 생계급여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하나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를 지원함
- 긴급 생계급여 대상자는 1)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해당
- 긴급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현금)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

〈표 2-7〉 2019년 긴급 생계급여액 기준

(단위 : 원, 월)

가구규모 2019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051	435,979	564,005	692,030	820,056	948,082	1,076,107

주: 8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 시 128,025원 추가지급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함
 - 주거급여는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독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함
 -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 수, 거주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 지급,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함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함

〈표 2-8〉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월)

가구규모 2019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주거급여수급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자료: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함

〈표 2-9〉 2019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및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 금액	일반	702만원	1,026만원	
	도서지역	4,158,000원	7,722,000원	10% 가산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주: 노후도 1점당 공사비는 10만 3천원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3)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맞춤형 보장제도로, 지원대상은 학교 또는 시설(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임
 -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임

〈표 2-10〉 2019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월)

가구규모 2019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교육급여수급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자료: 교육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급함

〈표 2-11〉 2019년 교육급여 지원내역

(단위 : 원)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부교재비	1명당 132,0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급자 현금지급
중·고등학생		1명당 209,0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71,0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고등학생		1명당 81,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주 1: 학년이 시작되는 '19.3월부터 적용

2: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자료: 교육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4)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1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의료급여제도는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임

- 의료문제란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등을 의미함
- 의료급여의 지원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구분됨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이며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9.1.1~확대시행)에 따라 적용대상자는 확대됨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19.1.1.시행)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22.1.1.시행)
 -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수급(권)자인 경우 ('19.1.1.시행)
 -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 종료) 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19.1.1.시행)로 확대

〈표 2-12〉 2019년, 2020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9년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020년 (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의료급여사업안내, 복지포(2019).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됨
 -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를 의미함
 - 급여내용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이며, 급여범위와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과 유사함
 - 의료급여 급여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의료기관 등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단계별 기준에 따라 적용됨

〈표 2-13〉 2019년 의료기관 등 이용시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주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2: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의료급여사업안내

5) 해산급여

-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임
 - 조산(助産) 및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가 해당되며 1인당 6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 급여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에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6)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함
 - 장제급여 급여대상은 두 가지로 구분함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적용되며 가족 사망시는 미적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장제급여액은 1구당 최대 750천원(19년 기준)지급되나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도 가능함

7)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일을 하는 조건으로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받는 급여임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제도임
- 자활사업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함
 - 자활사업 참여자격은 1) 조건부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3) 일반수급자,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5) 차상위자,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 조건부과 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자활급여특례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함
 - 일반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대상이 되며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와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로 구분됨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은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함
 - 차상위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임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는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일반시설생활자를 말함

〈그림 2-3〉 자활사업 참여 자격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자활사업안내(1)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님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는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현행 2급 이상),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분됨
- 근로능력평가 방법은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로 구분되며 평가항목별로 판정하고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임

8) 보장시설

- 보장시설이란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을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 임(법 제10조제1항)
- 보장시설의 범위는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표 2-15>에 해당하는 시설임

〈표 2-14〉 보장시설의 범위

구분	시설종류	특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에 대한 거주요양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생활 지원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노인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4세 이상자 등
	노인요양시설	

구분	시설종류	특성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취업훈련·자립 지원서비스 등 제공
	아동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자립지원시설	◦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 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종합시설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지훈련 실시
	정신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촉진훈련 실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재활시설	◦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가족과 출산미혼모 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여성보호시설	일반지원시설	◦ 입소희망자, 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 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지 조력 ◦ 일시보호, 가정폭력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생활시설	◦ 무의탁 한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 무의탁 결핵(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주 1: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제외

2: 정신재활시설에서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만 해당됨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 그동안 한국의 복지제도는 정부재정이 필요한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 서비스 보다는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이정기·문진영, 2015), 복지의 생산전달 과정 역시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민간영역을 통한 간접지원 체계와 가족의 과도한 의존(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규정)을 강조함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종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되며, 공공부조는 우선적으로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에 따른 보호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그 후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작동되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김서기, 2016)
 -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종래에는 공적부조(公的扶助)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공공부조(公共扶助)’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김수신·정홍익, 1997),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을 의미함
 - 공공부조는 1) 비기여형, 2) 선별주의, 3) 소득·자산조사, 4) 법에 근거를 둔 공적지원제도의 4가지 특징이 있음(김을식·이지혜, 2017)
 - 비기여형(non-contributory): 공공부조제도는 개인의 기여없이 조세를 재원으로 수급가능
 - 선별주의(selectivism): 대상자 선정에 있어 경제·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경제·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
 - 소득·자산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여 활용
 - 법에 근거를 둔 공적지원제도: 민간자원이 아닌 법적으로 지원을 강제하는 제도
 - 이 외에도 시장의 논리가 반영되지 않으며, 현금과 현물(서비스)지급이 모두 가능
 - 우리나라의 근대 이후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조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전체 공공부조제도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절대적임

〈표 2-15〉 사회복지 구성요소 간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데모그란트	복지서비스
기여여부	기여	비기여	비기여	비기여 or 기여
자격기준	소득·자산조사	미반영	반영	미반영 or 반영
	인구학적 특성	비인구학적	일반적 공공부조:비인구학적 범주적 공공부조:인구학적	인구학적
급여형태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주요 현물
시장원리	시장에서의 위치 반영	미반영	미반영	일부 반영
권리주체	정부	정부	정부	정부, 민간

자료: 김을식·이지혜(2017).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및 IMF 경제위기와 같은 거시환경적 변화, 복지국가 발전방향에 대한 반성과 논의가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제도이며 조선구호령부터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르기까지 공공부조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옴

1. 조선구호령(1944~1961년)

- 조선구호령은 국가가 국민의 빈곤·불구·폐질 등에 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함에 따라 1944년 3월 1일 제정되었으며 이는 사회보장의 기초를 마련함
 -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자, 임산부, 불구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무를 하기에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조선구호령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기본법으로 역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의 형식을 갖춘 실정법이었음
- 그러나 조선구호령은 개인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보다는 사회질서 유지가 주목적이라 생활보호법 제정과 함께 1961년 12월 30일 폐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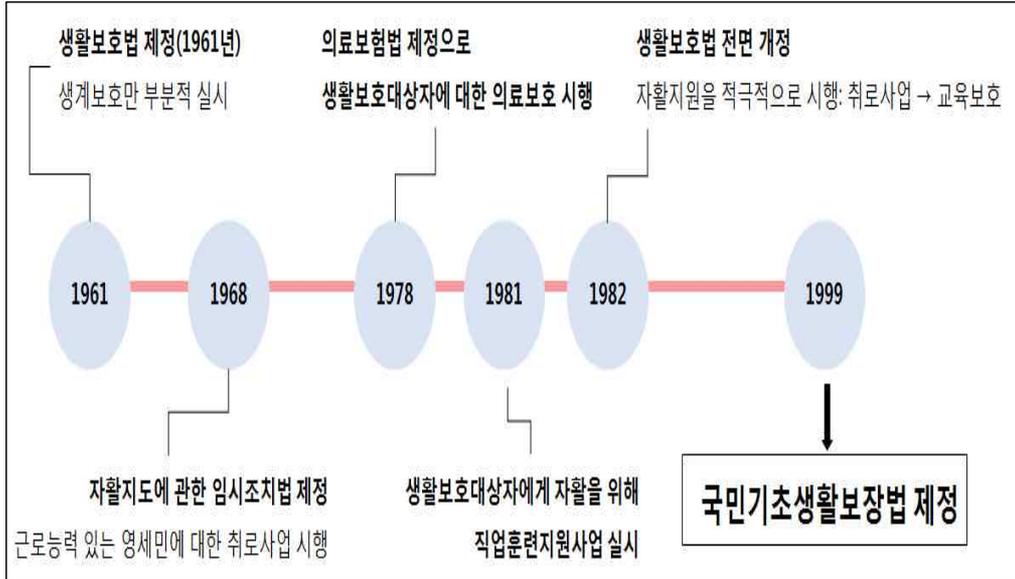
2. 생활보호법(1961~1999년)

- 「생활보호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自活)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1961. 12. 제정·공포)

- 헌법 제34조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사 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됨
- ‘생활보호’라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 가가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거나 시설 등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함
- 생활보호법은 무한정한 보호를 지양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자가 자 신의 생활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함(보충적 범위 내에서의 보호)
 - 동법에서 규정한 생활보호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와 같은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양육·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 활이 어려운 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한국민족문화대백 과, 2019)를 의미함
 -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을 규정함
- 종류로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가 있음
 - 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게 의복·음식물·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 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함
 -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진료·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약제 또는 치료재료 의 급부, 의료시설에서의 수용 등의 보호를 행함
 - 자활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거나 대부하는 것,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을 지원함
 - 교육보호는 입학료·수업료·학용품비, 기타 보호금품을 지원함
 - 해산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조산,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함
 - 장제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함
-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빈곤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법 제정·개정과 제도의 확충을 통해 부분적 개선의 노력을 지속함
 -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1968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위한 의료보험법 제정(1978년),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생활보호법 전면 개 정(1982년) 등 우리나라 빈곤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

- 1982년 생활보호법 전문개정을 통해 생활보호사업에 교육보호·자활보호가 추가됨

〈그림 2-4〉 생활보호법 변화(1961~1999년)



- 생활보호법은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치며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갔으나 여전히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무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수용하지 못해 비현실적인 수준의 최저생계비가 책정됨(전재경, 1992)
 - 국가 경제성장 여하에 따라 국민소득의 규모와 소비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관점이 적용되지 못함
 -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재원과 기본생활유지 수준이 각각 다름에도 이를 감안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남
 - 구체적인 대상자를 보호해 주고자 하여도 제공할 적당한 급여가 없는 경우가 발생함 (예: 노인, 아동·청소년 등은 자활의 조건하에 급여가 제공될 수 없음)
 - 생활보호법의 복합적 문제점과 함께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빈곤 인구 양상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국가사회적 최대 이슈로 부각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2-16〉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1998년 기준)

기준 유형	법정기준		자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인구학적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거택보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1. 65세 이상 노쇠자 2. 18세 미만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50세 이상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	22만원 이하 (인/월)	2,800만원 이하 (가구)
시설보호	위와 같음	거택보호대상자 중 주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	-
자활보호	위와 같음	1. 거택보호 1-4호 해당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양, 양육, 간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2.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	23만원 이하 (인/월)	2,900만원 이하 (가구)

자료: 김경혜(1998).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999년~현재)

- 생활보호법의 한계 및 시대적 상황 하에 45개 시민단체가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청원을 기점으로 19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발의됨
 - 19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발의, 1999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 의결을 통해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공포(법률 제 6,024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됨
 - 이 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의 기준이 엄격하였으며 지원내용 또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공공부조제도로써 역할이 불충분하였음
 -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및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 진척으로 인해 빈곤문제는 국가가 사회적·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됨(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배경

-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서 「생활보호법」의 안전망 기능에 대한 한계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됨

- 기존 생활보호법에서의 범주적 생활보호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Universalism)’의 원칙에 위배됨
- 소득과 재산기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요보호 대상자의 탈락은 빈곤계층에 대한 ‘국민복지기준선(National Minimum) 보장’을 어렵게 함
- 적절치 못한 정부 대책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 정부는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온적 대응
 - 당시 사회 지도층 등은 ‘비생산적 복지’가 존재한다고 바라봄으로써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존재하게 됨
- 이에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수립과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적 일원화,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됨(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1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사회적 권리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보장과 자활조성이라는 2가지 목적을 지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헌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입법으로 빈곤보호라는 특수한 목적을 지님(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11)
 - 빈곤보호를 위해 종전의 거택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급함

3) 생활보호법과 공공부조법의 차이

- 생활보호법과 공공부조법의 대표적 차이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여겼다는 것이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용어도 변경함
 - 법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법의 성격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 법의 내용 역시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 성격의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적 성격으로 변경함

- 생활보호법: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 연령, 신체상태 등 인구학적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를 결정해 왔던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여 보편주의의 입법례가 추진됨
 -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등
 -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자
- 자활의 경우 과거 생활보호법에서도 수급자의 자활을 주요 목적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되지 못하는데 반해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의 책임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에도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함
- 생활보호법에는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 개념을 도입하여 소득과 재산의 소유정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함

〈표 2-17〉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성격	◦ 시혜적인 보호	◦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
법률용어	◦ 시혜성 용어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 권리성 용어 (수급자, 보장기관, 급여대상자) ◦ 새로운 법률용어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및 방식	◦ 선별적 범주형(4가지 조건) · 부양의무자기준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인구학적 기준	◦ 일반적 보편성(2가지 조건)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대상자 구분	◦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거택, 시설,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시행령 6조)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대통령령)
최저생계비 결정권한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결정
급여	◦ 6종 · 생계보호 · 의료보호 · 자활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 및 장제보호의 혜택이 제외됨	◦ 7종(긴급급여 포함 8종) · 생계급여 · 주거급여(신설)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자활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여타 급여하되,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임의조항)
긴급급여	◦ 관련 조항 없음	◦ 관련조항 신설 ·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정될 때
자활지원 계획	◦ 관련 조항 없음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생활보장위원회	◦ 4단계 생활보호위원회 · 중앙생활보호위원회 · 시도 생활보호위원회 · 시군구 생활보호위원회 ·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	◦ 3단계 생활보장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구체화
보장비용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 없음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적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7~9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접수 내용 분석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함
 - 전체 민원의 40.6%(219건)는 수급자격 상실지원 축소에 대한 이의였으며, 지원·확대운영개선 요청이 30.6%(165건), 부정수급자 신고가 3.9%(21건)로 나타남 (국민권익위원회, 2012)
 - 수급자 자격박탈 및 지원 축소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결정적이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산정 시 엄격한 기준으로 인한 탈락이 다수를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줌

〈표 2-18〉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유형_수급자 자격박탈 및 지원축소

민원 유형	건수(비율)	주요내용
수급자 자격박탈 및 지원축소 이의 219건 (40.6%)	부양의무자 문제	123건 (22.8%) ◦ 부양을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자격박탈·급여액 삭감 이의 ◦ 부양의무자 재산 산정 시 주택자동차 등이 반영되어 불리
	근로 소득 문제	35건 (6.5%) ◦ 아르바이트 등 일용소득으로 인해 급여 삭감 및 자격 박탈 불만
	재산산정기준 이의	28건 (5.2%) ◦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100%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어 수급자격 미달
	기타	33건 (6.1%) ◦ 자격박탈·지원축소 등 자격변동 이의, 재심사 요청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지원축소 민원 빈발

- 201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3년 연속 감소하는데 반해 수급자의 자격상실 및 지원축소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부양의무자 지정은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부양능력 판단기준의 단계적 완화 및 실제 생활실태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가액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합리적인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함
 - 수급자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이 제기됨

〈표 2-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간 선정기준 및 방식 변화

구분	1999년 (제정 당시)	2003년 (소득인정액 적용)	2007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2010년 (행복e음 사용)	2015년 7월 이후 (맞춤형 급여 시행)	2018~2020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계획'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
인구학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자 기타 근로무능력자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평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간→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적용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결정 	좌동
재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금액 주택 및 농지면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금융재산의 이자소득 산정 건축물, 주택은 지방세 법상의 "시가표준액" 적용 		
부양 의무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 인인 경우 기준완화 (17.11~)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7월~)

구분	1999년 (제정 당시)	2003년 (소득인정액 적용)	2007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2010년 (행복e음 사용)	2015년 7월 이후 (맞춤형 급여 시행)	2018~2020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계획'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미만, 재산가액이 재산 선정기준의 120%미만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2006년 시행)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미만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좌동
선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기준을 만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좌동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선정기준 다층화 	좌동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e음 공적자료 우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기보전액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기보전액 적용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심포지엄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를 수정·보완함

2: 보건복지부(2015/2016). 2015~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관계부처 합동(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5)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맞춤형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5년간 한국 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제도로 자리매김하여(노대명, 2016) 우리나라 최후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개편을 시도함
 - 1~2차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 유지는 사각지대 해소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난 15년간 예산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대성과는 나타나지 못함
 - 제도 밖 빈곤층을 추가 보호하는데 성과가 미비하였고 욕구별 급여 수준의 과잉 지원과 과소 지원의 적정성 논란에 직면함
 - 근로빈곤층 취업과 탈수급 촉진 성과 미약 등 비판을 받아들임(노대명, 2016)
-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13.05.14.)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에 대한 심의·의결 및 공표를 시행함
 - 2013년 사회보장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방향은 ① All or Nothing의 선정기준을 다층화, 탈수급 유인 제고, ②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③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3가지로 요약됨(관계부처 합동, 2013)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사각지대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을 완성하고자 함(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2015.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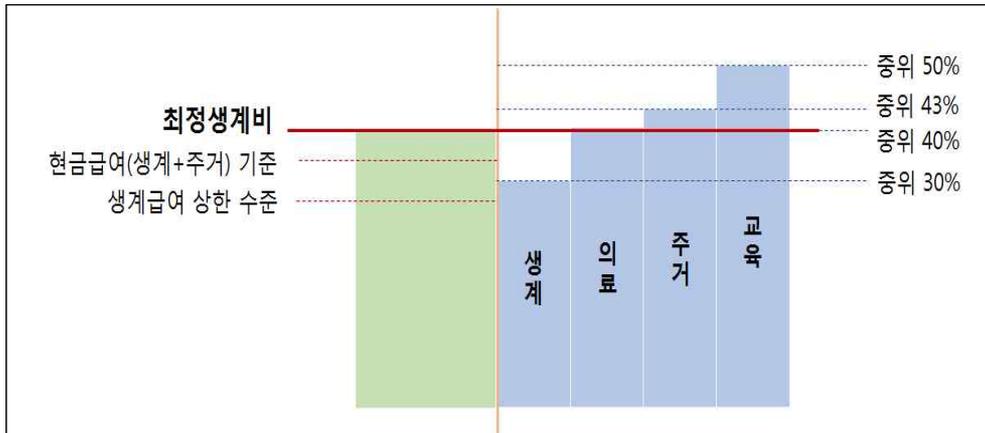
〈표 2-2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경과_2013년

내용	시행시기
대통령 선거 공약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포함	~’13년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확정	~’13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복지급여기획단’ 운영	’13.4.12.~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개편방향 심의의결 및 공표	’13.5.14.~
사회보장위원회 및 공청회 전·후 언론브리핑	5~6월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및 설명회 개최	5~7월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방안(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공청회 개최	’13.6.28.~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논의	7~8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임(관계부처 합동, 2013)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권리로서의 급여성격 유지(지원수준 현실화)
 - 선정기준 다층화: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보호 확대, 선정기준 급여별 다층화로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속 지원하여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제고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의료·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 현실화
 - 교육급여는 인적자본 투자 및 고교무상교육 도입(~17년), 교육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검토
-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13.05.14.)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심의·의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개정(2014.12.30.)을 통해 2015.7.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함
 - 개편에 따른 ‘맞춤형 급여’의 주요변화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적용
 - 급여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및 급여별 운영 주체 전문화로 주관 보장기관의 변경
 -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이전보다 줄어든 수급자를 위한 ‘이행기급여’ 도입·운영
 -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는 다음과 같음
 - 생계급여는 상대적 빈곤관점 반영을 통해 단계적 보장 강화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주거급여는 급지별 임대료를 반영한 기준임대료 설정으로 지원금액 현실화
 - 교육급여는 교육비 지원사업·고교무상교육 등과 통합을 통해 지원 확대

〈그림 2-5〉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_선정기준의 다층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표 2-2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전·후 비교표(2015년)

개편 전(2015년 1~6월)			개편 후(2015년 7~12월)		
구분	근거법	소관부처	구분	근거법	소관부처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부 (시·도육청)

(단위 : 원/월)

주요 기준선	1인 가구	4인 가구	급여명 (기준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4인 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668,329	생계급여(28%)	437,454	1,182,309
타 지원액(B)	117,993	318,901	의료급여(40%)	624,935	1,689,013
현금급여 기준(C=A-B)	499,288	1,349,428	주거급여(43%)	671,805	1,815,689
주거급여 상한(D)	110,003	297,306	교육급여(50%)	781,169	2,111,267
생계급여 상한(E=C-D)	389,285	1,052,122			

자료 1: 보건복지부(2015).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강신욱(2016).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 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기적 효과는 수급자 규모의 증가와 급여 수준을 인상시켰다는 것임
 - 보장성 향상
 - 기준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전 40.7만 원에서 개편 후 45.6만원으로 매월 4.9만원 증가
 - 부양비 부담 완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 중 14만 가구는 매월 약 17.2만원 가량 급여 증가
 - 이행기보전액 추가 지급 및 신청탈락자에 대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민간 자원 등 적극 연계
 - 선정 기준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효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 증가('15년 165만명 → '16년 163만명)
 - 신규수급자 역시 '16.6월까지 총 31만가구의 신규 수급자 발생(신규 수급자: 생계급여 13만 가구, 의료급여 3.2만가구, 주거급여 0.9만 가구, 교육급여 13.9만 가구)
 - 빈곤율 및 빈곤격차(빈곤갭) 비율 감소효과
 - 기초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구기준)는 4.9%로 제도개편 전 '14년 대비 11.1p 상승
 - 빈곤격차 비율 감소효과(가구기준)도 '14년 22.4%에서 '15년 17.2%로 감소
 - 개편 이후 수급가구의 급여액 및 자산 증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비중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옴

〈표 2-22〉 맞춤형 급여 이후 급여별 수급자 규모 추이

(단위 : 만원)

구분	2015.6.(A)	2015.12.(B)	2016.5.(C)	변화(C-A)
전체	131.6	164.6	166.8	35.2
생계급여	116.6	125.9	126.4	9.8
의료급여	-	143.5	143.2	11.6
주거급여	-	142.8	141.5	9.9
교육급여	17.8	38.8	40.1	22.3

주: (개편 전)생계급여는 현금기준선(최저생계비의 81% 수준) 적용.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자료: 보건복지부(2016). 맞춤형 개별급여 1년

-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맞춤형 기초보장제도)은 급여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부양기능 상향조정 등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시도였으나 복지제도의 지속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상존하여 빈곤율 및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다양한 문제가 또 제기됨
 - 문진영 외(2014) 연구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 월평균 가구소득은 51.9만원, 수급 빈곤층은 54.7만원으로 결과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 빈곤층보다 낮음(문진영 외, 2014)
 - 제도 개편 이후 4가지 급여 중 일부만 수급하는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 자활사업에 참여할 조건부 수급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불이행이 증가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출(주택연금), 농지연금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함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금가입 시 연금액만큼 생계급여 삭감 또는 소득초과로 인한 생계의료 급여 등이 중단되는 문제 및 기 가입자의 연금해지 문제 발생함(국민권익위원회, 2015)
 - 연금가입 사후발견 시, 생계급여 환수·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여 노인빈곤을 심화시킴
- 무엇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주장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에도 지속됨
 -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없음(실제 사각지대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았음)
 -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전면 폐지 vs. 점진적·단계적 폐지에 대한 쟁점은 보다 개선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됨

4. 향후 변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첫 번째 변화는 우선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9.07.30.)'를 통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함(복지로, 2019.07.30.)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 461만 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 9174원으로 결정함

〈표 2-23〉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 중위소득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8	5,467,040	6,320,544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주 1: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53,504원씩 증가

2: 산정방식-우리나라 가구소득 중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가구규모 균등화 조정

자료: 복지포(2019.07.30.).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www.bokjiro.go.kr)

-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기준으로 2019년 138만4061원('19년) →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증가함

〈표 2-24〉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9년	85만3504	145만3264	188만 16	230만6768	273만3520	316만272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주거급여 (중위 45%)	'19년(44%)	75만1084	127만8872	165만4414	202만9956	240만5498	278만1039
	'20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의료급여 (중위 40%)	'19년	68만2803	116만2611	150만4013	184만5414	218만6816	252만8218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생계급여 (중위 30%)	'19년	51만2102	87만1958	112만8010	138만4061	164만112	189만6163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자료: 복지포(2019.07.30.).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www.bokjiro.go.kr)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은 2019년 기준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함

〈표 2-25〉 2020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 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기준	증가	기준	증가	기준	증가	기준	증가
1인	26.6	(+3.3)	22.5	(+2.4)	17.9	(+1.6)	15.8	(+1.1)
2인	30.2	(+3.5)	25.2	(+2.6)	19.8	(+2.0)	17.4	(+1.3)
3인	35.9	(+4.3)	30.2	(+3.0)	23.6	(+2.3)	20.9	(+1.5)
4인	41.5	(+5.0)	35.1	(+3.4)	27.4	(+2.7)	23.9	(+1.9)
5인	42.9	(+5.2)	36.5	(+3.6)	28.5	(+2.7)	24.9	(+2.0)
6인	50.4	(+6.3)	43.0	(+4.1)	33.1	(+3.5)	29.1	(+2.4)

주 1: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2: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3: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2019).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확대 및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 예정임
-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로 인상될 예정이며, 교육부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초·중·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1.4% 인상하기로 의결함

〈표 2-26〉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비고 (‘19년 대비)
			’19년	’20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1208원	13만2000원	13만4000원	1.4% ↑
중학생		20만8860원	20만9000원	21만2000원	1.4% ↑
고등학생			20만9000원	33만9200원	62% ↑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494원	7만1000원	7만2000원	1.4% ↑
중·고등학생		8만826원	8만1000원	8만3000원	1.4% ↑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자료: 복지포(2019.07.30.).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www.bokjiro.go.kr)

- 두 번째 변화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21~'23)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예정임(복지로, 2019.07.30.)
 -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음

〈표 2-2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변화내용

구분	주요 내용
2017. 08.	◦ 소득 및 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 및 노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018. 10.	◦ (주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 01.	◦ (생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시 → 미적용 ◦ (생계·의료)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시 → 미적용
2019. 09.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4.17% → 2.08%로 인하
2020. 01.	◦ 중증 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 01.(예정)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 정부는 2020년 수립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한겨레, 2019.04.16.)
 -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비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임(관계부처 합동, 2017)
 - 주거 복지영역에서 주거급여·임대주택 공급·금융지원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를 포괄하는 주거 취약계층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발표함

제3절 국민기초생활제도 관련 주요 쟁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에 대한 권리성 강화, 제도의 체계화를 통해 정교한 형태의 제도로 발전해왔으며 국민의 사회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년간 변화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와 관련 주요 쟁점은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제도 간 연계, 주거급여 문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산정방식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저성장의 장기화, 실업과 고용불안 등 다차원적 사회적 위협이 증가하면서 빈곤 사각지대 역시 점차 광범위해짐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짐

1. 부양의무자에 의한 사각지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및 선정과정의 복잡성과 선정기준의 엄격성은 오히려 수급 신청을 저해하여 사각지대 발생의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 발간한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공급자들이 인식하는 빈곤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이중에서도 ‘생계급여’라는 응답이 전체의 4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제한적 대상, 선별적 적용 범위 등 제도 설계 측면’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엄격한 선별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적 배제’가 빈곤 사각지대 발생원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임완섭, 2019)
-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의 대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추정됨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판정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쟁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됨
 -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빈곤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제도의 사각지대가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적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에까지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 자체가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의 저해요인이 되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을 또한 논란의 주요 이슈임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 부양에 앞서 사적 부양을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적 부양의 기반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이 요구됨(손병돈, 2019)

2.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제도 간의 연계성

-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중 노인수급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제도 간 연계문제가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가름되며 여기서 소득평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에 기초연금이 포함됨
 - 기초연금은 공적인 부조로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하위 4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된 뒤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 액수만큼 차감됨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중심으로 하기에 기초연금 액수만큼 차감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을 소득에 포함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제기됨(국회에산정척처, 2019)
 -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며 기초연금 전액을 소득으로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결여 문제가 동시에 존재함
-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초 보건복지부는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하여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됨
- 그러나 2020년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을 실제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헌이라는 현재 결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2020년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중복 지급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음
 -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제도 간 연계로 인하여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2019년 기준으로 4만 9000명(기초연금 미수급 기초생활 수급자 14.7%)이 넘는 것으로 추정(동아일보, 2019.10.04.)
- 쟁점의 핵심은 노인빈곤 증대와 노후소득 불평등, 가족 간 유대 약화에 따른 가족 내

소득이전 감소(부양비) 등 수급 및 비수급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행 공공부조 및 공적지원제도가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점임

3. 주거급여의 적정성

- 주거급여는 과거 생계급여 등과 함께 일괄 지급되던 급여였으나 2015년 맞춤형 급여개편 이후 별도의 급여체제로 독립되어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됨
-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에도 주거급여 체계가 「주거급여법」에 명시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제공하고 빈곤층의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됨
 -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높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엄격한 수급선정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수급자들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주거급여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기준 임대료 인상 및 수급가구의 주거수준 상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최저주거기준이 지나치게 과거에 설정되어 현재의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못하고 있음
 - 국토부가 발표하는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매년 대중소도시에 따른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산정하여 임차급여의 최대 상한선으로 정해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역시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재단법인 동천, 2019)
 -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임차급여는 빈곤층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고 고시원, 쪽방 등과 같은 또 다른 불완전 주거환경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4.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로 인한 사각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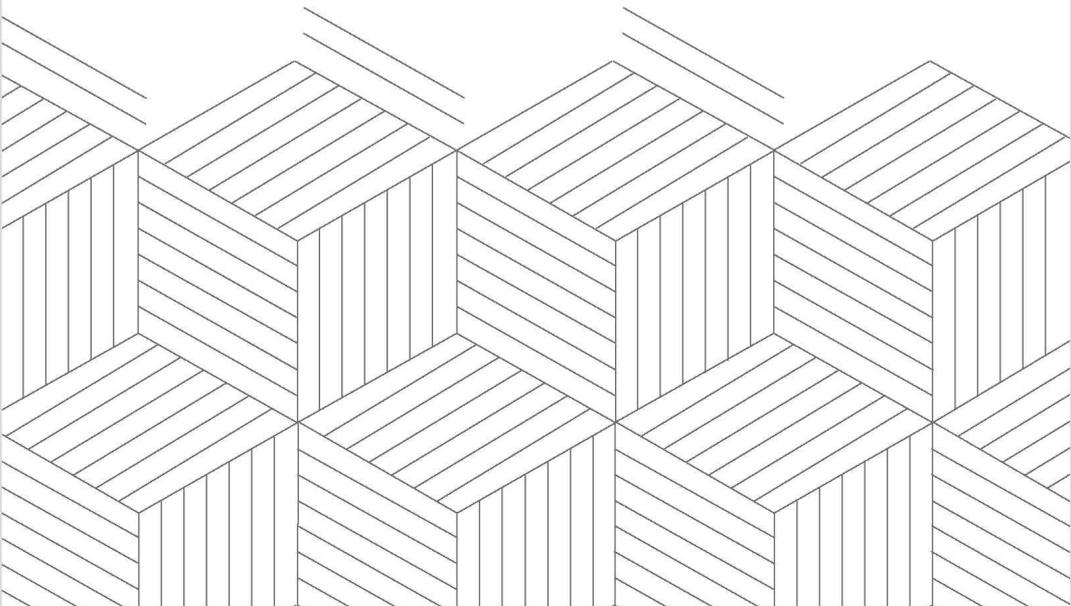
- 재산의 소득환산 계측 시 이중계산의 문제와 함께 환산율 산정기준에 대한 논리적 취약성, 높은 소득환산율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산정되는 방식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는 소득인정제도의 주요 구성요소임
- 재산 소득환산에 있어 필수재산인 주거를 재산산정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소득환산율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빈곤층이

최소한의 재산 축적이 가능하도록 하한선 설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옴

- 실제 스웨덴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거재산을 재산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는 일정수준 주거재산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2020년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전세가 상승률, 생활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맞춤형 급여개편 이후에도 수급자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결국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소득환산제도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위험요인 증가와 경제침체 등으로 빈곤층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자 비율은 전 국민의 3% 수준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점임(문진영, 2019)
-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이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또한 너무 낮아 지원 대상을 제한하여 제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임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선 및 급여수준(적용비율)을 현재 우리나라 사회변화와 생활수준에 발맞추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사례분석

제1절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사례분석
제2절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한계



제3장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사례분석

제1절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사례분석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 추진배경

- 중앙정부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하향평준화가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서울시민은 수급자 선정, 복지급여 수준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함
 - 2010년 10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각지대 빈곤층은 약 29만 명으로 추정됨
- 이에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서울시만의 독자적 소득보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 10월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 달성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함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변화

-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 중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13.1월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13.1 ~ 3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자치구 시범운영 추진('13.5 ~ 6월)
 - 4개 자치구(동대문구, 서대문구, 노원구, 성동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화 추진('13.6 ~8월)
 - 행복e음 내 '지자체 서비스'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반영 및 기능개선 추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매뉴얼) 2차 보완('13.6월)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직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기준 확정
-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표 3-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추진과정

추진내용		추진경과
○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착수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		'12.2월
○ 서울시민 복지기준 대시민 발표		'12.10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행기반 마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수립	'13.1.8.
	○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3.1월 ~
	○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지원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13.1월) - 법제심사('13.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13.3월) - 규칙안 공포시행('13.3월) 	'13.1 ~ 3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및 홍보	'13.1월 ~
	○ 중앙정부에 법률 검토 및 제도개선 건의	'13.1 ~ 6월
	○ 대상자 수요파악 및 모의 운영	'13.1 ~ 6월
	○ 4개 자치구 시범운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서비스 기능개선 추진 - 지원대상자 분석 및 운영결과 미비사항 반영 	'13.5 ~ 6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화(기능개선) 단계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 내 “지자체 서비스”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반영 	'13.6 ~8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매뉴얼) 2차 보완		'13.6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행		'13.7월

자료: 서울특별시(201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해연도 10월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변화를 시도함
 - 당초계획은 2013년 최저생계비 60% 이하를 우선 지원하여 약 4만 여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는 총 12,917명으로 급여신청 대비 56%에 불과함
 - 이에 대한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제출의 어려움, 금융재산 초과보유로 인한 급여신청 포기, 빈곤 실태조사 데이터가 아닌 학술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한 비수급 빈곤층 목표 설정 등이 지적됨

- 서울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정기준 등을 조정·반영한 3차 사업 매뉴얼을 시행함(13.10.10.)
 - 서울시는 비수급빈곤층 지원이라는 제도 목표에 부합하고자 추진목표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인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으로 변경함
 - 선정기준은 금융재산 5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거부기피를 인정(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하고, 부양의무자 관련 제출서류를 통일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 따라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맞춤형 급여체제'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역시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되는 사례 발생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변화가 필요하게 됨
- 서울시는 맞춤형 급여체제 도입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추진계획(15.9.22.)을 발표하고 신설·변경 사업을 검토하여 2015년 12월 16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방식 개선계획을 발표함
- 2015년 3등급 정액급여 지원 방식을 2016년 1월부터 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방식으로 변경함
 - 최대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 1/2수준, 최소급여액은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최대급여액의 1/3수준으로 설정함

〈표 3-2〉 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 산출식

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 산출식
$\text{가구별 생계급여액} = \text{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text{계수} \times \text{해당가구 소득평가액})$

주 1: 계수는 지원대상자에 가장 유리하고 1인가구가 다수이므로 가구규모 상관없이 적용함

2: 계수 = [1인 가구 최대급여액 - 1인 가구 최소급여액 / 1인 가구 최대소득평가액]이며, 매년 변동

자료: 서울특별시(2016).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 생계급여 지원방식이 변경으로 인해 기존 대상자의 급여 감소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 한해서는 이행기 보전액을 지원함
- 2015년 이전 보장결정 대상가구의 급여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금액만큼 대상가구에 지급하며 개편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함

- 서울시는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과 함께 사후 관리를 위한 확인조사 시스템 구축함
-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방법 모색하고('16.1~6) 확인조사 시스템을 구축함('16.7~12)

〈표 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전·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비교(2인 가구)

구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인)		
	2015년(A)	2016년(B)	증감(B-A)
기준중위소득100%	2,660,196원	2,766,603원	106,407원(증 4%)
기본원칙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중위소득 40%	-
소득평가액	1,064,078원	1,106,642원	42,564원(증 4%)

자료: 서울특별시(2016).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과 동시에 맞춤형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현황도 변화됨(서울특별시, 2017)
 - 맞춤형 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맞춤형 급여 대상자 선정 비율은 증가함
- 지속되는 경기위축으로 생활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위기가구 발생가능성이 높아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7년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함(서울특별시, 2017)
 -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의무 거주기간 완화(6개월 → 1개월)
 - 근로능력 있는 가구 보장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 중증장애가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별도가구로 인정
 -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범위) 완화
 - 생계급여 최대 5.2%(평균 4.5%) 인상하여 보장성 강화('16년 236천원→'17년 248천원)
 - 수급자 부정수급 방지 및 자격관리 강화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재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16년(4,628명) 대비 '17년(6,062명)에는 31.0%(1,434명 ↑) 증가하여 비수급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상호보완 관계로 지자체 기초보장사업으로 정착함
-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계획(안)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변경 사업 개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동의'('17.12.01.)에 따라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또 한번의 제도개선을 실시함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40% 이하 → 43% 이하)

- 수급자 가구의 금융재산기준 완화(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차상위기준 자동차 수준으로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17.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4인 6,514천원 → 7,366천원으로 3.1% 인상)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민선7기 공약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계획('18.09.13.)을 마련함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을 물가상승 수준을 감안·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중 다수가 주거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의 소득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됨
 - 2018년 서울형 기초수급자(2년 상 자격유지자) 일제조사 실시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방향에 대한 연구 수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향 및 2019년 개선(안)을 마련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2019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서울특별시, 2019)
 -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안) 마련
 - 물가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변동을 고려한 소득평가액 등 기준 완화
 - 2018년 9월 30일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권수급자가 2018년 10월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그 급여 차액을 1년에 한해 지급('19.12.31.까지)
 - 주거급여 전환자에 대한 한시적 차액보전(이행특례) 적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설계 연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 형평성 제고 및 체계적 지원(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2020년 예산편성 전에 검토 완료함
 - 국민기초보장제도 보장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적극 발굴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제도 개편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의 소득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설계
 - 노인 가구 및 1인 가구에 유리한 재산기준에 대한 개선안 도출
 - 2019년 6월 기준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급여 보장결정 2년 이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의 일제조사를 통해 복지지원 체계를 확대할 예정임

3) 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 2019년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은 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고(맞춤형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불가)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어야 함
 - 신청절차는 맞춤형급여로 신청 후 탈락한 대상 중 선정되며,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주민등록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됨
 - 사적 이전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 외 소득의 인정 여부는 맞춤형급여 수급자 조사방법을 준용함

〈표 3-4〉 2019년 서울시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중위소득 43%	734,013	1,249,807	1,616,814	1,983,820	2,350,827	2,717,834	3,084,841

자료: 서울특별시(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 재산기준은 총 135백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임
-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 4인가구 기준 소득 7,520천원 이하 및 재산기준 총 6억원 이하(18년 대비 2.09% 인상, 재산기준 5억 → 6억)

〈표 3-5〉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613,536	5,813,056	6,666,560	7,520,064	8,373,568	9,227,072	10,080,576
재산기준	6억원						

자료: 서울특별시(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별도가구 특례인정(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구에 한하여)하며 동일 보장가구의 세대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병원 및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동일 보장 가구로 인정함

〈표 3-6〉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비교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액 반영 : 주거용재산 1억원의 경우 소득환산액 약 47만원 반영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의 43%이하 선정 ※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비용 제외 재산액: 1억원 3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완화 ※ 소득환산액 미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 1인(286만원), 2인(360만원) - 재산 : 1인(243백만원), 2인(247만원) ※ 신청가구 2인(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 1인(461만원), 2인(581만원) - 재산 : 6억원 이하
급여 기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의료급여	생계,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인 : 최저 0원에서 최고 64만원 이하	◦ 생계급여 기준(소득대비 차등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 1/2 수준 - 2인 : 최저 14.5만원에서 최고 43.5만원 이하 - 주거급여 전환자에 대한 이행특례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서울특별시(201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2) 지원 내용

-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가 있음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소득대비 차등지원)이고, 최소지원액은 최대지원액의 1/3 수준임
 - 해산급여(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 지급), 장제급여(1가구당 75만원)는 맞춤형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함

〈표 3-7〉 2019년 서울시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 및 최소지원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56,051	435,979	564,005	692,031	820,056	948,082	1,076,107
~								
최소	소득평가액	734,013	1,249,807	1,616,814	1,983,820	2,350,827	2,717,834	3,084,841
	생계급여	85,350	145,326	188,002	230,677	273,352	316,027	358,702

주 1: 2018년 대비 2.09% 인상

2: 지원급여액-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3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자료: 서울특별시(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1) 추진배경

- 부산광역시는 절대 빈곤률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됨(박경하 외, 2015; 부산복지개발원, 2016)
 -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매우 광범위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못지 않게 소득수준이 낮은 특성을 지님(박경하 외, 2015)
 -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광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사회적 배제 현상 등이 나타남
 - 부산시 빈곤층의 열악한 생활실태, 제한된 사회적 지지망 뿐 아니라 수급탈락가구 중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전체의 57.2%에 해당됨
 - 이에 부산에서는 사각지대로 배제된 빈곤층의 사회적 회복차원에서의 보완적 제도와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변화에 따른 제도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게 됨
-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된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권리적 성격의 급여라는 특징을 가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2016년 10월부터 시행함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보완적 제도로써 기능을 수행함

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변화

-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2017년 7월 전까지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기준이 적용됨
 - 2017년 7월 개편 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은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와 부가급여(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가구 대상)임
 -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재산기준은 가구당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5백만원 이하임
 -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를 만족하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3억 6천만원 이하임
- 자격기준으로 인해 신청자의 대부분이 급여를 제공받지 못 하는 현상이 나타나 현실적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 부산복지개발원에서 2015년 추계한 수급가구는 2,844가구였으나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 없이 시작되어 집행실적이 6.6%에 불과함
 - 이후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2017년 하반기 급여대상이 대폭 증가하여 2017년 1,576가구를 선정하여 19억 5백만원 지원함
 - 2017년 7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 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35%에서 40%로 완화하고, 거주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

〈표 3-8〉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2017년 7월 개편 전·후 선정기준 비교

구분	2017.7월 전	2017.7월 후
부산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대상자 소득	4인기준 156만원	4인기준 178만원
대상자 재산	7천만원(금융 1,500만원)	13,500만원(금융 2,500만원)
부양의무자 소득	4인기준 614만원	4인기준 717만원
부양의무자 재산	3억6천만원 이하	4억5천만원 이하

자료: 부산시청(2017). 2017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추진 계획_4인 기준

- 2018년에는 선정기준을 약 2배 이상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기초수급의 50% 수준으로 설정하여 기초수급자와의 소득 역전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 복지부산 12대 공약사항 중 하나로 부산형 돌봄지원망 구축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를 제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만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역시 부양의무자 조건을 일부 완화하면서 실질적인 저소득 지역 주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포함
 -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로 소득 하위 50% 기준, 중증장애인 및 노인포함 가구의 부양의 무자 조건을 전면 폐지함

〈표 3-9〉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경과

추진내용	추진경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16. 10월
신청자 선정 소득기준 35% 확대, 부가급여 시행	'17. 01월 ~
신청자 선정 소득기준 40% 확대	'17.07월 ~
기준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인상	'18. 01월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근거, 방법, 기준 등 구체화	'18. 04월

자료: 부산시청(2018).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공약사항 달성 등) 추진실적 보고

3) 지원 대상 및 내용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중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름
- 부산형 제도에서는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정책을 지급하며 주 급여는 생계급여이고,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한부모,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한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부가급여가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2019년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선7기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2019년 지원금은 2018년 대비 2.09% 인상하여 월 최대 55만3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35억원(전액 시비)임

〈표 3-10〉 2019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예산

(단위 : 천원)

구별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계	최저생계 유지비	부가급여	계	최저생계 유지비	부가급여
중구 외 15개 구	2,400,000	1,920,000	480,000	3,500,000	2,800,000	700,000

자료: 2019년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보조금 교부내역

- 2019년 제도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의 기준값인 2019년 기준중위소득 2.09% 인상분이 반영되어 2018년 대비 1인 기준 소득 13,961원이 인상됨(2018년 668,842원 → 2019년 682,803원)
 - 대상자 재산기준은 가구당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500만원 이하로 2018년과 동일한 수준임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기준 1인 대상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140~170%이며, 재산기준은 가구당 4억5천만원 이하임

〈표 3-11〉 2019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천원)

구분 (1인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지원금액 (기준중위소득 12%, 3%)		비고
	신청가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유지비	부가급여	
2018년	668,852	4,207,016	200,000	50,000	재산기준 변동없음
2019년	682,803	4,294,832	204,000	51,000	
인상분	13,961	87,816	4,000	1,000	

자료: 부산광역시(2019). 2019년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기존 수급가구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함
 -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부산형 신청가구 부양의무자 중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구는 조사에서 제외함
 - 국민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과 일치하도록 조정함

- 2019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계획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확대에 따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선정기준에 차별성에 초점을 둠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2,000가구 지원에서 실제 2,09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3,100가구 선정을 예상함
 - 시행 초기('16.10) 선정기준 및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 선정이 저조하였으나(226가구 85백만원), 2017년 선정기준 대폭 완화('16년 30% → '17년 40%), 부가급여 실시 등으로 '17년 7월부터 대상자 및 지원액이 급증함(1,350가구 1,905백만원)
 - 2018년 4월에는 지원 목표인 2,000가구를 달성하였고 2018년 말까지 3,100가구 약 49억원 지원 예상('18년 제1회 추경시 예산증액 필요 24억 → 50억)

〈표 3-1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2018.11.30)

(단위 : 가구, 천원)

구분	신청	선정	미선정	지급현황		비고
				가구	지원액	
계	32,445	2,957	3,240	24,251	6,231,910	
2018	12,296	1,381	1,123	226	85,189	'18.1~11월
2017	14,681	1,350	715	7,129	1,905,908	'17.1~12
2016	5,468	226	1,402	16,896	85,189	'16.10~12

자료: 부산광역시(2019). 2019년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3. 대구형 기초보장제도

1) 추진배경

- 대구광역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기초보장제도인 '시민행복급여'를 시행함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부양을 추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발생함
 - 대구에서는 2015년 7월 기준 1천265가구 2천24명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

으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함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게 됨
 - 정부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법정 부양비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보전함
 - 맞춤형급여 시행 후 선정제외 된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필요하게 됨
- 대구 시민행복보장제도는 2014년 10월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15년 4월)하여 신설이 수용됨(15년 9월)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부터 '대구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표 3-13〉 대구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경과

추진내용	추진경과
취임준비위원회 정책제안서 발표	'14. 06
시민공약평가단 공약실천계획 심의	'14. 09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공약) 발표	'14. 10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市→보건복지부)	'15. 04
사회보장제도 신설 수용(보건복지부→市)	'15. 09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개정	'15. 09
시민행복보장제도 시행	'15. 10 ~
국가유공자 특례 및 명절급여 신설	'16. 07 ~

자료: 대구광역시(2017). 2017년 시민행복보장제도 사업안내

2) 대구형 기초보장제도의 변화

- 대구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9월 보건복지부로 수용되어 10월부터 대구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시민행복보장제도는 2015년 10월 시행 이후 제도 개편을 시도하여 명절급여 지급 및 국가유공자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확대함
 - 설·추석 당월 1가구당 10만원의 명절급여를 지원하고('16년 9월 시행),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인 가구에 국가유공자 특례를 적용함('16. 7월부터 첫 급여 지급)

-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소득인정액을 1.7%인상하고, 보장기간을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개정하여 2017년 1월부터 보장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한정함
- 대구광역시 빈곤가구의 지속적 증가하여 대구시는 2019년 행복급여사업을 지방비 545백만원, 국비(기타) 817백만원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음

〈표 3-14〉 시민행복보장제도 행복급여 사업량 및 소요예산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8년(지속사업)	2019년	
사업량		1,000명	1,000명	
사업비	계	2,600	2,600	
	국비	-	-	
	지방비	소계	2,600	2,600
		시도비	2,600	2,600
시군구비		-	-	

자료: 대구광역시(201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3) 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 대구형 기초보장제도인 ‘대구 시민행복제도’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대구 시민행복제도는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임

〈표 3-15〉 시민행복보장제도와 타 복지제도와와의 비교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시민행복보장제도
목적	최저생활 보장	위기상황의 가구 지원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 보호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30~50%)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급여종류	생계·주거·의료· 해산·장제·(교육)	생계·주거·의료· 해산·장제·교육	행복(생계)·해산·장제· 동절기 난방비
지원기간	계속	3개월	계속
특징	최저보장수준 이하 빈곤층 지속 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단기지원 (기초수급자 제외)	기초수급 탈락자 지원 (기초수급자 및 긴급지원대상자 제외)

자료: 대구광역시(2017). 2017년 시민행복보장제도 사업안내

- 2019년 기준 시민행복보장제도의 기본원칙은 ‘정부 제도와와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 우선 신청·적용함
-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신청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책정 제외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부양비 포함, 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이거나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대상자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함(교육급여 제외)

〈표 3-16〉 2019년 대구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9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자료: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주거용재산)과 동일하게 적용함

〈표 3-17〉 2019년 대구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단위 : 원)

부양의무자 대상자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392,135,385	449,804,615	490,838,462	531,872,308	572,906,154
2인	449,804,615	507,473,846	548,507,692	589,541,538	630,575,385

자료: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2) 지원 내용

- 대구형 기초보장제도인 '대구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행복급여(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동절기 난방비를 지급함
 - 행복급여(생계급여)는 매월 지원되며 급여액은 1인 기준 117,790원 수준임(2018년 기준 1인 117,050원)
 - 해산급여는 출산한 경우 1인당 60만원이 지급되며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 1인당 75만원이며, 동절기 난방비는 연 2회(1월, 11월) 지급되며 가구당 10만원/회임
 - 2017년까지는 명절급여가 지급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동절기 난방비로 변경

〈표 3-18〉 2019년 대구형 기초보장제도 행복급여 지급액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	2018년	117,050	199,300	257,820	316,350	374,870
	2019년	117,790	200,550	259,450	318,340	377,230

자료: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대구 시민행복보장제도 사업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공공과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대구광역시는 사업총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군 및 읍·면·동에서는 사업홍보 및 서비스 수혜자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신청·접수 및 제공의 역할을 담당함
 - 사회복지 관련 기관(민간)들은 대구 시민행복보장제도 사업에 대한 사업홍보와 사업신청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함

〈표 3-19〉 2019년 대구 시민행복보장제도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학 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공공	대구광역시	사업총괄 및 행·재정적 지원	사회복지관련 기관, 구·군 및 읍·면·동 담당자 수시회의 의견 수렴 및 조율	구·군 및 읍·면·동을 통해 의견 제출
	구·군	사업홍보 및 서비스수혜자 실태		
	읍·면·동	파악/서비스신청접수 및 제공		
민간	사회복지관련 기관	사업홍보/사업신청 상담		

자료: 대구광역시(201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대구시는 2015년 10월 시민행복보장제도 시행 첫해 364가구(620명)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7월까지 총 1만 5883가구(2만5357명)의 취약계층에 25억원 규모의 행복급여를 지급함
- 지원대상자 수 역시 2015년 2,181명에서 2016년 1만3,971명이었으며, 2017년 7월 기준으로 9,205명에게 지원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2019년 대구 시민행복보장제도 행복급여 지원 사업의 목표는 1,000명임

제2절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한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동반적 변화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비수급 빈곤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이승선·김연명, 2014)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권자를 발굴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2만 4천명의 신규 기초법 대상자를 발굴함

〈표 3-20〉 연도별 추진실적(2013~2018년)

(단위 : 명)

연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실적			
	계(누적)	서울형기초대상자	기초수급자	타복지 연계
2013년(7월 시행)	22,921	5,657	10,775	6,489
2014년	54,880	9,629	31,528	13,723
2015년	112,294	13,265	76,346	22,683
2016년	158,037	16,049	111,975	30,013
2017년	214,872	19,702	156,023	39,147
2018년	294,816	23,060	218,204	53,552

자료: 서울특별시(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화될 때마다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폐지됨에 따라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가 감소하고,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와 정부의 기초보장제도의 중복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될 때마다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동반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부산시 역시 2020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음
 - 2019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17.7 개편 후 증가 '18. 하반기부터 다시 감소) '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019년 부산형 기초보장 대상자가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제도 확대 시 예산 부담이 증가하여('16년 16억 → '17년 29억 → '18년 48억)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2019년 6월 2020년 예산 편성 등 신규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2019년 8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요청(보건복지부)을 통해 2019년 10월 경 신규사업(또는 개편안) 선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개획하고 있음

2. 소득역전 현상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간의 소득역전 현상이 우려됨
 - 수급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간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급여 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구간을 3개 등급(1~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정책을 지원하였으나, 1등급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2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가용액이 많아지는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김경혜, 2015)
- 한편 201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치로 인해 기존 서울형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고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탈락 발생가능성이 높아짐
 - 이를 자체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재산 기준과 산식을 변경하는 경우 또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김승연, 2018)

- 이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뿐 아니라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응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빈곤 사각지대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면 결국 빈곤 사각지대로 전락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지자체의 비수급 빈곤층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으로 남아있어야 함을 의미함
 -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서울시는 43% 이하, 부산시는 40% 이하, 대구시는 50%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 또한 지원내용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게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별성도 부재함(〈표 3-21〉 참조)

4. 사각지대 발굴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의 실효성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이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과정임
- 따라서 이는 현재의 사각지대 발굴방법이 아닌 더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의 실효성은 낮다는 한계가 있음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2달에 한번씩 진행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시간이 소비되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데이터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은 반복적인 데이터 수집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효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접근의 권한부여가 엄격하여 자격기준 미달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표 3-21〉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분석표(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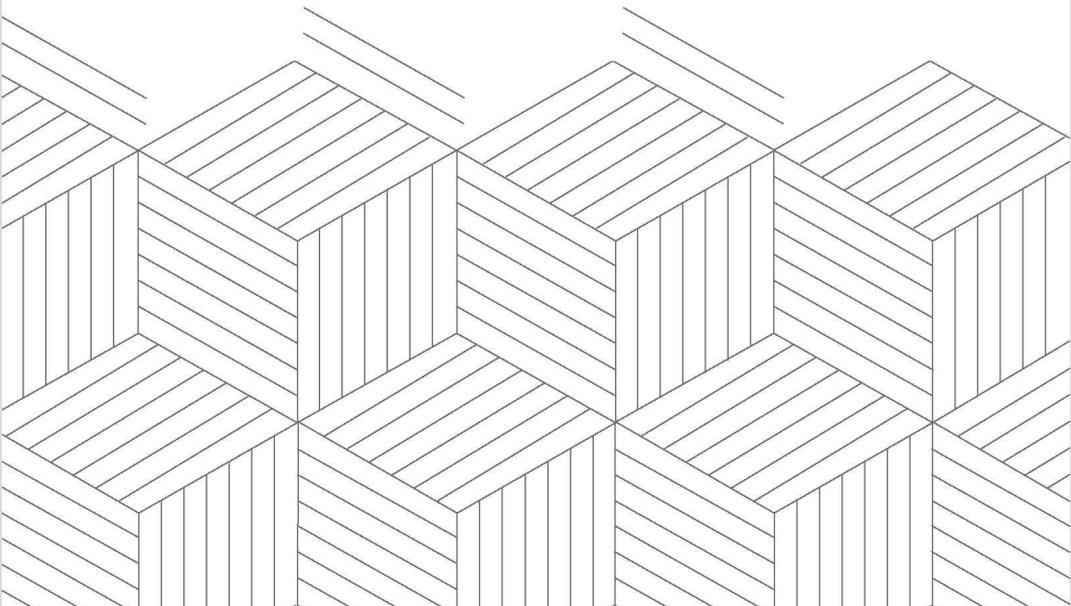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추진 근거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 조례 제3조	
시행일	2010년 10월 1일		2013년 7월(전면 시행)		2016년 10월		2015년 10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의 43%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 기준과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동시 충족							
지원 내용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4,061	생계급여	230,677~692,031원	생계급여	207,000~553,000원	행복(생계)급여	~542,000원
	해산급여	60만원(1인당)	해산급여	60만원(1인당)	부가급여	69,000~138,000원	해산급여	60만원(1인당)
	장제급여	75만원(1구당)	장제급여	75만원(1구당)	-		장제급여	75만원(1구당)
							동절기 난방비	연 2회 (가구당 10만원)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317,000원 -주택개량비 378만원 (경보수)~1,026만원 (대보수)	X		X		X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및 일부부담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급여	자활급여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X	X	X
	초	-부교재비 : 132,000원 -학용품비 : 71,000원			
		-부교재비 : 209,000원 -학용품비 : 81,000원			
		-부교재비 : 209,000원 -학용품비 : 81,000원 -정규 교육과정 교 과서 전체 -수업료·입학금 고 지금액 전액			

- 자료 1: 보건복지부(2019).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 부산광역시(2019). 2019년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3: 서울특별시(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4: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제4장 수원시 저소득 관련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제1절 수원시 저소득 관련 현황 분석
제2절 수원시 저소득 관련 지원정책 분석



제4장 수원시 저소득 관련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제1절 수원시 저소득 관련 현황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분별 현황

(1) 유형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 현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유형은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특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 수급자와 기타 수급자임(복지로, 2019)
 - 일반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함
 - 차상위자활은 근로능력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이며, 특례수급자는 일반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함
 -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수급자를 말하며, 시설수급자는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임
 - 기타 수급자로는 일반, 특례, 조건부, 시설 수급자 외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수급자를 의미함

〈표 4-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형

구분	내용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자활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특례수급자	◦ 일반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수급자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의 수급자
기타	◦ 일반, 특례, 조건, 시설 수급자 이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수급자 등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2016~2019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전국, 경기도, 수원시 지역별 및 수급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국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6년 1,630,614명 → 2019년 9월 1,853,217명으로, 경기도는 2016년 263,841명 → 2019년 9월 322,493명, 수원시는 2016년 18,472명 → 2019년 9월 21,805명으로 전국, 경기도, 수원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수원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현황은 일반수급자는 2016년 14,989명 → 2019년 9월 17,788명으로 약 2,800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시설수급자는 2016년 766명에서 2019년 9월 846명으로, 조건부수급자는 2016년 1,997명 → 2019년 9월 2,522명으로 증가해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모두 맞춤형 급여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반면 수원시의 특례수급자는 2016년 719명에서 2017년 554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9년 9월 기준 649명으로 집계됨

〈표 4-2〉 전국, 경기도, 수원시 수급자 현황(2016~2019.9월)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전국	계	1,630,614	1,581,646	1,743,690	1,853,217
	일반수급자	1,314,848	1,257,766	1,404,570	1,484,973
	시설수급자	91,075	89,996	89,909	89,587
	조건부수급자	168,823	190,778	206,388	230,607
	특례수급자	55,631	42,873	42,581	47,867
	기타수급자	237	233	242	183
경기도	계	263,841	261,050	297,122	322,493
	일반수급자	216,805	212,010	245,666	265,977
	시설수급자	14,897	15,018	15,617	16,065
	조건부수급자	22,929	26,454	28,304	32,499
	특례수급자	9,166	7,522	7,495	7,936
	기타수급자	44	46	40	16
수원시	계	18,472	18,128	20,478	21,805
	일반수급자	14,989	14,276	16,609	17,788
	시설수급자	766	795	813	846
	조건부수급자	1,997	2,502	2,472	2,522
	특례수급자	719	554	583	649
	기타수급자	1	1	1	0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2016년에서 2019년 9월까지 전국, 경기도, 수원시 수급률(인구대비 수급자수)은 전국의 경우 수급률이 2016년 3.2%에서 2019년 9월 3.6%까지 증가하였고, 경기도 역시 2016년 2.1%에서 2019년 9월 2.4%, 수원시는 2016년 1.5%에서 2019년 9월 기준 1.8%로 증가함
 - 수원시의 경우 전국, 경기도와 비교하여 수급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및 경기도 수급률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감소한 반면 수원시는 2016년과 2017년 동일한 수급률을 보임

〈표 4-3〉 전국·경기도·수원시 수급률 현황(2016~2019.9월)

(단위 :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전국	인구	51,696,216	51,778,544	51,826,059	51,849,253
	수급자수	1,630,614	1,581,646	1,743,690	1,853,217
	수급률	3.2	3.1	3.4	3.6
경기도	인구	12,716,780	12,873,895	13,077,153	13,207,219
	수급자수	263,841	261,050	297,122	322,493
	수급률	2.1	2.0	2.3	2.4
수원시	인구	1,194,041	1,202,628	1,201,166	1,196,074
	수급자수	18,472	18,128	20,478	21,805
	수급률	1.5	1.5	1.7	1.8

주 1: 수급률 = (지역의 수급자수/지역의 주민등록인구통계)×100

2: 지역의 수급자수 : 시설수급자 포함

3: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2) 가구원수별 수급가구수

- 2016~2019년 9월까지 수원시의 수급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연도별-수급자 구분 별 현황에서 1인가구의 일반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3인 이상 수급가구들의 대다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전체 수급가구는 2016년 8,492가구 → 2019년 9월 11,850가구로 3년 사이 약 3,300가구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 일반수급자는 2016년 7,054가구 → 2019년 9월 10,062가구로 약 3,000가구가 증가해 수급자 증가의 대부분이 1인가구 일반수급자임을 알 수 있음
 - 2인가구 전체 수급가구는 2016년 2,044가구(일반수급자 1,646가구) → 2019년 9월 2,444가구(일반수급자 1,977가구)로 증가하였고, 3인가구 수급가구는 2016년 1,483가구(일반수급자 1,233가구) → 2019년 9월 1,244가구(일반수급자 975가구)로 약 200가구가 감소함
 - 조건부수급가구 중 1인가구는 2016년 356가구 → 2019년 9월 572가구, 2인가구는 2016년 272가구 → 2019년 9월 362가구로 증가하였고, 특례수급자 중 1인가구는 2016년 353가구 → 2019년 9월 407가구로 증가한 반면, 2인가구는 2016년 107가구 → 2019년 9월 기준 94가구로 다소 감소함
 - 시설수급자 중 1인가구는 2016년 728가구에서 2019년 9월 809가구로 약간 증가하

였고, 2인가구는 2016년 19가구 → 2019년 9월 기준 11가주로 감소함

〈표 4-4〉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가구원수별 수급가구 현황(2016~2019.9월)

(단위 :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2016년	계	8,492	2,044	1,483	737	292	82	31
	일반수급자	7,054	1,646	1,233	631	256	72	25
	시설수급자	728	19	11	8	0	0	0
	조건부수급자	356	272	195	92	34	9	6
	특례수급자	353	107	44	6	2	1	0
	기타수급자	1	0	0	0	0	0	0
2017년	계	8,964	1,991	1,375	653	234	64	29
	일반수급자	7,451	1,568	1,075	529	196	52	21
	시설수급자	758	19	11	7	0	0	0
	조건부수급자	438	319	265	112	37	12	8
	특례수급자	316	85	24	5	1	0	0
	기타수급자	1	0	0	0	0	0	0
2018년	계	10,648	2,289	1,346	574	213	60	27
	일반수급자	9,045	1,862	1,049	461	179	47	19
	시설수급자	782	14	5	7	5	0	0
	조건부수급자	484	322	268	102	29	13	8
	특례수급자	336	91	24	4	0	0	0
	기타수급자	1	0	0	0	0	0	0
2019.9월	계	11,850	2,444	1,244	516	220	52	32
	일반수급자	10,062	1,977	975	424	178	35	25
	시설수급자	809	11	12	4	10	0	0
	조건부수급자	572	362	237	85	32	16	7
	특례수급자	407	94	20	3	0	1	0
	기타수급자	0	0	0	0	0	0	0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3) 성별 및 수급자구분별 수급자 현황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성별은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유형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이 특징임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및 성별에 대한 2016~2019.9월 말 수급자 현황을 보면, 남성 수급자는 2016년 8,369명 → 2019년 9월 9,805명으로 약 1,400명

증가하였고, 여성 수급자 역시 2016년 10,103명 → 2019년 9월 12,000명으로 약 1,800명 증가함

- 2019년 9월 기준, 수원시 남성 수급자 전체 9,805명 중 일반수급자는 8,106명이며, 시설수급자 276명, 조건부수급자 1,151명, 특례수급자 272명이고 기타 수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9월 기준, 수원시 여성 수급자 전체 12,000명 중 일반수급자는 9,682명이며, 시설수급자는 570명, 조건부수급자 1,371명, 특례수급자 377명이고 기타 수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별 현황(2016~2019.9월)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계	계	18,472	18,128	20,478	21,805
	일반수급자	14,989	14,276	16,609	17,788
	시설수급자	766	795	813	846
	조건부수급자	1,997	2,502	2,472	2,522
	특례수급자	719	554	583	649
	기타수급자	1	1	1	0
남성	계	8,369	8,288	9,264	9,805
	일반수급자	6,908	6,655	7,626	8,106
	시설수급자	235	255	269	276
	조건부수급자	933	1,138	1,119	1,151
	특례수급자	292	239	249	272
	기타수급자	1	1	1	0
여성	계	10,103	9,840	11,214	12,000
	일반수급자	8,081	7,621	8,983	9,682
	시설수급자	531	540	544	570
	조건부수급자	1,064	1,364	1,353	1,371
	특례수급자	427	315	334	377
	기타수급자	0	0	0	0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4) 연령구간별 수급자 현황

- 생애주기별 연령구간에 따른 2016~2019년 9월까지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구간별 수급자 현황의 경우 2016~2019년 9월까지 각 연도마다 65세 이상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 중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 수급자수는 2016년 5,356명에서 2018년 7,144명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9월 7,972명으로 나타남
 - 2019년 9월 기준,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많은 연령구간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수급자가 7,9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59세 3,300명, 40~49세 2,222명, 60~64세 1,789명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7세 미만 수급자가 568명으로 가장 적음
- 2016년을 기준으로 2019년 9월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구간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추이를 살펴보면, 7세 미만 수급자수는 2016년 468명에서 2019년 9월 568명으로 증가하였고, 7~12세, 13~15세, 16~18세 연령구간에 속한 수급자수는 2016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반면 19세부터 65세 이상 연령구간에 속한 수급자수는 2016년 이후 2017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4-6〉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연령구간별 수급자 현황(2016~2019.9월)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계		18,472	18,128	20,478	21,805
연령	7세 미만	468	428	501	568
	7~12세	1,645	1,537	1,481	1,449
	13~15세	1,276	1,130	987	964
	16~18세	1,919	1,611	1,455	1,242
	19~29세	1,220	1,182	1,284	1,337
	30~39세	752	711	857	962
	40~49세	1,993	1,920	2,110	2,222
	50~59세	2,699	2,756	3,119	3,300
	60~64세	1,144	1,239	1,540	1,789
	65세 이상	5,356	5,614	7,144	7,972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그림 4-1〉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연령구간별 수급자 현황(2016~2019.9월)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2) 일반수급가구 현황

(1) 연령대별 장애인포함 가구수 및 장애인 수급자수

- 기초생활보장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일반수급자 중 장애인포함 수급 가구와 장애인 수급자수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포함 전체 수급 가구수는 2016년 4,393가구에서 2019년 9월 기준 5,373가구로 꾸준히 증가함
 - 장애인포함 수급가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50~59세 연령구간에 속한 장애인포함 수급가구수가 모든 연령구간 중 가장 많았으며, 0~9세 수급가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80세 이상 연령구간 장애인포함 수급 가구수는 2016년 259가구에서 2019년 9월 578가구로 약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임
- 수원시 전체 장애인 수급자수는 2016년 4,486명에서 2019년 9월 5,484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령대별 장애인 수급자수를 살펴보면, 50~59세 연령구간 장애인 수급자수는 2016

년 1,312명에서 2019년 9월 1,430명으로 모든 연도별, 연령대별에서 장애인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9월 기준, 수원시 장애인 수급자수는 0~9세 40명, 10~19세 147명, 20~29세 132명, 30~39세 386명, 40~49세 782명, 50~59세 1,430명, 60~69세 1,143명, 70~79세 834명, 80세 이상은 590명으로 나타남

〈표 4-7〉 수원시 연령대별 장애인포함 일반수급가구수 및 장애인 수급자수(2016~2019.9월)

(단위 : 가구,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장애인포함 수급 가구수	계	4,393	4,493	5,171	5,373
	0~9세	37	35	36	37
	10~19세	131	141	151	137
	20~29세	124	130	137	129
	30~39세	306	301	348	380
	40~49세	792	775	787	768
	50~59세	1,288	1,315	1,414	1,402
	60~69세	873	907	1,064	1,124
	70~79세	583	608	767	818
	80세 이상	259	281	467	578
장애인 수급자수	계	4,486	4,589	5,271	5,484
	0~9세	40	37	38	40
	10~19세	135	145	158	147
	20~29세	129	135	141	132
	30~39세	314	306	353	386
	40~49세	809	790	800	782
	50~59세	1,312	1,341	1,440	1,430
	60~69세	891	925	1,086	1,143
	70~79세	595	626	779	834
	80세 이상	261	284	476	590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2) 일반수급가구 근로능력 판정유형별 수급자수

- 기초생활보장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일반 수급자를 근로능력 판정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2016~2019년 9월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근로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2016년 3,465명에서 2017년 3,217명 → 2018년 2,897명 → 2019년 9월 2,83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2016년 11,159명에서 2019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9월 기준 12,359명에 해당함
- ‘근로능력 해당없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2016년 148명에서 2017년 21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이후 감소하여 2019년 9월 기준 152명으로 나타남

〈표 4-8〉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유무(2016~2019.9월)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계	14,772	14,731	15,107	15,343
근로능력 있음	3,465	3,217	2,897	2,832
근로능력 없음	11,159	11,298	12,020	12,359
근로능력 해당없음	148	216	190	152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판정유형이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학생 등 조건부 수급자임을 판정하는 유형을 의미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판정유형은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며, ‘근로능력 있음’과 ‘근로능력 해당없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판정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유형은 연령(연소 및 연로), 장애, 질병부상, 군복무, 희귀난치성질환,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기타로 구분됨
 - 근로능력판정유형 중 연령(연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2016년 1,728명에서 2018년까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19년 9월 기준 1,492명으로 감소추세이고, 64세 이상 연령(연로)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2016년 4,311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9월 기준 5,070명임
 - 장애판정유형 수급자는 2016년 2,450명에서 2019년 9월 기준 2,733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질병부상 판정유형 수급자 역시 2016년 2,030명에서 2019년 9월 기준 2,28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희귀난치성질환 판정유형 수급자는 2016년 408명에서 2017년 380명으로 약간 감소

- 하였다가 2018년 396명, 2019년 9월 421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판정유형은 2016년 104명에서 2017년 8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110명, 2019년 9월 기준 109명 나타나 100명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판정유형은 2016년 128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9월 기준 250명으로 나타남
 - 2019년 9월 기준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판정유형의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면 연령(연로)(5,070명) > 장애(2,733명) > 질병부상(2,284명) > 연령(연소)(1,492명) > 희귀난치성질환(421명) > 기타(250명) >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109명) > 군복무(0명) 순으로 나타남

〈표 4-9〉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판정유형 수급자수(2016~2019.9월)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근로능력 있음	판정유형 없음	3,465	3,217	2,897	2,832
근로능력 없음	연령(연소)	1,728	1,552	1,581	1,492
	연령(연로)	4,311	4,471	4,840	5,070
	장애	2,450	2,529	2,684	2,733
	질병부상(진단서제출)	2,030	2,122	2,209	2,284
	군복무	0	0	0	0
	희귀난치성질환	408	380	396	421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104	87	110	109
	기타	128	157	200	250
근로능력 해당없음	판정유형 없음	148	216	190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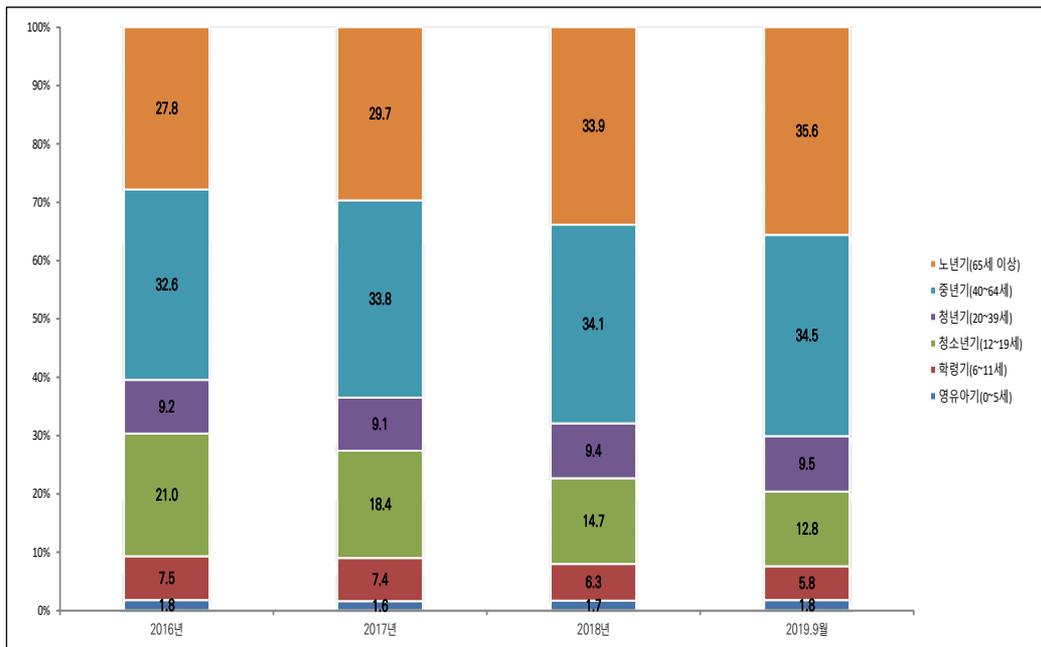
- 주 1: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학생 등 조건부 수급자임을 판정하는 유형
 2: 연령(연소)-18세 미만인 경우
 3: 연령(연로)-64세 초과한 경우
 4: 장애-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5: 질병부상(진단서제출)-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상처를 입었거나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6: 군복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7: 희귀난치성질환-베체트병,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 등 2만명 이하의 유병률 질환
 8: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중고교에 재학 중인 20세 미만의 학생
 9: 기타-근로능력판정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경우
 10: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3) 일반수급가구 연령별 수급자수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를 생애주기별(영유아(0~5세),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여 살펴본 수급자수 및 수급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생애주기별 수급자수 대비 수급률은 중년기(40~64세) 수급자 수급률이 2016년 32.6% → 2017년 33.8% → 2018년 34.1%로 전 생애주기 중 가장 높은 수급률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 9월 기준 노년기(65세 이상) 수급률이 전체 34.5%를 차지해 중년기 수급률 34.6%를 추월함
 - 2016~2019년 9월까지 생애주기별 인구 대비 수급률을 살펴보면 노년기(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이 2016년 4.7% → 2017년 4.6% → 2018년 5.7% → 2019년 9월 6.1%로 전 생애주기에서 인구수 대비 수급률이 가장 높음
 - 2019년 9월 기준 노년기(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은 6.1%로 다른 생애주기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그림 4-2〉 수원시 연령별 일반수급자 비율(2016~2019.9월)



주: 수급률은 수급대상 집단 중 급여를 받는 가구(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표 4-10〉 수원시 연령별 일반수급자 현황(2016~2019.9월)

(단위 : 명, %)

구분		계	영유아기 (0~5세)	학령기 (6~11세)	청소년기 (12~19세)	청년기 (20~39세)	중년기 (40~64세)	노년기 (65세 이상)
2016년	수급자 수	17,706	316	1,330	3,726	1,637	5,773	4,924
	수급률	100.0	1.8	7.5	21.0	9.2	32.6	27.8
	총 인구수	1,194,041	70,161	69,712	115,123	380,940	454,113	103,992
	인구 대비 수급률	1.5	0.5	1.9	3.2	0.4	1.3	4.7
2017년	수급자 수	17,333	280	1,275	3,193	1,585	5,852	5,148
	수급률	100.0	1.6	7.4	18.4	9.1	33.8	29.7
	총 인구수	1,202,628	67,584	70,637	109,292	381,973	461,475	111,667
	인구 대비 수급률	1.4	0.4	1.8	2.9	0.4	1.3	4.6
2018년	수급자 수	19,665	328	1,233	2,897	1,851	6,699	6,657
	수급률	100.0	1.7	6.3	14.7	9.4	34.1	33.9
	총 인구수	1,201,166	62,451	71,300	104,355	379,616	466,188	117,256
	인구 대비 수급률	1.6	0.5	1.7	2.8	0.5	1.4	5.7
2019.9월	수급자 수	20,959	372	1,217	2,688	1,982	7,237	7,463
	수급률	100.0	1.8	5.8	12.8	9.5	34.5	35.6
	총 인구수	1,196,074	58,969	69,898	101,839	373,631	469,736	122,001
	인구 대비 수급률	1.8	0.6	1.7	2.6	0.5	1.5	6.1

주 1: 생애주기는 영유아기(0~5세),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분류함

2: 지역의 수급자수: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3: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4) 일반수급가구 가구구성별 수급가구 수

- 기초생활보장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일반수급자)의 구성유형에 대한 2016~2019.9월 현황을 수급가구수와 수급자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 현황은 2016년 12,395가구에서 2017년 12,515가구 → 2018년 14,344가구 → 2019년 9월 15,512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가구구성별 수급가구수를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2016년 6,164가구에서 2019년 9월 기준 8,581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독가구수는 전체 수급가구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함
 - 수급가구수 기준으로 부부가구는 2016년 665가구에서 2019년 9월 기준 1,036가구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자녀동거가구는 2016년 3,715가구에서 2017년 3,604가구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8년 3,766가구에서 2019년 9월 3,816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임
 - 그 외 가족동거 가구는 2016년 885가구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9년 9월 기준 9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 해당하는 수급가구수는 2016년 825가구에서 2019년 9월 1,059가구로 증가함
 - 반면 비혈연가구는 2016년 141가구로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9월 기준 120가구로 나타남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가구구성별 수급가구수 및 수급자수의 경우 단독가구와 자녀동거가구가 전체 수급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독가구 수급자수는 2016년 6,358명에서 2017년 6,607명 → 2018년 7,945명 → 2019년 9월 8,78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수급자수가 급격히 증가함
 - 부부가구 및 자녀동거가구 수급자수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부부가구 수급자수는 2016년 1,153명에서 2019년 9월 기준 1,713명으로, 자녀동거가구 수급자수는 2016년 7,715명에서 2019년 9월 기준 7,798명으로 증가함
 - 반면 비혈연가구 수급자수는 2016년 143명에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9년 9월 기준 124명이었으며, 그 외 가족동거 수급자수는 2016년 1,223명에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19년 9월 기준 1,158명으로 나타남
 - 기타에 해당하는 수급자수는 2016년 1,114명에서 2017년 1,089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9년 9월 기준 1,377명으로 나타남

〈표 4-11〉 수원시 가구구성별 수급가구수 및 수급자수(2016~2019.9월)

(단위 : 가구,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수급가구	계	12,395	12,515	14,344	15,512
	단독가구	6,164	6,432	7,749	8,581
	부부가구	665	680	935	1,036
	자녀동거가구	3,715	3,604	3,766	3,816
	비혈연가구	141	132	122	120
	그 외 가족동거	885	848	880	900
	기타	825	819	892	1,059
수급자 수	계	17,706	17,333	19,665	20,959
	단독가구	6,358	6,607	7,945	8,789
	부부가구	1,153	1,147	1,557	1,713
	자녀동거가구	7,715	7,206	7,667	7,798
	비혈연가구	143	133	125	124
	그 외 가족동거	1,223	1,151	1,192	1,158
	기타	1,114	1,089	1,179	1,377

주 1: 단독가구(1인으로 구성된 가구), 부부가구(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자녀동거가구(자녀가 동거하는 가구), 그 외 가족동거(자녀 이외 가족과 동거하는 가구), 비혈연가구(혈연관계가 없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구), 기타(단독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2: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3) 자격별 현황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 실시하는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됨
- 맞춤형 급여개편 이후 2016년을 기준으로 2019년 9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별 현황을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중복을 제거한 수급가구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2016년 10,321가구에서 2017년 10,653가구 → 2018년 11,095가구 → 2019년 9월 기준 11,464가구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2016년 907가구에서 2017년 903가구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8년 1,022가구, 2019년 9월 1,141가구로 나타남
 - 주거급여는 2016년 121가구에서 2017년 129가구로 집계된 이후 2018년 1,786가구로 약 1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9년 9월 기준 2,754가구로 나타나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 교육급여는 2016년 1,812가구에서 2017년 1,625가구 → 2018년 1,254가구 → 2019년 9월 999가구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수 2016~2019년 9월까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생계급여의 경우 2016년 13,819명에서 2017년 13,956명 → 2018년 14,285명 → 2019년 9월 기준 14,50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2016년 1,699명에서 2017년 1,547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9년 9월 기준 1,668명으로 나타남
 - 주거급여 수급자수는 2016년 250명 → 2017년 247명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기준으로 2018년 2,777명, 2019년 9월 4,194명으로 2016년도와 비교하여 약 10배 이상 증가함
 - 교육급여 수급자수는 2016년 2,704명에서 2017년 2,378명 → 2018년 1,800명 → 2019년 9월 1,43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표 4-12〉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2016~2019.9월)_중복제거
(단위 : 가구,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수급가구	계	13,161	13,310	15,157	16,358
	생계급여	10,321	10,653	11,095	11,464
	의료급여	907	903	1,022	1,141
	주거급여	121	129	1,786	2,754
	교육급여	1,812	1,625	1,254	999
수급자수	계	18,472	18,128	20,478	21,805
	생계급여	13,819	13,956	14,285	14,504
	의료급여	1,699	1,547	1,616	1,668
	주거급여	250	247	2,777	4,194
	교육급여	2,704	2,378	1,800	1,439

주 1: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중복제거 집계 통계데이터

2: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기초주거 급여 및 서비스를 받는 수원시 수급가구의 주거유형 대부분은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체 14,235가구의 주거유형 중 가장 많은 주거유형은 민간(보증부월세) 2,922가구였으며, 다음으로 공공전세임대(전세임대) 2,586가구, 공공매입

- 임대(매입임대) 1,433가구, 공공건설임대(영구임대) 1,377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민간(보증부 월세) 주거유형의 경우 2016년 1,961가구에서 2017년 1,931가구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8년 2,424가구 → 2019년 9월 2,922가구로 꾸준히 증가함
 - 공공전세임대(전세임대)는 2016년 1,568가구에서 2017년 1,816가구 → 2018년 2,406가구 → 2019년 9월 2,586가구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4-13〉 수원시 기초주거급여 주거유형별 수급가구수(2016~2019.9월)

(단위 : 가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계	10,789	10,919	12,909	14,235
자가주택(전체소유)	162	152	198	215
자가주택(부분소유)	11	15	14	12
자가주택(기타)	28	28	27	25
공공건설임대(영구임대)	1,114	1,160	1,254	1,377
공공건설임대(국민임대)	562	565	779	885
공공건설임대(공공기타)	23	15	32	40
공공매입임대(매입임대)	1,136	1,240	1,382	1,433
공공전세임대(전세임대)	1,568	1,816	2,406	2,586
민간(월세)	677	723	792	943
민간(사글세)	2	2	1	4
민간(전세)	647	540	653	709
민간(보증부 월세)	1,961	1,931	2,424	2,922
사용대차전체(기타 대가 유)	590	450	409	324
사용대차전체(기타 대가 무)	1	4	3	2
사용대차부분(기타 대가 유)	1,073	1,160	1,136	953
사용대차부분(기타 대가 무)	6	2	5	5
사용대차(급여 미지급)	-	-	143	292
사용대차전체(별도가구특례)	-	-	11	9
사용대차부분(별도가구특례)	-	-	200	498
사용대차부분(지방생활보장위원회)	-	-	-	1
개인운영시설(공동생활가정 등)	113	76	121	161
기타	1,115	1,040	919	839

주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적용

2: 2018년부터 3개 주거유형 추가-사용대차(급여미지급), 사용대차전체(별도가구특례), 사용대차부분(별도가구특례)

3: 2018년부터 '개인운영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명칭 변경

4: 2019년부터 1개 주거유형 추가-사용대차부분(지방생활보장위원회)

5: 시설입소(급여미지급) 제외

6: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기초생활보장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격별 수급가구에 대한 2016~2019년 9월 기준 중복허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2016년 10,321가구에서 2019년 9월 11,464가구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역시 2016년 11,157가구에서 2019년 9월 12,407가구로 매년 증가함
 -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16년 10,789가구에서 2019년 9월 14,241가구로 증가하였고,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2016년 3,226가구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9월 기준 2,419가구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에 대한 2016~2019년 9월 기준 중복허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16년 13,819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 9월 기준 14,504명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역시 2016년 15,492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9월 기준 16,079명으로 나타남
 - 주거급여 수급자수는 2016년 15,217명에서 2017년 15,040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2018년 17,799명, 2019년 9월 기준 19,408명으로 나타남
 - 교육급여 수급자수는 2016년 4,708명에서 2017년 4,185명 → 2018년 3,801명 → 2019년 9월 기준 3,46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표 4-14〉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2016~2019.9월)_중복허용

(단위 : 가구,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수급가구	계	35,493	35,920	38,627	40,531
	생계급여	10,321	10,653	11,095	11,464
	의료급여	11,157	11,448	11,964	12,407
	주거급여	10,789	10,919	12,909	14,241
	교육급여	3,226	2,900	2,659	2,419
수급자수	계	49,236	48,644	51,722	53,460
	생계급여	13,819	13,956	14,285	14,504
	의료급여	15,492	15,463	15,837	16,079
	주거급여	15,217	15,040	17,799	19,408
	교육급여	4,708	4,185	3,801	3,469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4) 의료급여 현황

- 의료급여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를 연령구간별로 구분하면 0세부터 49세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50세 이상 부터는 증가하고 있음
 - 0~9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6년 914명에서 2017년 855명 → 2018년 790명 → 2019년 9월 기준 75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10~19세는 역시 2016년 2,14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9월 기준 1,685명으로 나타남
 - 20~29세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6년 1,109명에서 2019년 9월 기준 1,020명으로, 30~39세는 2016년 800명에서 2019년 9월 747명으로, 40~49세는 2016년 2,051명에서 2019년 9월 1,843명으로 0세부터 49세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반면 50~59세는 2016년 2,789명에서 2019년 9월 3,038명으로, 60~69세는 2016년 2,542명에서 2019년 9월 3,094명으로, 70세 이상은 2016년 4,908명에서 2019년 9월 5,468명으로 나타나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6년 이후 2019년 9월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5〉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연령구간별 수급자수(2016~2019.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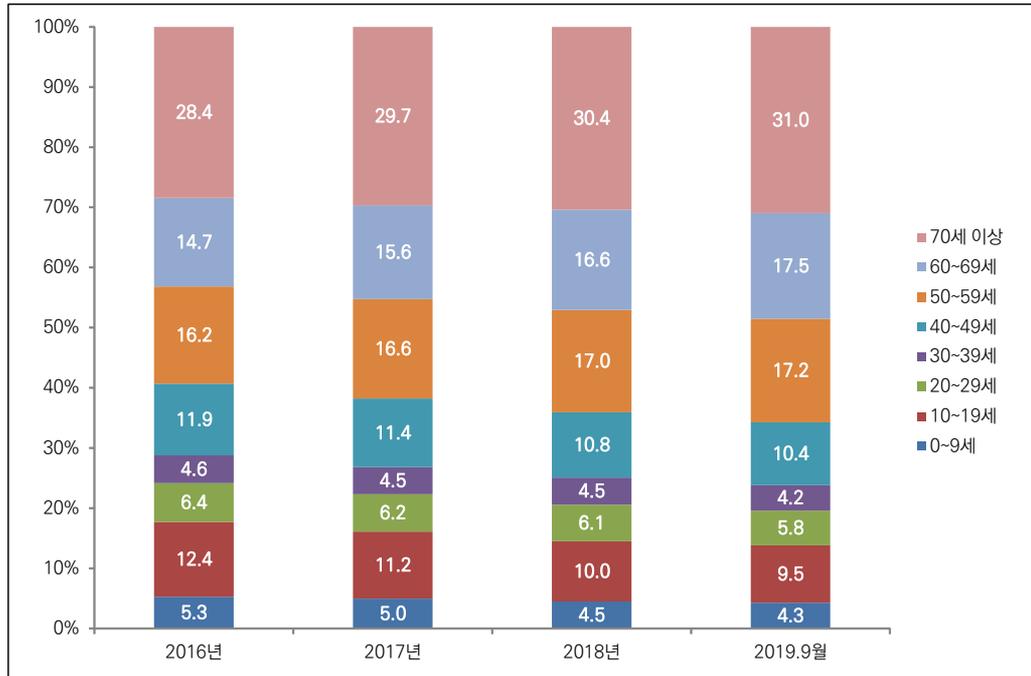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계		17,260	17,190	17,483	17,652
연령대	0~9세	914	855	790	757
	10~19세	2,147	1,918	1,745	1,685
	20~29세	1,109	1,067	1,067	1,020
	30~39세	800	770	787	747
	40~49세	2,051	1,960	1,895	1,843
	50~59세	2,789	2,845	2,974	3,038
	60~69세	2,542	2,674	2,910	3,094
	70세 이상	4,908	5,101	5,315	5,468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그림 4-3〉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연령구간별 수급자 비율(2016~2019.9월)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2016~2019년 9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료급여 수급자 남성은 2016년 7,561명에서 2017년 7,610명 → 2018년 7,816명 → 2019년 9월 7,95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2016년 9,699명에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19년 9월 기준으로 9,694명으로 나타남
 - 2019년 9월 기준 수원시 의료급여 수급자 총 17,652명 중 남성은 7,958명, 여성은 9,694명으로 집계됨

〈표 4-16〉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성별(2016~2019.9월)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계		17,260	17,190	17,483	17,652
성별	남성	7,561	7,610	7,816	7,958
	여성	9,699	9,580	9,667	9,694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의료급여 관련법에 의한 급여(또는 서비스)를 받는 수급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종별(1, 2종) 분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됨
 - 2016년 의료급여 1종 수급가구는 10,840가구, 2종 수급가구는 2,485가구였으며, 1종 수급가구는 2017년 11,336가구 → 2018년 11,793가구 → 2019년 9월 12,176가구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종 수급가구는 2017년 2,360가구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8년 2,473가구 → 2019년 9월 2,475가구로 나타나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
 - 2016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2,757명에서 2017년 13,117명 → 2018년 13,417명 → 2019년 9월 13,729명으로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2016년 4,502명에서 2017년 4,072명 → 2018년 4,065명 → 2019년 9월 3,92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기타에 해당하는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는 2016~2019년 9월까지 1가구, 1명으로 동일함

〈표 4-17〉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종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 수(2016~2019.9월)

(단위 : 가구,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수급 가구	계	13,326	13,697	14,267	14,652
	1종	10,840	11,336	11,793	12,176
	2종	2,485	2,360	2,473	2,475
	기타	1	1	1	1
수급자 수	계	17,260	17,190	17,483	17,652
	1종	12,757	13,117	13,417	13,729
	2종	4,502	4,072	4,065	3,922
	기타	1	1	1	1

주 1: 1종-기초생활보장 대상 중 근로능력무능력가구,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노숙인 등, 2종-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가구

2: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2. 차상위계층 수급자 현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대상자 중 차상위본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장애인 자격을 보유한 대상자에 대한 2016~2019년 9월 기준 중복제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수원시 차상위계층 수급자수는 2016년 12,403명에서 2017년 12,350명 → 2018년 12,232명 → 2019년 9월 12,12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수원시 차상위계층 수급자 수(2016~2019.9월)_중복제거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수급자 수	12,403	12,350	12,232	12,121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중복제거 집계 통계데이터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수원시 차상위계층 자격구분별 수급자를 연령구간으로 구분하여 2016~2019년 9월 기준 수급자수 중복허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14,340명이었으며, 2017년 14,197명 → 2018년 13,987명 → 2019년 9월 13,80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9월 기준 수원시 차상위계층 자격구분별 수급자수 현황을 연령구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0~9세 연령구간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한부모가족 자격 수급자가 1,0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 수급자가 532명으로 많음
 - 10~19세 연령구간 역시 한부모가족 자격 수급자가 2,4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 수급자가 1,175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9세와 30~39세, 40~49세, 50~59세 연령구간 모두 한부모가족 자격 수급자가 각각 787명, 559명, 1,299명, 534명으로 가장 많음
 - 60~69세의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 수급자가 3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상위장애인 자격 수급자가 264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70세 이상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차상위장애인 자격 수급자가 1,03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 수급자가 763명으로 많음

〈표 4-19〉 수원시 차상위계층 자격구분별 연령구간 수급자수(2016~2019.9월) 중복허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계		14,340	14,197	13,987	13,802
0~9세	차상위계층 확인	32	34	31	40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656	642	578	532
	차상위자활	0	0	0	0
	차상위장애인	34	24	22	26
	한부모가족	1,035	1,002	1,010	1,016
10~19세	차상위계층 확인	39	74	81	11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464	1,353	1,253	1,175
	차상위자활	2	1	0	0
	차상위장애인	52	63	69	68
	한부모가족	2,835	2,593	2,548	2,452
20~29세	차상위계층 확인	106	169	198	188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50	51	61	58
	차상위자활	8	8	8	12
	차상위장애인	69	64	49	52
	한부모가족	890	909	875	787
30~39세	차상위계층 확인	39	59	79	8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75	72	67	56
	차상위자활	50	30	31	28
	차상위장애인	146	123	97	115
	한부모가족	630	584	577	559
40~49세	차상위계층 확인	79	133	157	17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80	270	265	245
	차상위자활	99	90	72	82
	차상위장애인	257	254	227	205
	한부모가족	1,560	1,437	1,390	1,299
50~59세	차상위계층 확인	94	144	183	19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53	402	399	410
	차상위자활	143	114	103	108
	차상위장애인	223	223	198	193
	한부모가족	506	514	559	534
60~69세	차상위계층 확인	67	108	116	136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93	324	337	347
	차상위자활	79	74	77	71
	차상위장애인	291	280	265	264
	한부모가족	31	34	37	44
70세 이상	차상위계층 확인	306	377	318	31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585	647	705	763
	차상위자활	4	4	4	6
	차상위장애인	873	905	932	1,035
	한부모가족	5	8	9	12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말, 2019년 9월 말 기준 중복허용 집계 통계 데이터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자 현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5878호, 2005.12.23. 제정)에 근거한 제도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함(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2013~2019년 9월 기간 지원항목별 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1,929명이었으며 2014년 3,135명 → 2015년 8,487명 → 2016년 6,960명 → 2017년 6,688명 → 2018년 8,525명 → 2019년 9월 8,780명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대상자수는 2015년 급증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긴급복지 지원내용 중 위기상황 주 급여에 해당하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 대상자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위기상황 주 급여의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2013년 928명에서 2015년 5,659명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4,300명, 2017년 4,449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19년 9월 기준 5,593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비 지원은 2013년 308명이 지원받았으며, 2015년부터는 꾸준히 600명 이상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2019년 9월 기준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494명으로 나타남
 - 주거비 지원 대상자는 2013년 290명에서 2015년 이후 40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았으며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한 337명이 지원받은 반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1,643명이 지원을 받아 2018년과 비교하여 약 5배 이상 증가함
 - 복지시설이용 대상자는 2013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부가급여는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으로 구분되며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교육지원 대상자는 2013년 4명이 지원받았고, 2015년 13명,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4명, 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9년 9월 기준 교육지원 대상자는 8명으로 나타남
 - 동절기 연료비 지원대상자는 2013년 387명에서 2015년 1,75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6년(1,547명), 2017년(1,077명)에는 감소하였으나, 2018년 1,899명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9년 9월 기준 1,027명이 지원받음

- 해산비 지원대상자는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대상자수는 2~4명 수준이었으며, 2019년 9월 2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장제비 지원대상자는 2013년 9명에서 2015년 20명으로 증가한 이후 2018년 18명 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9년 9월 기준 7명이 장제비 지원을 받음
- 전기요금 지원대상자는 2013년에서 2018년까지 1~4명 수준으로 지원받았으며 2019년 9월 기준으로 6명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0〉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현황(2016~2019.9월)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계		1,929	3,135	8,487	6,960	6,688	8,525	8,780
위기상황 주 급여	생계	928	1,863	5,659	4,300	4,449	5,623	5,593
	의료	308	348	613	664	655	638	494
	주거	290	290	421	402	454	337	1,643
	복지시설이용	-	-	-	-	-	-	0
부가급여	교육	4	3	13	24	26	2	8
	동절기연료비	387	623	1,753	1,547	1,077	1,899	1,027
	해산비	2	1	4	3	4	4	2
	장제비	9	7	20	19	20	18	7
	전기요금	1	-	4	1	3	4	6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2013~2019년 9월 간 지원항목별 지원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긴급복지 지원액 총액 기준으로 2013년 948,230천원에서 2015년 2,957,552천원으로 3배정도 지원액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3,413,183천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9월 기준 2,871,729천원이 지원됨
 -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위기상황 주 급여별 지원액 현황을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생계 지원액의 경우 2013년 298,638천원에서 2014년 608,802천원 → 2015년 1,843,539천원 → 2016년 1,418,383천원 → 2017년 1,579,409천원 → 2018년

- 2,053,080천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고 2019년 9월 기준 2,071,203천원이 생계비로 지원됨
- 의료비지원액은 2013년 574,378천원에서 2018년 1,167,366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9년 9월 기준으로는 439,016천원이 지원되었고, 주거비지원액은 2013년 48,491천원에서 2018년 76,672천원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9월 기준 291,853천원으로 2018년과 비교하여 지원액이 약 4배 증가함
 -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부가급여 지원액 현황을 지원항목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 지원액은 2013년 1,025천원에서 2017년까지 7,702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671천원으로 급감하였으나, 2019년 9월 기준 교육 지원액이 2,456천원으로 다시 증가함
 - 동절기 연료비 지원액은 2013년 17,655천원에서 2018년 99,450천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9년 9월 기준 60,252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액은 2019년 9월 기준 각각 1,200천원, 5,250천원, 499천원으로 해산비와 장제비는 이전에 비해 지원액이 감소하였으나 전기요금은 2018년과 비교해 10배 이상 지원액이 증가하였음

〈표 4-21〉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액 현황(2013~2019년 9월)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9월
계		948,230	1,124,082	2,957,552	2,539,964	2,543,717	3,413,183	2,871,729
위기 상황 주 급여	생계	298,638	608,802	1,843,539	1,418,383	1,579,409	2,053,080	2,071,203
	의료	574,378	427,648	943,100	943,640	801,518	1,167,366	439,016
	주거	48,491	48,491	67,226	73,078	79,563	76,672	291,853
	복지시설이용	-	-	-	-	-	-	-
부가 급여	교육	1,025	735	5,042	6,968	7,702	671	2,456
	동절기 연료비	17,655	32,556	80,902	80,920	57,994	99,450	60,252
	해산비	1,000	600	2,400	1,800	2,400	2,400	1,200
	장제비	6,750	5,250	14,250	15,000	15,000	13,500	5,250
	전기요금	293	-	1,093	175	131	44	499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4. 무한돌봄사업(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자 현황

-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실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임(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조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례 제2조)
 - “위기상황”의 정의는 다음의 <표 4-22>와 같음

<표 4-22>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 위기상황

위기상황의 정의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 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4.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5.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6.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7.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자료: 경기도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http://www.gg.go.kr/gg_care)

- 무한돌봄사업 지원은 다음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따르며, 무한돌봄사업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임

<표 4-23> 무한돌봄사업 소득기준(2019년 기준)

(단위 : 원, 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중위소득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주: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8,027,552원)

자료: 경기도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http://www.gg.go.kr/gg_care)

- 무한돌봄사업에 의한 지원내용은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교육비, 5. 사례관리, 6. 그 밖의 지원으로 구분됨

〈표 4-24〉 무한돌봄 지원내용

구분	무한돌봄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지원방법	◦ 무한돌봄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기준	◦ 1인(432,900원/월)~4인(1,170,400원/월)																			
	지원기간	◦ 3개월(위기 지속시 3개월 추가 지원)																			
의료비	지원대상	◦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지원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실거주자																			
	지원범위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급여 항목 지원 ※ 퇴원 전 지원요청시 능(의료기구 구입,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지원불가)																			
주거비	지원대상	◦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기준	(단위 : 원, 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지역</th> <th colspan="3">가구구성원수</th> </tr> <tr> <th>1~2인</th> <th>3~4인</th> <th>5~6인</th> </tr> </thead> <tbody> <tr> <td>대도시</td> <td>387,200</td> <td>643,200</td> <td>848,600</td> </tr> <tr> <td>중소도시</td> <td>253,800</td> <td>422,900</td> <td>557,400</td> </tr> <tr> <td>보증금</td> <td colspan="3">가구별 5,000천원 한도</td> </tr> </tbody> </table>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 지급	지역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53,800	422,900	557,400	보증금	가구별 5,000천원 한도		
	지역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53,800	422,900	557,400																		
보증금	가구별 5,000천원 한도																				
지원기간	◦ 3개월 지원가능(지원 후 위기상황 지속시 추가 9개월 지원 가능)																				
교육비	지원대상	◦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포함된 가구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자 ※ 국가 및 지자체 타 교육지원 받는 가구 제외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및 초·중·고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방법	◦ 수업료·입학금은 지원대상자의 학교 계좌로 납입 지원																			
	지원기준	(단위 : 천원, 분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초등학생</th> <th>중학생</th> <th>고등학생</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금액</td> <td>214</td> <td>340</td> <td>- 417천원 -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td> </tr> </tbody> </table>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금액	214	340	- 417천원 -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금액	214	340	- 417천원 -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1회(생계비 지원 연장 시 해당 분기 1회 추가지원 가능)																				
사례관리	지원대상	◦ 담당 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정 ※ 국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국비) 대상자 제외																			
	지원방법	◦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 항목 지원 가능 ◦ 생계에 필요한 비용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 후, 직접 해당기관에 제공 ◦ 의료·주거·기타 비용 등 해당기관에 비용 지급																			

구분	무한돌봄 지원내용	
	지원기준	◦ 연 1회 최대 1,000천원 이내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서비스)
그밖의 지원	지원대상	◦ 위기 사유 발생 또는 지속되는 경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지원을 받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가 항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지원종류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원기준	◦ 연료비: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월 92천원 지원 ※동절기(10~3월)중 주급여를 받는 기간 ◦ 해산비: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 1,000천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중) ◦ 장제비: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1,000천원(장제를 실제 행한 자에게 지급 가능)

자료: 경기도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http://www.gg.go.kr/gg_care)

- 2013~2019년 9월 기간 동안 무한돌봄사업의 수원시 지원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무한돌봄사업 수원시 지원대상자는 2013년 459명에서 2014년 1,11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수원시에서는 2019년 9월 기준 240명이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생계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2013년 305명에서 2014년 87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4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8년 134명, 2019년 9월 기준 126명이 생계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나타남
 -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2013년 127명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18년 82명으로 2013년 대비 감소하였고 2019년 9월 기준으로 20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주거비 지원대상자는 2015년 5명, 2017년 9명이 지원받았으며, 2018년에는 2명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 9월 기준으로 6명이 지원받음
 -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원대상자가 없으며, 사례관리 지원의 경우 2016년 8명, 2019년 9월 기준 4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지원의 경우 2013년 27명이 지원받았고 2017년에는 169명이 지원받았으나 2019년 9월 기준 다소 감소하여 84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5〉 수원시 무한돌봄 지원대상자 현황(2016~2019.9월)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9월
계	459	1,110	769	307	655	338	240
생계비	305	872	546	46	322	134	126
의료비	127	230	188	221	155	82	20
주거비	-	-	5	-	9	2	6
교육비	-	-	-	-	-	-	-
사례관리 지원	-	-	-	8	-	-	4
기타	27	8	30	32	169	120	84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 2013~2019년 9월 기간 동안 무한돌봄사업의 지원액 현황을 지원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무한돌봄사업 지원 총액은 2013년 499,528천원에서 2015년 759,888천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9월 기준 지원총액은 92,523천원으로 나타남
 - 무한돌봄사업의 급여별 지원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생계비 지원액은 2013년 235,001천원에서 2015년 423,880천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여 2018년 기준 131,35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19년 9월 기준 43,825천원으로 급감하였음
 - 의료비 지원액은 2013년 252,913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의 경우 451,753천원으로 2013~2019.9월 기간 중 가장 지원액이 많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9월 기준 42,776천원이 지원됨
 - 주거비 지원의 경우 2013~2014년 동안에는 지원액이 없었으며, 2015년 1,400천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459천원, 1,170천원이 지원되었으나 2019년 9월 기준으로 주거비 지원액이 급감하여 544천원의 주거비가 지원됨
 - 교육비 지원액의 경우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지원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례관리 지원의 경우 2016년 1,471천원, 2019년 9월 기준 2,020천원이 지원됨
 - 기타 지원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각각 3,480천원, 2,902천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이후 지원액이 증가하였으나 2019년 9월 기준으로 다시 감소하여 기타 지원액은 3,358천원으로 나타남

〈표 4-26〉 수원시 무한돌봄 지원액 현황(2013~2019.9월)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9월
계	499,528	754,968	759,888	530,759	476,902	300,438	92,523
생계비	235,001	377,316	423,880	74,633	148,393	131,355	43,825
의료비	252,913	371,610	331,128	451,753	311,907	156,755	42,776
주거비	-	-	1,400	-	2,459	1,170	544
교육비	-	-	-	-	-	-	-
사례관리 지원	-	-	-	1,471	-	-	2,020
기타	11,614	6,042	3,480	2,902	14,143	11,158	3,358

주: 각 연도(2016~2018)의 12월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제2절 수원시 저소득 관련 지원정책 분석

1. 의무정책¹⁾

-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의무정책은 다음의 〈표 4-27〉와 같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가구원)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이 외 법적 저소득층 기준은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법정 저소득 아동 등 가구특성 및 개별특성에 따라 별도의 선정기준이 적용됨
-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의한 의무정책은 2019년 기준으로 총 70개의 정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예산은 총 383,925,890천원이 투입됨
 - 건강관리 및 급여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은 11개로 대표적인 현금급여 지원정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등이 있음
 - 건강관리 및 급여지원 중 현물급여 지원정책으로는 일반건강검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이 있음
 - 건강관리 및 급여지원 정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정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사업’으로 해당사업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바우처사업으로 2019년 기준 총

1) 의무정책이라 함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의해 시작된 정책을 의미함

3,304,2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됨

- 생계유지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한 현금급여 지원정책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등 현금급여가 있음
 - 근로를 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통장 사업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같은 바우처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급여지급 정책을 제외한 생계유지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정책 중 자활근로사업(자활센터)이 2019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근로를 연계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 기준 총 5,095,325천원이 투입되었음
- 장애인 가구 또는 장애인 대상 개별지원정책으로는 저소득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등 현금급여 지원정책과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과 같은 현물급여 지원정책 및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등 바우처 지원사업이 운영 중에 있음
 - 장애인 대상 지원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현금급여 지원정책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와 장애수당 급여지원으로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예산은 15,172,467천원이 편성됨
- 보육아동,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중 현금급여 지원정책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결식아동 급식,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으며, 저소득층아동 문화체험,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등과 같은 현물급여 지원정책이 운영 중에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정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특수보육 활성화(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 사업(2019년 기준 총 7,270,000천원)으로 누리과정 및 법정저소득층 만 3~5세 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료 수납 한도액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임
 -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 및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6,000원/1식의 조·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총 3,618,592천원의 예산이 투입됨
- 그 외 주거급여지원사업과 위기상황 발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주거급여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현금급여를 지원함

〈표 4-27〉 2019년 수원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무)

(단위 : 천원)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소득 평가액(중위소득120%이하) 및 재산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대상) ◦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당연대상),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 폐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암환자: 백혈병(3,000만원지원), 백혈병외(2,000만원지원) - 성인암환자: 본인 일부부담금 100~200만원 	1,287,014	643,507	96,524	546,983
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특례 등록된 951종 희귀질환자 및 지정대상 질환 ◦ 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소득(중위소득120%미만) 및 환자가구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가구소득(중위소득200%미만) 및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차등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 11종,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1급 이상(월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7개 질환, 만18세 이상 	956,000	478,000	-	478,000
3	국가암검진 지원사업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검진 및 검진비용지원(세부대상 및 지원내용은 상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암검진대상자: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 그 외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상자: 비용10%부담 	1,173,333	586,666	88,000	498,667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4	일반건강검진 지원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64세 세대주 및 만 40~64세 세대원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조기발견 및 치료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성별·연령 별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진단 	98,879	79,103	2,966	16,810
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균특)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의 출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예외 지원: 시비전액부담 	3,304,200	1,365,000	585,000	1,354,200
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232,000	116,000	58,000	58,000
7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세 미만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총 7회) 	12,173	9,739	1,217	1,217
8	난청 조기진단 검진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선별검사 본인부담금(10~30천원) 및 난청확진검사 본인부담금(70천원) 지원 	50,000	25,000	12,500	12,500
9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 가정/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동,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로 비급여 본인 부담금 90% 지원 	176,000	88,000	44,000	44,000
10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저귀지원(월정액64,000원 지원), 조제분유지원(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정액 86,000원 지원) 	624,000	312,000	156,000	156,000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11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임신부 및 출산 수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유형별 보충식품 패키지 처방 및 공급 ◦ 영양교육 및 상담, 이음식 특강 등 조리실습 ◦ 정기영양 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상태조사) 	408,800	130,400	148,000	130,400
12	치매치료관리비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가구 중위소득12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어르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329,946	164,973	24,746	140,227
13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 중위소득 60% 이하(최저생계비 150%)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센사업지침 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급량비, 피복비 등 생계비 지급(1인당 연 1,906,000원/인/년) 	1,815	908	907	-
14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이하 인 국가보훈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제1항 생계급여의 성격으로 국가유공자의 냉난방비 및 환절기 건강유지 등을 위한 수당지급(월1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월, 9~10월: 환절기 건강유지비 지원 - 7~8월: 냉방비 지원 - 11~4월: 난방비 지원 	645,600	-	645,600	-
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120%~170% 이하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사업 지원 	3,452,857	2,417,000	-	1,035,857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16	자활근로사업(구·동)	사회복지과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형 2개 사업 -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210,000	210,000	-	-
17	자활근로사업(자활센터)	사회복지과	◦ 수급자 및 자활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청소, 간병 등 27개 사업 -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1일5시간, 주5일 근무	5,095,325	4,076,260	305,720	713,345
1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사회복지과	◦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위 두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50명	◦ 무료간병·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510,896	357,627	-	153,269
19	희망키움통장 I	사회복지과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전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소득인정액 40% 이하)	◦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탈 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95,511	85,960	2,865	6,686
20	내일키움통장	사회복지과	◦ 신청당시 최근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간 동안 1:1 매칭 지원 및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52,898	47,608	1,587	3,703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2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회복지과	◦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15세~34세)	◦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지원	285,549	256,994	8,567	19,988
22	희망키움통장Ⅱ	사회복지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차상위계층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시, 3년간 매월 1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901,825	811,643	27,055	63,127
23	자활장려금	사회복지과	◦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	◦ 자활근로참가자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지원	565,881	452,705	33,953	79,223
2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회복지과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51,411,697	46,270,527	3,598,819	1,542,351
25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회복지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재학생	◦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2,107,837	1,897,052	63,236	147,549
26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사회복지과	◦ 출산한 수급자 및 사망한 수급자의 보호자	◦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 1인기준 해산 600천원·장제 750천원	455,409	409,868	13,662	31,879
27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사회복지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중 정부양곡 신청가구	◦ 월 4,460포	155,336	155,336	-	-
28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회복지과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6,424,815	-	-	6,424,815
29	저소득 한부모가족 홈방범 서비스	여성정책과	◦ 한부모가족지원법상모자(청소년 모자)가족 ◦ 맞춤형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여성세대주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싱글 여성 ◦ 다세대, 원룸 등에 거주하는 1인 여성세대주 가구 등	◦ 홈방범 안심벨 설치비 및 월사용료 등 지원 - 설치비: 100,000원/1회(최초1회) - 홈방범(안심벨)서비스 월 사용료: 9,900 원/월 - 출동요금11,000원(연6회), 이전설치비33,000원(2년 내 2회 지원) - 해지위약금: 잔여월수×3,300원	27,398	-	19,179	8,219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3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아동양육비 등)	여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한부모가족 2,846세대 7,151명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취학시 만22세미만) 미만의 자녀 저소득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지급 기준 중위소득52%이하)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72% 이하(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지급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자녀, 1인당/월 200,000원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월 50,000원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연 54,100원 생활보조금(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가구당/월 50,000원) 	4,375,400	3,500,320	437,540	437,540
3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학습재료비 등)	여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50천원(세대당/연2회) 학습재료비: 초·중고 재학생에 15천원(인/월15,000원) 신입생 교복비: 중·고입학 신입생 1인당 300천원(동복20만원, 하복10만원)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1,200천원(인/월10만원) 	817,580	-	245,274	572,306
32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여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한부모가족 2,846세대 중 고등학생 자녀 7,151명 한부모가족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생 학비(수업료, 입학금) 전액 	52,376	-	26,188	26,188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33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여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가구 75세대(155명) ▶아래조건 모두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18세 미만(취학시만22세미만)의 자녀를양육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72%(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60%(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대상) 이하 경우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70,280	56,224	7,028	7,028
34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거지원	여성정책과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구	◦ 임대주택 운영비 및 임대보증금 등 지원	61,000	61,000	-	-
35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복지과	◦ 만65세 이상 중 장기요양등급 외(A,B) 판정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60% 이하자	◦ 식사·세면도움, 신체기능유지, 가사보조, 외출동행 등 방문서비스 및 장기보호 제공	1,184,873	829,420	53,310	302,143
36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노인복지과	◦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60%이하인 자	◦ 최대 2개월까지 식사도움, 외출동행, 청소 등 가사서비스 지원	8,282	5,790	380	2,112
37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노인복지과	◦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건강보험료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	◦ 건강보험료	312,000	-	93,600	218,400
38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노인복지과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개별 가구	◦ 월동 난방비 세대당 5만원 지원 (연간 5개월)	937,500	-	281,250	656,250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39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노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1인당 1일 3,200원 지원(경로식당 별 분기지급) 	485,760	-	48,576	437,184
40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노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 1~5 등급 판정자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요양급여부담금 급여종류 및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9,870,822	-	4,935,411	4,935,411
41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 1~5 등급 판정자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대여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11,680,290	-	1,168,029	10,512,261
42	기초연금	노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수급자 월 최대 단독가구 253,750원, 부부가구 406,00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480,000원 	205,506,810	143,854,767	12,330,409	49,321,634
43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지원등	노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로시설(2곳), 노인요양시설(6곳)에 입소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07.01.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요양시설과 국비지원 법인양로시설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520,500원 지원 생일 축하금(1인 30천원), 부식비(1일 500원), 난방비(1인 180천원), 명절위로비(4회×32천원) 	145,230	-	14,523	130,707
44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장애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 받는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비: 지적, 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총 진단비 및 검사비 	6,280	3,140	471	2,669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5만원이상 소요시 초과분 10만원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만원이상 소요시 초과분 10만원까지 지원				
45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장애인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인)	◦ 장애유형과 등급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국비 28종의 해당되는 품목의 보조기기 지원	39,245	11,236	28,009	-
46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과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차상위분 일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예약하여 공단에서 심사 후 의료기관으로 지급)	1,182,419	945,935	236,484	-
47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인복지과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 (월 20,000~330,000원) - 단독가구: 월평균 선정기준액 122만원 - 부부가구: 월평균 선정기준액 195.2만원	15,172,456	10,620,720	910,347	3,641,389
48	장애수당(기초)	장애인복지과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경증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경증장애인(18세 이상): 월4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 월20,000원	1,310,790	917,553	58,986	334,251
49	장애수당(도)	장애인복지과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40,000원(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 연금과 동일)	742,500	-	74,250	668,250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50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장애인복지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3급 등록 장애인(예산범위 내 경증장애인 가구 지원 가능)	◦ 복지관련 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000원 이내)	94,570	-	9,457	85,113
51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도)	장애인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가구(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 8, 9월) 지원	493,010	-	49,301	443,709
52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복지과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 입원의료비 : 본인부담금 150만원(입원 1회 한정) ◦ 보조기기 구입 지원: 본인부담금 150만원 (1개품목 한정)	229,510	-	22,951	206,559
53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인복지과	◦ 차상위 18세 이상 경증 등록 장애인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 국민기초수급자 중 경증장애인(18세 이상): 월 40,000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 월 15만원~20만원, 경증 10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중 18세미만 장애아동: 경증 월20,000원, 중증 월70,000원	849,860	594,902	38,244	216,714
54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복지과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중 전국가구평균 소득150%이하 가구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진행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바우처 사업 지원 - 장애아 가족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1,987,200	1,391,040	89,424	506,736
55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장애인복지과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100 이하 가구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진행(소득별 차등 지원)	26,192	18,334	1,179	6,679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56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보육아동과	◦ 누리과정 및 법정저소득층 만 3-5세 아동	◦ 누리과정 부모부담금의 어린이집 수납한 도액과 정부지원단가의 차액금 중 일부(51천원 ~ 60천원)지원 ◦ 정부지원 보육료 및 보육료 수납 한도액 차액 지원(79천원 ~ 54천원)	7,270,000	-	727,000	6,543,000
57	저소득층아동 문화체험 등	보육아동과	◦ 0세 ~ 12세 저소득 아동	◦ 드림스타트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아동들을 위한 문화체험활동 지원(가족캠프, 가족운동회, 가족의 날 등)	92,000	40,000	52,000	-
58	저소득층 아동 인지발달 및 신체증진 서비스 지원	보육아동과	◦ 0세 ~ 12세 저소득 아동 1,100명	◦ 드림스타트 - 인지/언어 학습지원, 신체발달 및 비만 개선 지원	93,200	38,000	-	55,200
59	퇴소아동자립정착금	보육아동과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31명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정착금 지원 (1인당 10,000천원)	310,000	-	15,500	294,500
6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육아동과	◦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아동 중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 아동	◦ 월 40천원 이내 매칭	444,480	311,136	20,002	113,342
61	결식아동 급식	보육아동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 자리아동,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가출, 행방불명 등), 보호자양육능력미약(사고, 급성, 만성질환, 유기, 방임, 학대 등), 소득인정액	◦ 6,000원/1식	3,618,592	-	1,085,576	2,533,016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62	건강검진 및 치료비지원	보육아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국민기초수급및차상위계층가정, 법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 등에 대한우선 지원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과, 치과 등 검진 및 치료지원 17,000천원 ◦ 의약품구입2,000천원 ◦ 영양제, 아토피질환 물품 등5,000천원 ◦ 심리검사280,000원×1회×30명 ◦ 심리치료45,000원×25명×28명 ◦ 1:1놀이치료32,000원×25명×28명 	86,300	40,000	-	46,300
63	저소득층 동 문화체험등 급식비등	보육아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협의체 등 운영 ◦ 지역자원연계 간담회 운영 ◦ 프로그램 참여 아동 및 행사 참여 아동 지원 ◦ 자원봉사자 지원 등 	23,000	9,000	-	14,000
64	긴급복지	복지허브화 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발생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85,000천원 이하 - 금융기준: 5,00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9종 	3,480,000	2,784,000	104,400	591,600
65	위기가정 무한돌봄	복지허브화 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발생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중위소득80% 이하 - 재산기준: 150,00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의료지원 등 	530,000	-	53,000	477,000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 금융기준: 5,000천원 이하					
66	긴급복지	복지허브 화추진단	◦ 위기상황발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9종	3,480,000	2,784,000	104,400	591,600
67	스포츠강좌 이용권	체육진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내 유·청소년 (만5세~만19세)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월 8만원)	361,200	252,840	54,180	54,180
68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체육진흥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본인(만 12~39세)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월 8만원/6개월)	24,000	16,800	3,600	3,600
69	주거급여지원사업 (임차급여)	지속가능과	◦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	◦ 임차급여(보증금 환산액+월차임)	24,946,265	22,451,638	1,746,238	748,389
70	주거급여지원사업 (수선유지)	지속가능과	◦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 중 자가 거주자	◦ 수선유지급여	471,624	424,462	33,014	14,148

주 1: 복지허브화 추진단은 현재 복지협력과를 의미함

2: 수원시 부서별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출하여 정리한 내용임

3: 홍보비 및 인건비 등의 간접비는 제외하고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만을 기술함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2. 수원시 자체정책²⁾

- 수원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관련 지원정책 중 시비로만 지원되는 정책은 총 18개 정책이 있으며 총 예산은 818,629천원임
 - 저소득층 가구 및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저소득층 아동 교육지원,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보육료 지원아동 보육경비, 저소득아동 해외 봉사활동 지원사업,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중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 자녀의 대학진학 및 취업 준비 등 자립을 위하여 매월 3만원 이내 1:1매칭형식의 저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준 총 54,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됨
 - 사회복지생활시설 수급자 및 시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지원되는 정책으로는 명절 저소득층 위문, 무료노인복지시설 간병사업, 시설보호자 등 위문격려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대상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지원사업이 운영 중에 있음
 - 생활시설 수급자 및 노인대상 지원사업 중 무료노인복지시설 간병사업은 수원시내 9개소 요양원의 무연고 장기입원 수급자에게 장기입원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준 총 10,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됨
 - 수원시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배달과 함께 독거노인 생활실태 등 안부확인을 지원하는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지원사업은 2019년 동안 370여 명이 지원받았으며, 총 94,535원의 예산이 투입됨
 - 수원시 4개구 보건소가 담당하여 진행하는 건강관리 및 지원사업으로는 암관리 사업,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층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암관리 사업은 말기암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인간호, 치료요법, 간병서비스 등의 호스피스 운영비용과 저소득층 지원, 장례비, 유가족 지원서비스 등의 직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50,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됨
 - 수원시 4개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사업대상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2) 수원시 예산 100%로 시행하는 정책을 의미함

〈표 4-28〉 2019년 수원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지원정책(수원시 자체)

(단위 : 천원)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비고
1	사회복지관 저소득층 아동 교육지원	사회복지과	◦ 무봉종합사회복지관 관내 저소득층 아동	◦ 저소득 지역내 위치한 복지관에 대한 특수 시책 사업비 지원(저소득 아동 심리치료 및 방과후 특화(교육 지원) 사업)	39,190	-	-	39,190	
2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장애인복지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가구 (수원시 관내 이사 및 전입자)	◦ 수원시내 이사자 및 전입자 이사비 지원 - 장애인 1명 100천원, 2명 이상 200천원/연1회 지원	40,000	-	-	40,000	
3	보육료 지원아동 보육경비	보육아동과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단체, 직장 어린이집의 재원아동 중 법정저소득층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자녀아동	◦ 입소료(신규입소) 및 현장학습비 지원	50,000	-	-	50,000	
4	저소득층아동 해외봉사활동	보육아동과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 아동센터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 - 정부지원 책정가정의 자녀 중 (중3~고2재학생) - 학업성적우수(학년석차50%) - 최근3년 이내 자원봉사 실적 우수학생	◦ 여름방학 중 해외봉사활동비 지원 - 1,200천원×20명	24,000	-	-	24,000	
5	명절 저소득층 위문	복지허브화 추진단	◦ 사회복지생활시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위문필요세대	◦ 설날, 추석 위문품(상품권 등) 지급 - 복지시설 62개소(2회) - 저소득가정 3,190세대(2회)	220,000	-	-	220,000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비고
6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여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한부모가족(모부자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딤씨앗, 희망키움통장 대상 중복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학진학 및 취업준비 등 자립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 2019년도 고3재학생 - 매월 3만원 이내1:1매칭 형식의 지원 	54,000	-	-	54,000	
7	무료노인복지시설 간병사업	노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등 9개소 - 무연고 장기입원 기초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연고 기초수급자 의료기관 장기입원 시 간병비 지원 - 공동간병인(6인실)이용시: 20,000원 - 일반병원 개인간병 이용시: 65,000~70,000원 	10,000	-	-	10,000	
8	시설보호자 등 위문 격려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위문실시 - 설날, 중추절 2회 상품권 구입 지원 	30,000	-	-	30,000	
9	장애인 보장구 수리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장애인 및 일반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수리비 지급 	5,400	-	-	5,400	국가관리 사업
10	재능기부를 통한 거주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취약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배·장판교체 및 소규모 집수리 사업 추진 - 재능기부를 통해 도배·장판 교체 등 생활밀착형서비스 제공 	3,000	-	-	3,000	국가관리 사업
11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수급독거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일 건강보조식품 배달 및 독거노인 생활실태 등 안부확인 - 배달업소: 정자대리점 등 4개소 - 개당 700원 	94,535	-	-	94,535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비고
12	암관리 사업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말기암환자 및 보호자	◦ 호스피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말기 암환자에 대한 전인간호, 치료요법, 간병 서비스 제공 등)	50,000	-	-	50,000	
13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100%이하)	◦ 저소득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월150,000원)	16,800	-	-	16,800	
14	아동담당의 등록검진비 및 치료비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만 6세~12세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및 초등학교 ◦ 수원시 12세 이하 저소득가정(수급자, 차상위계층)아동	◦ 아동건강 지킴서비스(치료비 포함) ◦ 아동주치의 의료지원금(등록검진 및 치료비) 지원 ◦ 등록·치료비: 70,000원×1,000명	70,000	-	-	70,000	
15	예방접종 지원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건소에서 무료 선택예방접종 (A형간염, 로타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실시 및 성인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23,479	-	-	23,479	
16	저소득층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저소득층 및 성인 - 0세, 만8~15세, 만13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1~3등급,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대응요원 등	◦ 어린이 선택예방접종 - 0세 : 로타바이러스 - 만 8~ 15세 : A형간염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만 13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급, -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등 ◦ 성인 B형간염 예방접종(유료)	31,975	-	-	31,975	

연번	정책명	담당부서	대상	내용	예산				
					계	국	도	시	비고
17	저소득층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0세(로타바이러스), 만8~15세(A형간염접종)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인플루엔자) 성인(B형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0세 로타바이러스, 만8세~15세A형간염 접종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성인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23,750	-	-	23,750	
18	저소득층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	영통구보건소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정 등 0세, 8~15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성인B형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정 등 0세, 8~15세 대상 무료선택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A형간염)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성인 B형간염 백신 구입비 지원 	32,500	-	-	32,500	

주 1: 복지허브화 추진단은 현재 복지협력과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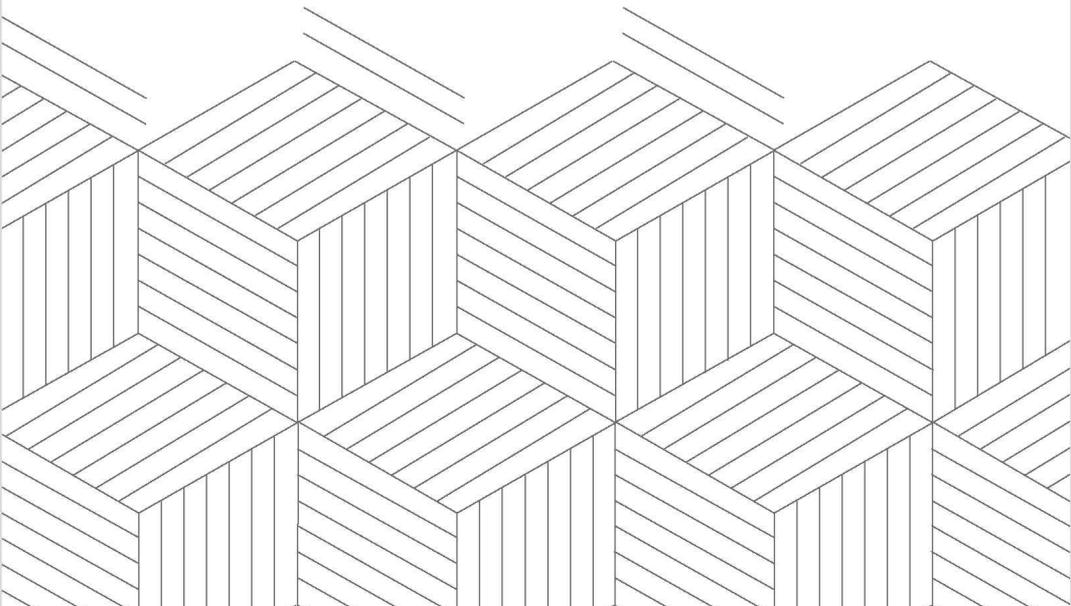
2: 수원시 부서별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출하여 정리한 내용임

3: 홍보비 및 인건비 등의 간접비는 제외하고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만을 기술함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제5장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프로파일 및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
제2절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실태조사 분석



제5장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프로파일 및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

1. 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개요

1) 빈곤 사각지대의 개념정의

- 빈곤 사각지대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대한 정의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마다 빈곤 사각지대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다수의 연구들이 제시한 규모 추정 방식 또한 상이함
 - ‘빈곤 사각지대’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 가구를 의미함
 - 비수급 빈곤층 가구는 1. 소득인정액 기준선을 초과하였거나, 2. 상당수는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기준 부적합 가구, 3. 수급권 포기로 구분 할 수 있음
 -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규모 추정을 위한 빈곤 사각지대는 기초생활보장의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보호를 받고 있다가 수급중지된 가구(수급중지 요인: 소득·재산 증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판정, 사망 및 기타)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빈곤 사각지대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로 한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로 연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가구”로 정의함

2) 자료원 및 분석개요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규모 추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탈락가구(이하 신청탈락가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 분석 데이터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사후관리를 위해 소득·재산 자료 및 서비스 이력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추출 데이터임
- 연구분석 방법은 프로파일 분석(profile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분석대상인 가구 및 가구원 내 잠재된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 프로파일 분석은 복잡한 자료원을 동일한 성질의 수치나 백분위점수로 환산한 후 계층을 분류하여 비교적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분석 기법임(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9)
 - 데이터 프로파일링(profiling)은 데이터의 값과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에 존재하는 구조 특성을 파악하고 결과를 통해 이슈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9)
- 프로파일 분석절차는 프로파일링을 수행할 대상 및 유형을 사전에 선정한 후 사전에 선정한 유형 목록을 토대로 실제 데이터에 적용·수행하여 분석대상을 동일한 분류기준에 따라 그룹화하여 유형별 패턴을 관찰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9)
-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분석자료는 행복e음에서 추출한 2016년~2019년 9월까지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 중 탈락 가구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 가구에 대한 가구특성, 신청탈락사유,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근로능력 관련 정보 등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수원시를 통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하여 받은 행복e음 자료를 분석함
- 구체적인 정보는 신청탈락 가구의 가구원수, 가구형태, 중증장애여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소득환산액 등의 데이터와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특성, 미부양사유, 부양능력판정 및 부양능력판정사유, 부양비,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및 소득평가액, 재산소득환산액 등 신청탈락가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함
- 신청 탈락사유는 크게 1. 소득인정액 기준 미충족, 2.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구분됨
 - 행복e음 데이터에 의해 추출된 수치 추정에 있어 유의할 점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신청 탈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임의로 선택한 탈락사유 카테고리에 분류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따라서 신청탈락사유에 대한 현황은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나 신청탈락가구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에 관한 프로파일 분석과정은 신청탈락가구 전체와 빈곤 취약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봄

- 신청탈락가구 전체에 대한 현황분석은 2016~2018년과 2019.1~9월까지 기간을 분류하여 비교하였고 신청탈락가구의 일반적 특성, 소득·재산 특성,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빈곤 취약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신청탈락가구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를 기준으로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을 진행하였고, 신청탈락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구주 특성, 경제적 상황, 빈곤심도로 구분하여 살펴봄
- 사각지대 규모 추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장제도가 법률상 엄격한 수급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선을 적용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빈곤 사각지대 최전선에 놓여있는 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첫째, '소득인정액이 20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가구'와 둘째, '소득인정액이 2019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를 사각지대로 정의하여 분석함
 - 이러한 사각지대 정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유사한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의 특성과 차상위계층 빈곤선 주변 집단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2.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

1) 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_전체가구

(1) 신청탈락가구의 일반적 특성

- 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탈락가구의 일반적 특성으로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주 주 성별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여성보다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더 많았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남성보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최종 추출된 신청탈락가구주 정보를 살펴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체 1,024명 중 남성 가구주는 45.5%(466명), 여성 가구주는 54.5%(558명)로 나타남

〈표 5-1〉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주의 성별(2016~2019년 9월)

(단위 : 명, %)

구분	연도	빈도(%)	계
2016년	남성	136 (51.5)	264
	여성	128 (48.5)	
2017년	남성	161 (51.8)	311
	여성	150 (48.2)	
2018년	남성	565 (40.2)	1,404
	여성	839 (59.8)	
2019년.9월	남성	466 (45.5)	1,024
	여성	558 (54.5)	

주 1: 2016~2019년 9월 신청탈락가구 n=3,003

2: 신청탈락가구는 각 연도마다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예: 2017년 신청탈락 후 2018년 다시 신청탈락한 경우 동일가구가 2017년과 2018년 모두에 집계됨)

3: 대상자 추출 기준 시점은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신청탈락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별 근로능력 유무 현황은 40대 신청탈락가구 가구주는 2016~2018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60대 이상 신청탈락가구 가구주는 감소함
 - 2016~2018년 신청탈락가구 가구주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전체 57.9%(1,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50대가 18.0%(357명), 40대가 14.2%(2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9월 기준도 신청탈락가구 가구주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전체 51.3%(525명)를 차지하고 있었음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원별 근로능력 유무 현황은 근로능력 판정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 유무 판정결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탈락가구의 근로가능 가구원의 비율은 각각 21.4%, 21.5%로 나타남
 - 2016년~2018년 근로능력 판정 대상자 1,608명(‘해당없음’을 제외한 경우) 중 근로가능 가구원은 359명(21.4%)이며, 2019년 1월~9월의 근로가능자는 146명(21.5%)로 나타남

〈표 5-2〉 수원시 신청탈락가구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별 근로능력 유무(2016~2019.9월)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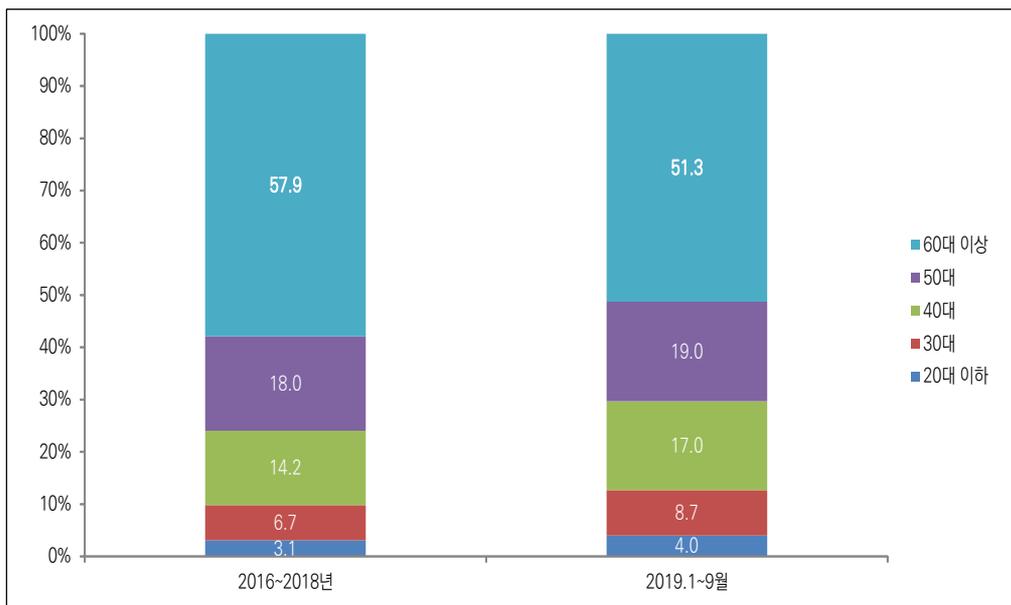
구분		2016~2018년	2019.1~9월
신청탈락가구 가구주 연령구간	20대 이하	61 (3.1)	41 (4.0)
	30대	133 (6.7)	89 (8.7)
	40대	282 (14.2)	174 (17.0)
	50대	357 (18.0)	195 (19.0)
	60대 이상	1,146 (57.9)	525 (51.3)
	전체	1,979 (100.0)	1,024 (100.0)
근로가능 가구원 (가구원별)	없음	1,321 (38.1)	532 (28.5)
	있음	359 (10.3)	146 (7.8)
	해당없음	1,790 (51.6)	1,191 (63.7)
	전체	3,470 (100.0)	1,869 (100.0)

주 1: 근로가능 가구원-해당없음(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대상자 추출 기준 시점은 2016~2018년 12월, 2019년 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그림 5-1〉 신청탈락가구 가구주의 연령(2016~2019.9월)



주: 대상자 추출 기준 시점은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원수는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인가구가 매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1인가구: 2016년 58.0% → 2017년 54.3% → 2018년 55.3% → 2019.9월 55.1%)
 - 2016년에서 2019년 9월까지 신청탈락가구 중 2인가구, 3인가구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신청탈락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5인가구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원수 평균을 살펴보면 2016년 1.76명에서 2017년 1.83명, 2018년 1.74명, 2019년 1.83명으로 나타남

〈표 5-3〉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원 수(2016~2019.9월)

(단위 : 가구, %)

연도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전체	평균(명)
2016년	153 (58.0)	50 (18.9)	41 (15.5)	13 (4.9)	7 (2.7)	264 (100.0)	1.76 (sd=1.07)
2017년	169 (54.3)	68 (21.9)	46 (14.8)	19 (6.1)	9 (2.9)	311 (100.0)	1.83 (sd=1.12)
2018년	777 (55.3)	360 (25.6)	166 (11.8)	65 (4.6)	36 (2.6)	1,404 (100.0)	1.74 (sd=1.04)
2019.9	564 (55.1)	238 (23.2)	112 (10.9)	70 (6.8)	40 (3.9)	1,024 (100.0)	1.83 (sd=1.17)

주: 대상자 추출 기준 시점은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신청탈락가구의 가구규모별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2016~2018년 사이 노인가구의 비중이 신청탈락가구 전체의 36.7%(726가구)로 가장 높았고, 노인가구 중에서도 1인가구의 비중이 25.7%(508가구)로 가장 높았음
 - 2019.9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2018년과 마찬가지로 노인가구의 비중이 신청탈락가구 전체의 27.7%(284가구)로 가장 높았고, 노인가구 중에서도 1인가구의 비중이 20.2%(207가구)로 가장 높았음
 - 1인 노인가구 다음으로는 2016~2018년, 2019.9월 기준 모두 기타 가구유형의 1인가구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6~2018년 기타 가구유형 중 1인가구는 13.1%(260가구)로 나타났으며, 2019.9

- 월 기준 기타 가구유형 중 1인가구는 신청탈락가구 전체의 16.7%(171가구)로 나타남
- 2019.1~9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유형은 노인가구(27.7%) > 기타(26.8%) > 일반가구(26.4%) > 모부자가구(14.1%) > 장애인가구(5.1%) 순임
 - 가구유형별 가구규모는 모부자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유형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4)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가구규모별 가구유형(2016~2019.9월)

(단위 : 가구, %)

구분		노인가구	모부자가구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기타	전체
2016~ 2018	1인가구	508 (25.7)	15 (0.8)	75 (3.8)	241 (12.2)	260 (13.1)	1,099 (55.5)
	2인가구	181 (9.1)	112 (5.7)	32 (1.6)	51 (2.6)	102 (5.2)	478 (24.2)
	3인가구	28 (1.4)	105 (5.3)	19 (1.0)	48 (2.4)	53 (2.7)	253 (12.8)
	4인가구	8 (0.4)	17 (0.9)	9 (0.5)	46 (2.3)	17 (0.9)	97 (4.9)
	5인가구 이상	1 (0.1)	7 (0.4)	4 (0.2)	29 (1.5)	11 (0.6)	52 (2.6)
	전체	726 (36.7)	256 (12.9)	139 (7.0)	415 (21.0)	443 (22.4)	1,979 (100.0)
2019. 1~9월	1인가구	207 (20.2)	11 (1.1)	32 (3.1)	143 (14.0)	171 (16.7)	564 (55.1)
	2인가구	67 (6.5)	68 (6.6)	11 (1.1)	36 (3.5)	56 (5.5)	238 (23.2)
	3인가구	6 (0.6)	47 (4.6)	2 (0.2)	27 (2.6)	30 (2.9)	112 (10.9)
	4인가구	2 (0.2)	15 (1.5)	3 (0.3)	38 (3.7)	12 (1.2)	70 (6.8)
	5인가구 이상	2 (0.2)	3 (0.3)	4 (0.4)	26 (2.5)	5 (0.5)	40 (3.9)
	전체	284 (27.7)	144 (14.1)	52 (5.1)	270 (26.4)	274 (26.8)	1,024 (100.0)

주 1: 일반가구(노인가구, 모부자가구, 장애인가구, 기타가구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가구)

2: 기타(소년소녀가정, 미혼부모세대, 조손세대, 가정위탁보호, 기타)

3: 대상자 추출 기준 시점은 각 연도(2016~2018)의 12월 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2)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재산 특성

- 수원시 신청탈락가구 가구주의 연령대별 중위소득 분위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위소득 30%, 50%, 75%, 100%로 구분하여 살펴봄
 - 중위소득 30% 이하 신청탈락가구를 기준으로 20대 미만 가구주 가구는 8.7%(9가구), 30대는 10.6%(11가구), 40대 20.2%(21가구), 50대 14.4%(15가구), 60대 이상 가구주는 46.2%(48가구)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는 중위소득 30% 이하와 50% 이하 신청탈락가구가 50대 가구주보다 많았고, 중위소득 75% 이하, 100% 이하는 50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 가구주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신청탈락가구는 48가구(46.2%)였으며, 중위소득 50% 이하 106가구(44.7%), 중위소득 75% 이하 228가구(46.6%), 중위소득 100% 이하 290가구(46.9%)로 나타남
 -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는 모든 중위소득 구간에서 4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5〉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주 연령대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구성 비율(2019.1~9)

(단위 : 가구, %)

구분	중위소득 30%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75%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100% 신청탈락가구
20대 미만	9 (8.7)	13 (5.5)	21 (4.3)	27 (4.4)
30대	11 (10.6)	22 (9.3)	47 (9.6)	60 (9.7)
40대	21 (20.2)	50 (21.1)	92 (18.8)	115 (18.1)
50대	15 (14.4)	46 (19.4)	101 (20.7)	126 (20.4)
60대 이상	48 (46.2)	106 (44.7)	228 (46.6)	290 (46.9)
전체	104 (100.0)	237 (100.0)	489 (100.0)	618 (100.0)

주 1: 가구주 연령대 구분-20대 미만(29세 이하), 30대(30~39세 이하), 40대(40~49세 이하), 50대(50~59세 이하), 60대 이상(60세 이상)

2: 대상자 추출 기준 시점은 2019년 1~9월 말 기준

3: 중위소득 100%까지만 기술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을 2016~2018년, 2019년 1~9월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6~2018년 기간 동안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평균 3,204,508 원이며, 2019년 1~9월까지 소득인정액 평균은 3,729,229원으로 2019년 신청탈락

가구 소득인정액 평균이 평균 약 50만원 정도 증가함

- 2016~2018년 기간 동안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평균은 2,338,939원, 4,163,260원이며, 2019년 1~9월은 각각 평균 3,191,121원, 5,265,437원으로 나타남
-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중 비이전소득을 2016~2018년/2019.1~9월 신청탈락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2018년 신청탈락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266,334원이며, 2019.1~9월 기간 신청탈락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358,655원으로 약간 증가함
 - 사업소득은 2016~2018년 평균 113,133원, 2019.1~9월 평균 162,134원으로 약간 증가하였고,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성되며 2016~2018년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평균 재산소득은 22,226원이고, 2019.1~9월 기준 평균 21,196원으로 나타나 2019년 이전에 비해 2019년도 재산소득이 감소함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소득으로 2016~2018년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평균 3,502원, 2019.1~9월 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음
-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중 이전소득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로 구성되어 있음
 - 2016~2018년 신청탈락가구 공적이전소득 평균은 172,694원, 2019.1~9월 신청탈락가구 공적이전소득 평균은 179,561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사적이전소득은 2016~2018년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평균 327,313원, 2019.1~9월 신청탈락가구는 575,765원으로 나타남
 - 2016~2018년 신청탈락가구의 평균부양비는 31,005원, 2019.1~9월 신청탈락가구 15,334원으로 2019년 신청탈락가구 부양비가 이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함
-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재산 및 부채, 자동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2018년 신청탈락가구 재산 평균은 96,201,141원, 2019.1~9월 신청탈락가구 재산 평균은 131,367,728원으로 2019년 신청탈락가구 평균 재산이 크게 증가함
 - 부채의 경우 2016~2018년 신청탈락가구 부채 평균은 25,495,898원이고, 2019.1~9월 신청탈락가구 부채 평균은 34,990,998원으로 2019년 수원시 신청탈락가구 부채액이 이전에 비해 약 9백만원 이상 증가함
 - 자동차·재산은 2016~2018년 평균 1,745,381원이고, 2019.1~9월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평균 1,744,702원으로 큰 변화는 없음

〈표 5-6〉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2016~2019.9월)

(단위 : 명/표준편차, 원)

구분	전체	2016~2018	2019.1~9월	
평균 가구원수	1.78 (1.096)	1.76 (1.057)	1.83 (1.166)	
소득인정액	3,380,863 (5986153.79)	3,204,508 (6065616.83)	3,729,229 (5830289.17)	
소득평가액	2,627,642 (4833443.41)	2,338,939 (3986679.27)	3,191,121 (6119275.25)	
재산의 소득환산액	4,535,791 (15696131.10)	4,163,260 (14136910.83)	5,265,437 (18352279.13)	
	2,066,890 (3016036.60)	1,941,306 (2791867.34)	2,312,645 (3400905.03)	
실제 소득	비이전소득	1,450,208 (2875993.03)	1,405,195 (2724231.92)	1,541,986 (3153058.16)
	근로소득	1,296,440 (2730782.24)	1,266,334 (2581931.52)	1,358,655 (3002774.41)
	사업소득	129,626 (864872.86)	113,133 (793971.00)	162,134 (989008.69)
	재산소득	21,838 (174281.34)	22,226 (166832.35)	21,196 (188341.05)
	보장기관 확인소득	2,304 (83913.42)	3,502 (103442.69)	0 (.00)
	이전소득	616,681 (1167276.23)	536,112 (997511.24)	770,660 (1427344.78)
	사적이전	415,743 (1151092.90)	327,313 (973357.23)	575,765 (1420324.88)
	부양비	25,756 (128989.41)	31,005 (143831.44)	15,334 (93159.76)
	공적이전	175,182 (257173.18)	172,694 (233748.68)	179,561 (297079.62)
	재산	108,030,347 (288274463.15)	96,201,141 (217661134.96)	131,367,728 (389619323.41)
	부채	28,687,931 (108457181.35)	25,495,898 (102596013.11)	34,990,998 (118998184.69)
	자동차	1,746,491 (9072453.32)	1,745,381 (9512385.86)	1,744,702 (8176367.31)
	공제	5,831,176 (29913579.71)	4,045,959 (20957463.08)	9,309,751 (41982810.91)

주 1: 모든 소득항목은 소득이 0인 경우를 포함한 평균값,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보장기관 확인소득-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소득
 3: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주거용재산, 기타
 4: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간사채, 공공기관대출금, 기타 부채
 5: 공제-소득공제(가구특성별지출, 근로소득공제, 농어민가구특별공제),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6: 전체-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7: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다음의 <표 5-7>과 같이 2019년 1~9월 기준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및 재산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두 300만원 이상 구간에 속하는 가구빈도가 가장 많으며 이는 소득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신청탈락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소득인정액은 300만원 이상 가구가 신청탈락가구 전체의 32.9%(337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 29.9%(306가구), 200~300만원 미만 17.6%(18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득평가액 역시 300만원 이상 가구가 신청탈락가구 전체의 29.3%(3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 18.8%(192가구), 50만원 미만 18.6%(19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재산소득환산액은 환산액이 없는 신청탈락가구가 전체의 50.0%(512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28.7%(294가구), 100~200만원 미만 7.9%(81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7>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및 재산 구간별 비중 (2019.1~9월 기준)

(단위 : 가구, %, 원)

구분		빈도(%)	평균
소득인정액	없음	36 (3.5)	0
	50만원 미만	59 (5.8)	262,531
	50~100만원 미만	106 (10.4)	834,497
	100~200만원 미만	306 (29.9)	1,478,460
	200~300만원 미만	180 (17.6)	2,460,923
	300만원 이상	337 (32.9)	8,366,228
	전체	1,024 (100.0)	3,729,229
소득평가액	없음	89 (8.7)	0
	50만원 미만	190 (18.6)	269,029
	50~100만원 미만	168 (16.4)	772,530
	100~200만원 미만	192 (18.8)	1,408,038
	200~300만원 미만	85 (8.3)	2,494,010
	300만원 이상	300 (29.3)	7,548,332
	전체	1,024 (100.0)	3,191,121
재산소득환산액	없음	512 (50.0)	0

구분		빈도(%)	평균
	50만원 미만	31 (3.0)	189,524
	50~100만원 미만	54 (5.3)	771,455
	100~200만원 미만	81 (7.9)	1,486,635
	200~300만원 미만	52 (5.1)	2,422,613
	300만원 이상	294 (28.7)	17,339,729
	전체	1,024 (100.0)	5,265,437

주 1: 모든 소득항목은 소득이 0인 경우를 포함한 평균값

2: 대상자 추출 기준 시점은 2019년 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신청탈락가구의 재산 소득환산액과 공제소득 항목별 현황은 <표 5-8>과 같음
 - 수원시 신청탈락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평균은 2016~2018년은 평균 4,163,260원, 2019.1~9월은 평균 5,265,437원으로 나타나 2019년 신청탈락가구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2016~2018년에 비해 약 100만원 정도 증가함
 - 공제소득은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소득공제, 농어민가구특별공제,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공제액이 클수록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가능성이 높아짐(박경하 외, 2015)
 - 가구특성별 지출은 2016~2018년 평균 11,698원이고 2019.1~9월 신청탈락가구 가구특성별 지출 평균은 11,499원으로 나타나 2019년은 2016~2018년 보다 다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소득공제는 2016~2018년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평균 386원이고 2019.1~9월 평균은 0원으로 근로소득으로 인한 공제액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일반재산공제의 2016~2018년 평균 금액은 3,395,876원이고 2019.1~9월의 평균은 8,661,000원으로 나타나 2019년은 2016~2018년 보다 크게 증가함
 - 2016년~2018년 평균 금융재산공제액은 637,999원이고, 2019년은 637,252원으로 나타남

〈표 5-8〉 수원시 신청탈락가구의 공제소득 현황(2016~2019.9월)

(단위 : 원, 표준편차)

구분		전체	2016~2018	2019.1~9
재산의 소득환산액		4,535,791 (15696131.09)	4,163,260 (14136910.83)	5,265,437 (18352279.13)
공제	가구특성별 지출	11,624 (48244.45422)	11,698 (48969.26)	11,499 (46942.50)
	근로소득공제	254 (9661.21)	386 (11909.86)	0 (.00)
	일반재산공제	5,182,614 (29560482.92)	3,395,876 (20286089.34)	8,661,000 (41885477.28)
	금융재산공제	636,684 (4634983.58)	637,999 (4783901.25)	637,252 (4346843.30)

주 1: 소득공제 구성항목 중 농어민가구특별공제는 모든 값이 0원임

2: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국기초, 차상위, 한부모) 학생(휴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등록금 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3: 모든 소득항목은 소득이 0인 경우를 포함한 평균값,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4: 대상자 추출 기준 시점은 각 연도(2016~2018)의 12월말,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3) 신청탈락가구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특성

-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을 위해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은 모두를 조사하나 부양의무자 개인의 사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산정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위한 가구원수 산정은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으로 판단됨
 -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는 1인 가구가 2,843가구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2인 가구 39.9%(2,493가구), 4인 가구 6.5%(407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평균 1.8명으로 나타남

〈표 5-9〉 수원시 신청탈락가구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

(단위 : 가구,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
6,243	2,843	2,493	368	407	132	1.8
(100.0)	(45.5)	(39.9)	(5.9)	(6.5)	(2.1)	(sd=1.096)

주 1: 데이터 입력오류(n=1)

2: 2016~2019년 9월 말 기준 전체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구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신청탈락가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과의 관계는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함

〈표 5-10〉 수원시 신청탈락가구 수급자와 부양의무가구 가구원과의 관계

(단위 : 명, %)

전체	부	모	자녀	자부	사위	양부	기타
11,278	1,361	1,183	8,696	15	14	3	6
(100.0)	(12.1)	(10.5)	(77.1)	(0.1)	(0.1)	(0.0)	(0.1)

주: 2016~2019년 9월 말 기준 전체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구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별 부양능력은 ‘없음’이 절반 이상(68.0%)을 차지하여도 기초 생활보장에서 탈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양능력 판정은 「부양능력판정표」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있음, 없음, 미약)으로 구분되며,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됨
 - 부양능력판정 ‘없음’이 7,66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8.0%를 차지함
 - ‘있음’은 전체 응답자의 23.0%(2,597명), ‘미약’은 8.4%(946명)로 나타남

〈표 5-11〉 수원시 신청탈락가구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별의 부양능력판정

(단위 : 명, %)

전체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기타
11,278	2,597	7,669	946	66
(100.0)	(23.0)	(68.0)	(8.4)	(0.6)

주 1: 부양의무자가구원별 부양능력판정

2: 2016~2019년 9월 말 기준 전체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구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2) 노인가구주 가구의 프로파일 분석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2.6%, 상대적 빈곤율은 45.7%로 나타나 노인빈곤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국가통계포털, 2018)
- 이에 우리나라 대표적 빈곤층인 노인가구주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추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 가구 중 노인 가구주(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사각지대의 규모를 추정함
 - 사각지대의 기준선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30%이하 탈락가구와 중위소득 50% 이하 탈락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함

(1) 가구 특성

-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와 65세 미만 가구주로 비교하면 65세 미만 가구주가 59.3%(608가구)로 나타나 65세 이상 가구주 보다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전체 1,026가구 중 65세 미만 가구주 가구는 59.3%(608가구),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40.7%(418가구)를 차지함
 -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중위소득 30% 이하 신청탈락 가구 중 37.5%(39가구를 차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에서는 34.6%(82가구를 차지함
 -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인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가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5-12〉 수원시 가구주 연령별 가구비중(2019.1~9)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65세 미만 가구주 가구	608 (59.3)	65 (62.5)	155 (65.4)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418 (40.7)	39 (37.5)	82 (34.6)
계	1,026 (100.0)	104 (100.0)	237 (100.0)

주 1: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

2: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신청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주 가구는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2/3 이상을 차지하며,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특례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
 - 노인가구주의 가구규모는 1인 가구가 71.5%(299가구)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중위소득 30% 이하와 50% 이하도 1인 가구가 대부분임
 - 노인가구주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전체 평균 1.36명, 중위소득 30% 이하 평균 1.28명, 중위소득 50% 이하 평균 1.37명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신청탈락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적음
 - 노인가구주를 대상으로 추출된 데이터이므로 노인가구가 전체 83.1%(276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 가구는 87.5%(28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 가구는 84.1%(58가구)로 나타남
 - 부양의무자 존재여부는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있음'이 85.9%(359가구)를 차지하고 있고,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우 '있음'이 89.7%(35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있음'이 92.7%(76가구)로 나타남
 - 부양의무자 존재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가구의 대다수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의 신청탈락사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 노인가구주 가구 전체 대상 특례여부를 살펴보면 '비해당'이 93.3%(390가구), 중위소득 30% 이하 92.3%(36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91.5%(75가구)로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대다수임
 - 노인가구주의 55.0%(230가구)는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나타남

〈표 5-13〉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가구, %, 명)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가구규모	1인	299 (71.5)	32 (82.1)	58 (70.7)
	2인	100 (23.9)	4 (10.3)	19 (23.2)
	3인	13 (3.1)	2 (5.1)	4 (4.9)
	4인	3 (0.7)	1 (2.6)	1 (1.2)
	5인이상	3 (0.7)	0 (0.0)	0 (0.0)
	계	418 (100.0)	39 (100.0)	82 (100.0)
	평균 가구원수 (표준편차)	1.36 (.678)	1.28 (.686)	1.37 (.639)
가구유형	일반가구	26 (7.8)	2 (6.3)	6 (2.9)
	노인가구	276 (83.1)	28 (87.5)	58 (84.1)
	모부자가구	8 (2.4)	0 (0.0)	1 (1.4)
	장애인가구	15 (4.5)	1 (3.1)	2 (2.9)
	조손가구	4 (1.2)	1 (3.1)	2 (2.9)
	기타가구	3 (0.9)	0 (0.0)	0 (0.0)
	계	332 (100.0)	32 (100.0)	69 (100.0)
부양의무자 존재여부	없음	59 (14.1)	4 (10.3)	6 (7.3)
	있음	359 (85.9)	35 (89.7)	76 (92.7)
	계	418 (100.0)	39 (100.0)	82 (100.0)
특례여부	비해당	390 (93.3)	36 (92.3)	75 (91.5)
	해당	28 (6.7)	3 (7.7)	7 (8.5)
	계	418 (100.0)	39 (100.0)	82 (100.0)
근로능력 유무	없음	230 (55.0)	23 (59.0)	47 (42.7)
	있음	4 (1.0)	0 (0.0)	0 (0.0)
	해당없음	184 (44.0)	16 (41.0)	35 (42.7)
	계	418 (100.0)	39 (100.0)	82 (100.0)

주 1: 가구유형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임의로 입력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구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예: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 해당되는 가구유형 중 실제로 혜택을 받는 지원액이 더 많은 가구유형을 기준으로 입력함

2: 일반가구(노인가구, 모부자가구,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기타가구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

3: 기타가구(노인가구, 모부자가구,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기타가구, 소년소녀가장, 미혼부모가구, 가정위탁보호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

4: 가구유형의 결측값(n=86)

5: 근로능력 유무-해당없음(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근로능력 판정대상이 아닌 경우)

6: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7: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2) 가구주 특성³⁾

- 노인가구주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을 살펴보면 다음 <표 5-14>와 같음
 - 전체 노인가구주의 성별은 42.1%(176가구)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57.9%(242가구)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약 15%정도 높음
 - 중위소득 30%와 50% 이하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각각 61.5%(24가구), 58.5%(48가구)로 나타나 여성가구주의 비수급 빈곤층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노인가구주의 연령을 10세 단위로 구분하면 노인가구주는 65~74세 이하가 43.8%(229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5~84세 이하 34.9%(146가구), 85세 이상이 10.3%(43가구)로 나타남
 - 중위소득 30% 이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75~85세 미만이 43.6%(17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역시 75~85세 미만이 46.3%(38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청탈락가구 전체와 비교하여 극빈층 신청탈락가구의 연령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가구주 평균연령은 전체 기준 평균 74.5세, 중위소득 30% 이하 평균 78.3세, 중위소득 50% 이하 평균 77.0세로 가장 극빈층인 중위소득 30% 이하 신청탈락가구주의 가구주 연령이 가장 많음

<표 5-14> 수원시 노인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가구, %, 세)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성별	남성	176 (42.1)	15 (38.5)	34 (41.5)
	여성	242 (57.9)	24 (61.5)	48 (58.5)
	계	418 (100.0)	39 (100.0)	82 (100.0)
연령	65~74세 이하	229 (43.8)	13 (33.3)	30 (36.6)
	75~84세 이하	146 (34.9)	17 (43.6)	38 (46.3)
	85세 이상	43 (10.3)	9 (23.1)	14 (17.1)
	계	418 (100.0)	39 (100.0)	82 (100.0)
평균연령(표준편차)		74.5(7.186)	78.3(9.176)	77.0(8.094)

주 1: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2: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3) 중위소득 30% 이하 신청탈락가구와 50% 이하 신청탈락가구를 각각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구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3) 가구의 소득·재산 특성

- 노인가구주 가구의 평균 소득 및 재산 현황은 다음과 <표 5-15>와 같음
 -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3,695,365원이었고,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 가구주 가구는 평균 303,012원, 50% 이하는 평균 667,344원으로 나타남
 - 실제소득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326,707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654,161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의 실제소득 평균은 1,223,265원임
 - 실제소득은 비이전소득과 이전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비이전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의 합을 의미하고, 이전소득은 사적이전, 부양비, 공적이전소득의 합을 의미함
 - 비이전소득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46,154원, 50% 이하는 177,299원으로 나타나 중위소득 30% 이하 신청탈락가구에 비해 약 4배정도 높은 수준임
 - 비이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평균값은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는 평균 46,154원이고, 50% 이하 가구는 평균 175,616원으로 나타남
 - 이전소득 평균값은 중위소득 50% 이하(476,932원)가 30% 이하(280,553원) 많음
 - 실제소득액과 비교해볼 때 노인가구주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실제소득의 대부분은 공적이전 소득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주거용재산의 합으로 산출되며,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의 재산 평균은 31,704,811원,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는 평균 34,624,597원으로 나타남
 - 부채는 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 간 사채, 공공기관 대출금의 합으로 산출되며,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부채 평균은 616,179원,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부채 평균은 3,023,951원으로 나타나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50% 이하 가구보다 부채액이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의 공제액 평균은 7,098,819원,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의 평균 공제액은 3,580,196원으로 나타나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우가 공제액이 약 2배 많음
 - 공제는 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의 합으로 산출됨

〈표 5-15〉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

(단위 : 명/표준편차, 원)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평균 가구원수	1.36 (.678)	1.28 (.686)	1.37 (.639)	
소득인정액	3,695,365 (5678247.761)	303,012 (155167.691)	667,344 (421103.948)	
소득평가액	1,596,354 (2416653.859)	424,230 (485678.428)	959,175 (1007830.039)	
재산의 소득환산액	4,568,332 (13958877.026)	10,133 (63282.646)	82,171 (333960.442)	
실제 소득	1,223,265 (1817687.144)	326,707 (203314.871)	654,161 (490221.805)	
	비이전소득	441,783 (1471523.069)	46,154 (147266.593)	177,229 (410199.910)
	근로소득	372,372 (1298042.510)	46,154 (147266.593)	175,616 (410730.619)
	사업소득	31,140 (323580.625)	0 (.000)	0 (.000)
	재산소득	38,271 (274139.693)	0 (.000)	1,613 (11737.971)
	보장기관 확인소득	0 (.000)	0 (.000)	0 (.000)
	이전소득	781,482 (1177319.219)	280,553 (118559.279)	476,932 (304482.821)
	사적이전	426,696 (1150874.416)	18,459 (55510.078)	165,109 (281856.820)
	부양비	16,677 (105574.484)	9,040 (33722.072)	10,215 (44860.434)
	공적이전	338,109 (275822.545)	253,053 (96882.482)	301,608 (165330.266)
	재산	126,714,074 (314871959.897)	31,704,811 (76852313.719)	34,624,597 (60289405.706)
	부채	19,496,758 (105308262.468)	616,179 (1828429.408)	3,023,951 (8619081.553)
자동차	893,801 (3786457.676)	0 (.000)	0 (.000)	
공제	13,306,602 (57554382.623)	7,098,819 (33003115.330)	3,580,196 (22884989.802)	

주 1: 모든 소득항목은 소득이 0인 경우를 포함한 평균값,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보장기관 확인소득-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소득
 3: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주거용재산, 기타
 4: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간사채, 공공기관대출금, 기타 부채
 5: 공제-소득공제(가구특성별지출, 근로소득공제, 농어민가구특별공제),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6: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7: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다음의 <표 5-16>에서는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유무에 따른 가구빈도와 비율을 제시함
 - 소득인정액이 없는 노인가구주 가구는 전체의 0.7%(3가구)에 해당하였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및 50% 이하 신청탈락가구는 각각 7.7%(3가구), 3.7%(3가구)로 동일함
 - 비이전소득이 없는 노인가구주 가구는 전체의 58.9%(246가구)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는 87.2%(34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72.0%(59가구)를 차지함
 - 비이전소득을 구성하는 항목별 소득을 보면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는 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없으며, 재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3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수급 빈곤층 최전선에 놓여있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이전소득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 노인가구주 가구의 대다수가 이전소득(사적이전, 부양비, 공적이전)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전소득의 경우 이전소득이 없는 경우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모두 동일하게 7.7%(3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각 92.3%(36가구), 96.3%(79가구)로 거의 모든 노인가구주 가구가 이전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이 이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위소득 30% 및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의 89.7%(35가구), 92.7%(76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산이 있는 노인가구주 가구는 중위소득 30% 및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의 각각 87.2%(34가구), 93.9%(77가구)였으며, 부채는 없는 경우가 각각 84.6%(33가구), 75.6%(62가구)로 나타나 재산은 있으나 부채는 없는 노인가구주 가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유무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각각 98.5%(64가구), 98.1%(152가구)는 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제 항목 역시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각각 76.9%(30가구), 79.3%(65가구)가 공제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5-16〉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유무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소득인정액	없음	3 (0.7)	3 (7.7)	3 (3.7)	
	있음	415 (99.3)	36 (92.3)	79 (96.3)	
소득평가액	없음	7 (1.7)	3 (7.7)	3 (3.7)	
	있음	411 (98.3)	36 (92.3)	79 (96.3)	
재산의 소득환산액	없음	178 (42.6)	38 (97.4)	72 (87.8)	
	있음	240 (57.4)	1 (2.6)	10 (12.2)	
실제 소득	비이전소득	없음	7 (1.7)	3 (7.7)	
		있음	411 (98.3)	36 (92.3)	
	근로소득	없음	246 (58.9)	34 (87.2)	59 (72.0)
		있음	172 (41.1)	5 (12.8)	23 (28.0)
	사업소득	없음	313 (74.9)	34 (87.2)	62 (75.6)
		있음	105 (25.1)	5 (12.8)	20 (24.4)
	재산소득	없음	406 (97.1)	39 (100.0)	82 (100.0)
		있음	12 (2.9)	0 (0.0)	0 (0.0)
	보장기관 확인소득	없음	346 (82.8)	39 (100.0)	79 (96.3)
		있음	72 (17.2)	0 (0.0)	3 (3.7)
	이전소득	없음	418 (100.0)	39 (100.0)	82 (100.0)
		있음	0 (0.0)	0 (0.0)	0 (0.0)
	사적이전	없음	16 (3.8)	3 (7.7)	3 (3.7)
		있음	402 (96.2)	36 (92.3)	79 (96.3)
	부양비	없음	249 (59.6)	33 (84.6)	48 (58.5)
		있음	169 (40.4)	6 (15.4)	34 (41.5)
	공적이전	없음	393 (94.0)	36 (92.3)	76 (92.7)
		있음	25 (6.0)	3 (7.7)	6 (7.3)
	재산	없음	26 (6.2)	4 (10.3)	6 (7.3)
		있음	392 (93.8)	35 (89.7)	76 (92.7)
부채	없음	6 (1.4)	5 (12.8)	5 (6.1)	
	있음	412 (98.6)	34 (87.2)	77 (93.9)	
자동차	없음	304 (72.7)	33 (84.6)	62 (75.6)	
	있음	114 (27.3)	6 (15.4)	20 (24.4)	
공제	없음	368 (88.0)	64 (98.5)	152 (98.1)	
	있음	50 (12.0)	1 (1.5)	3 (1.9)	
	없음	313 (74.9)	30 (76.9)	65 (79.3)	
	있음	105 (25.1)	9 (23.1)	17 (20.7)	

주 1: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2: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다음의 <표 5-17>은 신청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항목에서 소득과 재산항목 중 0원인 경우를 제외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제시한 것임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각각 328,262원, 692,686원으로 앞서 살펴본 소득 및 재산이 0인 경우를 포함한 평균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평가액 각각 459,582원, 995,599원으로 나타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각 평균 395,200원, 673,801원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을 포함한 평균값과 비교하여 매우 큰 차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실제소득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353,933원, 679,003원이었으며, 이중 비이전소득은 각각 360,000원, 631,861원이었고, 이전소득은 각각 303,933원, 495,043원으로 나타남
 - 비이전소득 항목별 소득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는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평균 360,000원으로 나타났고,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는 근로소득 720,028원, 재산소득 44,083원의 평균값을 보임
 - 이전소득 항목별 소득을 살펴보면 구성항목 중 공적이전 소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281,974원, 325,419원의 공적이전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산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36,367,283원, 36,872,947원이었으며, 부채는 각각 4,005,167원, 12,398,200원으로 0원이 포함된 평균값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채가 있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부채 보유액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동차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모두 0원으로 나타나 이는 자동차가 있는 노인가구주 가구가 소수 존재하였음에도 재산소득으로 평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공제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30,761,550원, 17,269,181원으로 공제액 0원이 포함된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7〉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만)

(단위 : 명, 원)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평균 가구원수	1.36 (.678)	1.28 (.686)	1.37 (.639)	
소득인정액	3,722,078 (5690032.433)	328,262 (132721.463)	692,686 (407884.331)	
소득평가액	1,623,542 (2428101.630)	459,582 (489275.514)	995,599 (1008988.905)	
재산의 소득환산액	7,956,512 (17688921.877)	395,200 -	673,801 (748886.931)	
실제 소득	1,244,099 (1826037.531)	353,933 (186999.381)	679,003 (482158.332)	
	비이전소득	1,073,635 (2144327.901)	360,000 (254558.441)	631,861 (564974.374)
	근로소득	1,482,396 (2257109.309)	360,000 (254558.441)	720,028 (553688.712)
	사업소득	1,084,722 (1650003.212)	0 (.000)	0 (.000)
	재산소득	222,182 (632417.449)	0 (.000)	44,083 (52647.981)
	보장기관 확인소득	0 (.000)	0 (.000)	0 (.000)
	이전소득	812,585 (1189968.904)	303,933 (89175.880)	495,043 (295287.498)
	사적이전	1,055,378 (1618697.314)	119,986 (93809.785)	398,204 (315221.902)
	부양비	278,838 (342804.257)	117,525 (49817.611)	139,608 (104521.323)
	공적이전	360,534 (270242.687)	281,974 (45780.367)	325,419 (147203.687)
	재산	128,559,425 (316786836.040)	36,367,283 (81403126.939)	36,872,947 (61562575.462)
	부채	71,488,114 (192807577.028)	4,005,167 (3019904.132)	12,398,200 (13941414.425)
	자동차	7,472,176 (8476737.845)	0 (.000)	0 (.000)
공제	52,972,950 (105642941.653)	30,761,550 (65991186.271)	17,269,181 (48991571.169)	

주 1: 모든 소득항목은 소득이 0인 경우를 제외한 평균값,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3: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0인 경우를 제외한 실제소득 대비 소득 구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비이전소득 비율이 6.33%, 이전소득 비율이 93.67%로 나타나 이전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실제소득 대비 비이전소득의 소득 구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는 근로소득 비율 6.33%로 비이전소득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역시 14.22%로 나타나 비이전소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함
 - 실제소득 대비 이전소득의 소득 구성별 비율 중 사적이전소득은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3.6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각각 6.13%, 19.77%로 나타났고, 특히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비율이 매우 낮았음
 - 부양비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각각 1.89%, 1.68%로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의 부양비 비율 1.39%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은 중위소득 30% 및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각각 85.65%, 64.12%로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비율 55.52%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았으며, 특히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는 실제소득의 대부분이 공적이전소득임

〈표 5-18〉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실제소득 대비 소득 구성별 비율

(단위 : %)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비이전소득	19.49	6.33	14.43
근로소득	14.72	6.33	14.22
사업소득	1.08	0.00	0.00
재산소득	3.69	0.00	0.20
보장기관 확인소득	0.00	0.00	0.00
이전소득	80.51	93.67	85.57
사적이전	23.60	6.13	19.77
부양비	1.39	1.89	1.68
공적이전	55.52	85.65	64.12

주 1: 실제소득이 0인 가구를 제외한 비율(제외된 가구 n=7),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비이전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의 합)

3: 이전소득(사적이전, 부양비, 공적이전소득의 합)

4: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5: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4) 공공부조성 급여 현황

- 공공부조(公共扶助)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무상적 원조로 현금급여를 직접 제공하거나 무료혜택을 주는 제도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제공되는 공공부조성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일반적 공공부조를 제외한 범주적공공부조의 현금급여를 의미하며 행복e음에서 추출된 공적이전소득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한 공공부조성 급여에 대한 수급현황은 <표 5-19>와 같으며, 노인가구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급여 평균값과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한 공적이전소득 급여 평균값을 비교하여 살펴봄
 - 공공부조성 급여, 즉 공적이전소득 총 급여의 평균은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338,109원으로 이 중 공적이전소득이 없는 비수급가구는 6.2%(26가구), 공적이전소득 수급가구는 93.8%(392가구)로 나타남
 -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의 총 급여 평균은 253,053원이며, 공적이전소득 수급가구는 89.7%(35가구를 차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의 총 급여 평균은 301,608원이고 공적이전소득 수급가구는 92.7%(76가구)로 나타남
 -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 급여가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됨
 - 공적이전소득 급여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 총 급여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평균 360,534원으로 나타났고,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각각 평균 281,974원, 325,419원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급여에 대한 노인가구주 가구의 전체평균은 220,886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각각 평균 238,558원, 234,810원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수급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의 89.2%(373가구)였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및 50% 이하 노인가구주는 각각 89.7%(35가구), 91.5%(75가구)로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수급가구 기준 급여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는 평균 247,535원,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각각 평균 265,821원, 256,725원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 평균값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을 제외한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극빈층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주 가구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
 -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한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의 전체평균은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평균 117,222원이었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각각 평균 14,496원, 66,798원이었음
 - 기초연금을 제외한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가구 비율은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39.5%(165가구)였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각각 20.5%(8가구), 28.0%(23가구)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 수급가구의 수급액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는 평균 296,963원,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각각 평균 70,666원, 238,148원으로 나타남

〈표 5-19〉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급여액 및 수급률

(단위 : 원/년, 가구, %)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총 급여	전체평균	338,109 (275822.545)	253,053 (96882.482)	301,608 (165330.266)	
	수급 여부	비수급가구(%)	26 (6.2)	4 (10.3)	6 (7.3)
		수급가구(%)	392 (93.8)	35 (89.7)	76 (92.7)
	수급가구 평균	360,534 (270242.687)	281,974 (45780.367)	325,419 (147203.687)	
기초연금 급여	전체평균	220,886 (82089.714)	238,558 (86207.817)	234,810 (78460.368)	
	수급 여부	비수급가구(%)	45 (10.8)	4 (10.3)	7 (8.5)
		수급가구(%)	373 (89.2)	35 (89.7)	75 (91.5)
	수급가구 평균	247,535 (30654.918)	265,821 (29080.490)	256,725 (32187.509)	
그 외 공적이전소 득 급여	전체평균	117,222 (289072.666)	14,496 (34538.647)	66,798 (156753.631)	
	수급 여부	비수급가구(%)	253 (60.5)	31 (79.5)	59 (72.0)
		수급가구(%)	165 (39.5)	8 (20.5)	23 (28.0)
	수급가구 평균	296,963 (398462.513)	70,666 (44038.875)	238,148 (218647.744)	

주 1: 총급여-행복e음에서 관리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모든 급여, 모든 평균값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 기초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3: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4: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5) 빈곤심도

- 다음은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았음
- 빈곤심도는 빈곤층의 빈곤의 정도와 규모에 따른 빈곤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빈곤심도 측정을 위한 기준설정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빈곤심도는 중위소득 0~15% 이하, 15~30% 이하, 35~50% 이하, 50~75% 이하, 75~100% 이하, 100~120% 이하, 120% 초과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가구의 비중을 중위소득 분위 구간별로 확인함
 - 중위소득 3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0~15% 구간에 속하는 극빈층은 48.72%(19가구)로 나타났으며, 15~3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51.28%(20가구)로 나타남
 -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52.44%(43가구)였으며, 중위소득 75%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75%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53.41%(94가구)를 차지함
 -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중 소득인정액인 중위소득 75~1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21.78%(49가구)이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12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12.79%(33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 비수급 노인가구주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구는 신청탈락 노인가구주 가구 전체의 38.28%(160가구)를 차지함
- 빈곤심도가 보여주는 수치를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존재함을 의미함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 이하인 가구가 19가구, 30% 이하인 가구가 20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표 5-20〉 수원시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가구의 비중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75%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0~15% 이하	19 (4.55)	19 (48.72)	19 (23.17)	19 (10.80)	19 (8.44)	19 (7.36)
중위소득 15~30% 이하	20 (4.78)	20 (51.28)	20 (24.39)	20 (11.36)	20 (8.89)	20 (7.75)
중위소득 30~50% 이하	43 (10.29)	-	43 (52.44)	43 (24.43)	43 (19.11)	43 (16.67)
중위소득 50~75% 이하	94 (22.49)	-	-	94 (53.41)	94 (41.78)	94 (36.43)
중위소득 75~100% 이하	49 (11.72)	-	-	-	49 (21.78)	49 (18.99)
중위소득 100~120% 이하	33 (7.89)	-	-	-	-	33 (12.79)
중위소득 120% 초과	160 (38.28)	-	-	-	-	-
계	418 (100.0)	39 (100.0)	82 (100.0)	176 (100.0)	225 (100.0)	258 (100.0)

주 1: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2: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복지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3) 여성가구주 가구의 프로파일 분석⁴⁾

- 여성가구주는 가족의 생계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을 의미하며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미혼여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임(e-나라지표, 2019)
- 일반적으로 남성 가구주보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취약성을 널리 알려진 바로 전통적으로 여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취약하여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였음
- 여성가구주 비율은 '75년도 이후' 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06년 28.7%에서 2015년 31.3%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와 정비례하여 왔음(강신욱 외, 2016)

4) 중위소득 30% 이하 신청탈락가구와 50% 이하 신청탈락가구를 각각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구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 우리나라 빈곤 취약계층인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추정을 위하여 2019년 1~9월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함
 - 남녀 가구주 가구 간 빈곤격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를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 여성가구주 가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1) 가구 특성

- 2019년 1~9월 기준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을 남성가구주 가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신청탈락가구 1,026가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54.4%(558가구)로 나타나 남성가구주 가구(45.6%)와 비교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약 8.8%(90가구) 더 높음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46.2%(48가구)였으며,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52.3%(124가구)로 나타나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1〉 수원시 가구주 성별 가구비중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468 (45.6)	56 (53.8)	113 (47.7)
여성 가구주 가구	558 (54.4)	48 (46.2)	124 (52.3)
계	1,026 (100.0)	104 (100.0)	237 (100.0)

주 1: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

2: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여성가구주 가구의 일반적 특성으로 가구규모, 가구유형, 부양의무자 존재여부, 특례여부, 가구주의 근로능력 유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22〉와 같음
 -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규모는 1인가구가 55.7%(311가구)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2인 가구 24.2%(135가구), 3인 가구 12.0%(67가구)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중위소득 3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규모는 1인 가구가 64.6%(31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역시 1인 가구가 49.2%(61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규모 특징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남성가구주 1인 가구 비율(80.4%)에 비해 여성가구주 1인 가구 비율(64.6%)이 낮고, 2인 가구 및 3인 가구 규모는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높아 여성가구주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가구규모별 평균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1.54명, 1.90명으로 남성가구주 가구 평균 1.32명, 1.73명보다 많음
-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노인가구 유형이 각각 45.9%(17가구), 34.0%(34가구)로 가장 많았음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가구유형의 특징은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노인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음
- 부양의무자 존재여부의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 가구 대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는 80.1%(447가구), 남성가구주 가구는 77.6%(363가구)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각각 81.3%(39가구), 83.9%(104가구)임
- 특례여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해당 여성가구주 가구는 93.9%(524가구)로 나타났으며, 비해당 남성가구주 가구는 94.9%(444가구)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약간 낮은 비율을 보임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례 비해당 비율은 각각 89.6%(43가구), 88.7%(110가구)로 특례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가구주의 근로능력은 전체 가구 기준으로 여성가구주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60.8%(175가구), 남성가구주는 33.3%(156가구)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주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약 2배 높았음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주 근로능력 유무의 경우 각각 31.3%(15가구), 27.4%(34가구)가 가구주의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 여성가구주 가구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가장 많고, 노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서 특례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가구로 가구주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음

〈표 5-22〉 수원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일반 특성

(단위 : 가구, %, 명/표준편차)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가구 규모	1인	255 (54.5)	311 (55.7)	45 (80.4)	31 (64.6)	73 (64.6)	61 (49.2)
	2인	103 (22.0)	135 (24.2)	5 (8.9)	10 (20.8)	16 (14.2)	31 (25.0)
	3인	45 (9.6)	67 (12.0)	5 (8.9)	5 (10.4)	12 (10.6)	20 (16.1)
	4인	40 (8.5)	30 (5.4)	1 (1.8)	2 (4.2)	7 (6.2)	8 (6.5)
	5인이상	25 (5.4)	15 (2.7)	0 (0.0)	0 (0.0)	5 (4.4)	4 (3.2)
	계	468 (100.0)	558 (100.0)	56 (100.0)	48 (100.0)	113 (100.0)	124 (100.0)
	평균(표준편차)	1.90(1.268)	1.76(1.068)	1.32(.716)	1.54(.849)	1.73(1.210)	1.90(1.122)
가구 유형	일반가구	161 (47.5)	109 (25.3)	20 (51.3)	11 (29.7)	41 (48.2)	30 (30.0)
	노인가구	102 (30.1)	184 (42.8)	11 (28.2)	17 (45.9)	24 (28.2)	34 (34.0)
	모부자가구	36 (10.6)	108 (25.2)	5 (12.8)	5 (13.5)	12 (14.2)	28 (28.0)
	장애인가구	33 (9.7)	19 (4.4)	2 (5.1)	1 (2.7)	5 (5.9)	4 (4.0)
	조손가구	4 (1.2)	3 (0.7)	0 (0.0)	2 (5.4)	2 (2.4)	2 (2.0)
	기타가구	3 (0.9)	7 (1.6)	1 (2.6)	1 (2.7)	1 (0.9)	2 (2.0)
	계	339 (100.0)	430 (100.0)	39 (69.6)	37 (100.0)	85 (100.0)	100 (100.0)
부양 의무자 존재여부	없음	105 (22.4)	111 (19.9)	10 (17.9)	9 (18.8)	26 (23.0)	20 (16.1)
	있음	363 (77.6)	447 (80.1)	46 (82.1)	39 (81.3)	87 (77.0)	104 (83.9)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계	468 (100.0)	558 (100.0)	56 (100.0)	48 (100.0)	113 (100.0)	124 (100.0)
특례 여부	비해당	444 (94.9)	524 (93.9)	53 (94.6)	43 (89.6)	103 (91.2)	110 (88.7)
	해당	24 (5.1)	34 (6.1)	3 (5.4)	5 (10.4)	10 (8.8)	14 (11.3)
	계	468 (100.0)	558 (100.0)	56 (100.0)	48 (100.0)	113 (100.0)	124 (100.0)
근로능력 유무	없음	156 (33.3)	175 (60.8)	22 (39.3)	15 (31.3)	44 (38.9)	34 (27.4)
	있음	44 (9.4)	44 (7.9)	10 (17.9)	6 (12.5)	14 (12.4)	15 (12.1)
	해당없음	268 (57.3)	339 (60.8)	24 (42.9)	27 (56.3)	55 (48.7)	75 (60.5)
	계	468 (100.0)	558 (100.0)	56 (100.0)	48 (100.0)	113 (100.0)	124 (100.0)

주 1: 가구유형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임의로 입력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구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예: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 해당되는 가구유형 중 실제로 혜택을 받는 지원액이 더 많은 가구유형을 기준으로 입력함

2: 일반가구(노인가구, 모부자가구,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기타가구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

3: 기타가구(노인가구, 모부자가구,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기타가구, 소년소녀가장, 미혼부모가구, 가정위탁보호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

4: 가구유형 결측값(n=257)

5: 근로능력 유무-해당없음(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근로능력 판정대상이 아닌 경우)

6: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

7: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2) 가구주 특성

-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주 연령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5-23>과 같음
 - 신청탈락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연령은 50~64세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주가 24.9%(13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5~74세 19.9%(111가구), 75~84세 17.4%(97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가구주 연령은 여성가구주 연령과 마찬가지로 50~64세가 35.3%(165가구), 65~74세가 25.2%(118가구) 순으로 가장 많았음
 - 중위소득 30% 이하 여성가구주의 연령은 75~84세가 22.9%(11가구)로 가장 많았고, 남성가구주의 경우 50~64세가 32.1%(18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위소득 30% 이하 극빈층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의 연령은 40~49세가 23.4%(2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가구주의 경우 50~64세가 38.9%(44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남성가구주 평균 58.28세, 여성가구주 평균 59.38세로 여성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더 높았음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평균 연령은 각각 61.71세, 58.52세로 남성가구주 평균연령보다 높았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극빈층 여성가구주의 평균연령이 전체 신청탈락가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3> 수원시 여성가구주의 일반 특성

(단위 : 가구, %, 세)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연령	30대 미만	18 (3.8)	23 (4.1)	5 (8.9)	4 (8.3)	6 (5.3)	7 (5.6)
	30~39세	30 (6.4)	59 (10.6)	5 (9.0)	6 (12.5)	8 (7.1)	14 (11.3)
	40~49세	79 (16.9)	95 (17.0)	13 (23.2)	8 (16.7)	21 (18.6)	29 (23.4)
	50~64세	165 (35.3)	139 (24.9)	18 (32.1)	6 (12.5)	44 (38.9)	26 (21.0)
	65~74세	118 (25.2)	111 (19.9)	8 (14.3)	5 (10.4)	17 (15.0)	13 (10.5)
	75~84세	49 (10.5)	97 (17.4)	6 (10.7)	11 (22.9)	15 (13.3)	23 (18.5)
	85세 이상	9 (1.0)	34 (6.1)	1 (1.8)	8 (16.7)	2 (1.8)	12 (9.7)
	계	468 (100.0)	558 (100.0)	56 (100.0)	48 (100.0)	113 (100.0)	124 (100.0)
평균연령 (표준편차)	58.28 (14.576)	59.38 (17.497)	53.82 (16.239)	61.71 (22.831)	56.61 (15.228)	58.52 (19.497)	

주 1: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

2: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3) 가구의 소득·재산 특성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소득 및 재산 현황은 다음 <표 5-24>와 같으며 제시된 수치는 소득이 0인 경우를 포함한 평균값임
- 신청탈락가구 전체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3,417,383원이었으며, 남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4,093,793원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소득인정액 평균이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낮았음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272,294원, 903,310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185,616원, 730,542원과 비교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각각 평균 426,885원, 2,015,442원이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각각 89,785원, 263,317원으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두 남성가구주 가구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제소득은 비이전소득과 이전소득을 합한 값으로 전체 신청탈락가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실제소득은 평균 2,009,533원으로 나타난 반면,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실제소득 평균은 각각 432,416원, 1,574,153원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비이전소득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271,347원, 1,170,201원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비이전소득 평균은 여성가구주 가구가 높은 반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비이전소득 평균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이전소득의 항목별 소득 평균은 근로소득이 비이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근로소득 평균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각각 271,000원, 1,068,974원으로 나타남
 - 중위소득 3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비이전소득 중 재산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은 평균 347원으로 나타난 반면,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사업소득 평균 84,489원, 재산소득 평균 16,738원으로 나타남
 - 이전소득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161,068원, 403,952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가구주 가구의 이전소득 평균값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전소득 구성항목 중 사적이전소득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16,529원, 266,570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평균값보다 높았고, 부양비 평균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4,331원, 5,093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부양비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40,208원, 132,289원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은 반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36,692,900원, 37,899,584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재산 평균값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2,704,813원, 23,029,317원으로 부채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의 부채액 평균이 큰 차이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자동차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67,353원, 34,922원으로 나타났으며, 공제소득은 각각 평균 9,489,238원, 5,160,954원으로 나타남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공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공제 평균값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약 10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공제소득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의미하므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이전소득	714,519 (1443806.073)	822,338 (1414241.344)	116,001 (179344.913)	161,068 (157427.133)	263,458 (387272.757)	403,952 (421125.422)
	499,299 (1430966.733)	643,276 (1411232.997)	10,545 (25320.683)	16,529 (52757.356)	120,931 (312671.934)	266,570 (410361.368)
	16,681 (100669.740)	14,149 (86259.053)	6,500 (28337.218)	4,331 (30007.347)	7,125 (37691.226)	5,093 (35778.800)
	198,539 (365366.222)	164,912 (224479.779)	98,956 (165051.983)	140,208 (145322.535)	135,402 (225359.827)	132,289 (202776.949)
재산	128,412,294 (292669472.614)	133,391,757 (455012872.443)	5,883,864 (46607971.633)	36,692,900 (72630168.031)	23,679,725 (65818928.786)	37,899,584 (91988529.698)
부채	41,543,831 (124136059.847)	29,369,658 (114124746.472)	13,592,268 (74594855.981)	2,704,813 (10108251.392)	29,945,759 (109584615.775)	23,029,317 (80051712.668)
자동차	2,491,527 (10660063.670)	1,112,079 (5162335.182)	0 (.000)	67,353 (466632.241)	35,465 (376995.017)	34,922 (305835.412)
공제	5,769,516 (30528363.819)	12,245,684 (49365040.468)	969,079 (3470770.108)	9,489,238 (36470363.507)	579,694 (2546113.736)	5,160,954 (23644830.747)

주 1: 모든 소득항목은 소득이 0인 경우를 포함한 평균값,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보장기관 확인소득-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소득
 3: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주거용재산, 기타
 4: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간사채, 공공기관대출금, 기타 부채
 5: 공제-소득공제(가구특성별지출, 근로소득공제, 농어민가구특별공제),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6: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
 7: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다음 <표 5-25>에서는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및 재산 유무에 따른 가구빈도와 비율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신청탈락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2.2%(12가구), 남성가구주 가구는 5.1%(24가구)로 나타남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가 각각 25.0%(12가구), 9.7%(12가구)였으며, 남성가구주 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3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29.2%(14가구)가 소득평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12.1%(15가구)가 소득평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93.8%(45가구), 85.5%(106가구)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신청탈락가구 기준으로 실제소득이 없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7.0%(39가구)였고, 남성가구주 가구는 10.3%(48가구)로 나타나 실제소득이 없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나타남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중 실제소득이 없는 가구는 각각 29.2%(14가구), 12.1%(15가구)로 나타남
 - 비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79.2%(38가구), 52.4%(65가구)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비이전소득이 없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이전소득 구성항목 중 근로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81.3%(39가구), 57.3%(71가구)가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로 나타남
 - 사업소득이 없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는 각각 97.9%(47가구), 96.0%(119가구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위소득 3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전체가 재산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41.7%(20가구), 25.0%(31가구)였으며, 이전소득이 없는 남성가구주 가구 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전소득 구성항목 중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87.5%(42가구), 52.4%(65가구)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비율이 더 높았음

- 부양비 유무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97.9%(47가구), 97.6%(121가구)가 부양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50.0%(24가구), 58.1%(72가구)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없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보다 높았음
- 재산은 재산이 있는 가구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93.8%(45가구), 95.2%(118가구)로 나타났고, 부채가 없는 가구는 각각 77.1%(37가구), 61.3%(76가구)로 나타남
- 자동차가 없는 가구는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97.9%(47가구), 98.4%(122가구)였으며, 공제소득이 없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각각 75.0%(36가구), 75.0%(93가구)로 공제소득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5〉 수원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유무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소득인정액	없음	24 (5.1)	12 (2.2)	24 (42.9)	12 (25.0)	24 (21.2)	12 (9.7)	
	있음	444 (94.9)	546 (97.8)	32 (57.1)	36 (75.0)	89 (78.8)	112 (90.3)	
소득평가액	없음	51 (10.9)	38 (6.8)	25 (44.6)	14 (29.2)	25 (22.1)	15 (12.1)	
	있음	417 (89.1)	520 (93.2)	31 (55.4)	34 (70.8)	88 (77.9)	109 (87.9)	
재산의 소득환산액	없음	240 (51.3)	274 (49.1)	55 (98.2)	45 (93.8)	101 (89.4)	106 (85.5)	
	있음	228 (48.7)	284 (50.9)	1 (1.8)	3 (6.3)	12 (10.6)	18 (14.5)	
실 제 소 득	비이전소득	없음	48 (10.3)	39 (7.0)	22 (39.3)	14 (29.2)	22 (19.5)	15 (12.1)
		있음	420 (89.7)	519 (93.0)	34 (60.7)	34 (70.8)	91 (80.5)	109 (87.9)
	근로소득	없음	207 (44.2)	263 (47.1)	42 (75.0)	38 (79.2)	61 (54.0)	65 (52.4)
		있음	261 (55.8)	295 (52.9)	14 (25.0)	10 (20.8)	52 (46.0)	59 (47.6)
	사업소득	없음	255 (54.5)	336 (60.2)	43 (76.8)	39 (81.3)	65 (57.5)	71 (57.3)
		있음	213 (45.5)	222 (39.8)	13 (23.2)	9 (18.8)	48 (42.5)	53 (42.7)
	재산소득	없음	433 (92.5)	527 (94.4)	56 (100.0)	47 (97.9)	109 (96.5)	119 (96.0)
		있음	35 (7.5)	31 (5.6)	0 (0.0)	1 (2.1)	4 (3.5)	5 (4.0)
	보장기관 확인소득	없음	427 (91.2)	489 (87.6)	55 (98.2)	48 (100.0)	111 (98.2)	119 (96.0)
		있음	41 (8.8)	69 (12.4)	1 (1.8)	0 (0.0)	2 (1.8)	5 (4.0)
	이전소득	없음	468 (100.0)	468 (100.0)	56 (100.0)	48 (100.0)	113 (100.0)	124 (100.0)
		있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사적이전	없음	157 (33.5)	128 (22.9)	33 (58.9)	20 (41.7)	55 (48.7)	31 (25.0)
		있음	311 (66.5)	430 (77.1)	23 (41.1)	28 (58.3)	58 (51.3)	93 (75.0)
		없음	299 (63.9)	279 (50.0)	47 (83.9)	42 (87.5)	77 (68.1)	65 (52.4)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부양비	있음	169 (36.1)	279 (50.0)	9 (16.1)	6 (12.5)	36 (31.9)	59 (47.6)
		없음	440 (94.0)	528 (94.6)	52 (92.9)	47 (97.9)	105 (92.9)	121 (97.6)
		있음	28 (6.0)	30 (5.4)	4 (7.1)	1 (2.1)	8 (7.1)	3 (2.4)
	공적이전	없음	261 (55.8)	290 (52.0)	39 (69.6)	24 (50.0)	73 (64.6)	72 (58.1)
		있음	207 (44.2)	268 (48.0)	17 (30.4)	24 (50.0)	40 (35.4)	52 (41.9)
	재산	없음	17 (3.6)	7 (1.3)	10 (17.9)	3 (6.3)	11 (9.7)	6 (4.8)
있음		451 (96.4)	551 (98.7)	46 (82.1)	45 (93.8)	102 (90.3)	118 (95.2)	
부채	없음	274 (58.5)	330 (59.1)	43 (76.8)	37 (77.1)	72 (63.7)	76 (61.3)	
	있음	194 (41.5)	228 (40.9)	13 (23.2)	11 (22.9)	41 (36.3)	48 (38.7)	
자동차	없음	380 (81.2)	500 (89.6)	56 (100.0)	47 (97.9)	112 (99.1)	122 (98.4)	
	있음	88 (18.8)	58 (10.4)	0 (0.0)	1 (2.1)	1 (0.9)	2 (1.6)	
공제	없음	366 (78.2)	392 (70.3)	45 (80.4)	36 (75.0)	92 (81.4)	93 (75.0)	
	있음	102 (21.8)	166 (29.7)	11 (19.6)	12 (25.0)	21 (18.6)	31 (25.0)	

주 1: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

2: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다음 <표 5-26>은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0원인 경우를 제외한 소득 및 재산 평균값을 남성 및 여성가구주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임
 - 소득인정액 평균은 신청탈락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남성가구주 가구 평균 4,315,079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3,492,490원으로 나타남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363,058원, 1,000,093원이었으며,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602,661원, 2,292,797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각 1,436,565원, 1,813,963원으로 나타남
 - 실제소득 평균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금액은 2,160,538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실제소득 평균(2,978,412원)보다 더 많음
 - 비이전소득 평균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302,467원, 2,459,406원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근로소득 평균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445,333원, 2,500,996원으로 나타남
 - 이전소득 평균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276,117원, 538,602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극빈층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이전소득 평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사적이전소득 평균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32,231원, 560,248원이었으며, 부양비는 각각 207,897원, 210,495원으로 나타나,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 및 부양비 모두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이 더 높았음
 - 공적이전소득의 평균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280,417원, 315,459원으로 나타남
 - 재산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39,139,094원, 39,826,681원이었으며, 부채 평균은 각각 11,802,818원, 59,492,402원으로 나타남
 - 자동차 평균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3,232,923원, 2,165,159원이었으며, 공제소득 평균은 각각 37,956,950원, 20,643,815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 공제소득 평균에 비해 큰 차이로 많았음

〈표 5-26〉 수원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만)

(단위 : 명/표준편차, 원)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가구원수	1.90 (1.268)	1.76 (1.068)	1.32 (.716)	1.54 (.849)	1.73 (1.210)	1.90 (1.122)	
소득인정액	4,315,079 (6870031.733)	3,492,490 (4919710.964)	324,828 (278531.468)	363,058 (230070.889)	927,542 (697920.577)	1,000,093 (634068.109)	
소득평가액	4,080,447 (7729810.631)	3,019,664 (4849413.461)	613,854 (1062402.122)	602,661 (729368.608)	2,285,468 (3363435.096)	2,292,797 (2790307.976)	
재산의 소득환산액	12,587,012 (24374396.127)	8,880,172 (25189140.503)	681,572 -	1,436,565 (994296.292)	1,871,193 (2549370.798)	1,813,963 (3453857.664)	
실 제 소 득		2,978,412 (4285823.424)	2,160,538 (2590291.447)	529,742 (885951.689)	610,469 (994296.292)	2,008,766 (3292060.727)	1,790,779 (2130357.369)
	비이전소득	3,511,641 (4754530.278)	2,245,609 (2622253.838)	822,511 (1268296.320)	1,302,467 (1673650.986)	2,942,827 (4076240.352)	2,459,406 (2403372.388)
	근로소득	3,704,584 (4878463.039)	2,712,552 (2615779.483)	884,383 (1297906.811)	1,445,333 (1709275.813)	2,720,060 (3740324.945)	2,500,996 (2474779.699)
	사업소득	3,248,285 (3606804.008)	1,688,242 (2062314.262)	0 (.000)	16,667 -	5,605,403 (5069622.872)	2,095,333 (1414899.953)
	재산소득	335,905 (815744.690)	114,967 (259880.724)	18,166 -	0 (.000)	21,249 (4360.020)	415,099 (859067.574)
	보장기관 확인소득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이전소득	1,075,224 (1658680.885)	1,067,127 (1528073.613)	282,438 (176824.459)	276,117 (100984.123)	513,288 (405232.031)	538,602 (404713.972)
	사적이전	1,382,674 (2112660.296)	1,286,552 (1777564.501)	65,612 (18524.426)	132,231 (88341.303)	379,590 (460276.738)	560,248 (435599.742)
	부양비	278,806 (315433.798)	263,176 (274068.874)	91,005 (66842.711)	207,897 -	100,638 (109428.869)	210,495 (117783.997)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공적이전	448,871 (435561.581)	343,362 (208855.774)	325,973 (122549.881)	280,417 (46144.366)	382,510 (221144.749)	315,459 (200630.448)
재산	133,252,669 (297060373.435)	135,086,389 (457648761.452)	7,162,965 (51436089.132)	39,139,094 (74410296.950)	26,233,421 (68820725.138)	39,826,681 (93906478.862)
부채	100,219,138 (177132647.579)	71,878,374 (169969920.719)	58,551,308 (150504776.271)	11,802,818 (19029198.343)	82,533,433 (170809423.275)	59,492,402 (120644788.977)
자동차	13,250,396 (21582038.910)	10,698,967 (12491988.331)	0 (.000)	3,232,923 -	4,007,512 -	2,165,159 (1510047.037)
공제	26,471,897 (61284592.892)	41,163,203 (83838273.702)	4,933,492 (6688804.923)	37,956,950 (67114243.012)	3,119,306 (5290101.336)	20,643,815 (44293796.231)

주 1: 모든 소득항목은 소득이 0인 경우를 제외한 평균값,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

3: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에 대하여 소득이 0인 경우를 제외한 실제소득 대비 소득 구성별 비율을 남성 및 여성가구주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신청탈락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남성가구주 가구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2.75%, 61.88%로 비이전소득 비율보다 높았음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실제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6.93%, 58.61%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이전소득 비율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이전소득의 소득 구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실제소득 대비 20.13%, 36.94%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업소득은 각각 2.94%, 3.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전소득의 소득 구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공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64.74%, 32.20%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위소득 3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소득 구성별 비율 중 공적이전소득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27〉 수원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실제소득 대비 소득 구성별 비율(2019.1~9)

(단위 : %)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비이전소득	47.25	38.12	37.79	23.07	49.68	41.39
근로소득	40.49	31.55	34.85	20.13	45.80	36.94
사업소득	4.29	3.38	0.00	2.94	2.76	3.89
재산소득	2.47	3.19	2.94	0.00	1.12	0.55
보장기관 확인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이전소득	52.75	61.88	62.21	76.93	50.32	58.61
사적이전	22.47	31.21	16.31	9.25	20.58	25.30
부양비	2.03	1.50	4.94	2.94	2.54	1.11
공적이전	28.26	29.17	40.96	64.74	27.20	32.20

주 1: 실제소득이 0인 가구를 제외한 비율(제외된 가구 n=87),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비이전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의 합)

3: 이전소득(사적이전, 부양비, 공적이전소득의 합)

4: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

5: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4) 공공부조성 급여 현황

- 공공부조성 급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제공되는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 여성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수급여부를 확인한 후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연금 급여와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제외한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 현황을 살펴봄
- 여성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평균 급여액 및 수급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28>와 같음
 - 공적이전소득 총급여 평균은 신청탈락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164,912원, 남성가구주 가구 198,539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공적이전소득 수급가구는 여성 및 남성가구주 가구 각각 48.0%(268가구), 44.2%(207가구)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가 공적이전소득 수급비율이 더 높았음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총급여 전체평균은 각각 140,208원, 132,289원이었으며, 수급가구 비율은 각각 50.0%(24가구), 41.9%(52가구)로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수급가구 비율이 더 높았음
 - 공적이전소득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총급여 평균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280,417원, 315,459원의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신청탈락가구의 장애인연금 급여 전체평균은 여성가구주 가구 6,680원, 남성가구주 가구 8,058원이었고, 수급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가 3.0%(17가구), 남성가구주 가구가 3.8%(18가구)로 나타남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장애인연금 급여 평균은 각각 2,917원, 8,095원이었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수급가구 비율은 2.1%(1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3.2%(4가구)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가구주 가구 중 장애인연금 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장애인연금 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40,000원, 250,938원으로 나타남
 - 전체 신청탈락가구의 기초연금 급여 전체평균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평균 102,070원, 수급가구 비율은 40.1%(224가구)였으며, 남성가구주 가구의 전체평균은 75,588원, 수급가구 비율은 31.8%(149가구)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기초연금 수급가구 비율이 더 높았음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 평균은 각각 125,078원, 95,865원이었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47.9%(23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37.1%(46가구)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로 나타남
- 여성가구주 가구 중 기초연금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 평균은 각각 261,033원, 258,418원으로 나타남
- 장애인연금 급여와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한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에 대한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신청탈락가구 전체 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전체평균은 56,162원, 수급 비율은 19.9%(111가구)였으며, 남성가구주 가구 전체평균은 114,893원, 24.6%(115가구)로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급여 평균이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 전체 평균은 각각 12,213원, 28,330원이었으며, 수급가구 비율은 각각 12.5%(6가구), 14.5%(18가구)로 나타남
-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제외한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의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 평균은 각각 97,708원, 250,919원으로 나타남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 가구의 공공부조성 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조성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 및 남성가구주 가구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급여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남성 및 여성가구주 가구간 차이를 보더라도 중위소득 30%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수급액 평균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극빈층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혜택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5-28〉 수원시 여성가家主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급여액 및 수급률

(단위 : 원/년, 가구, %)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주주 가구	여성가주주 가구	남성가주주 가구	여성가주주 가구	남성가주주 가구	여성가주주 가구	
총 급여	전체 평균	198,539 (365366.222)	164,912 (224479.779)	98,956 (165051.983)	140,208 (145322.535)	135,402 (225359.827)	132,289 (202776.949)	
	수급 여부	비수급가구(%)	261 (55.8)	290 (52.0)	39 (69.6)	24 (50.0)	73 (64.6)	72 (58.1)
		수급가구(%)	207 (44.2)	268 (48.0)	17 (30.4)	24 (50.0)	40 (35.4)	52 (41.9)
	수급가구 평균	448,871 (435561.581)	343,362 (208855.774)	325,973 (122549.881)	280,417 (46144.366)	382,510 (221144.749)	315,459 (200630.448)	
장애연금 급여	전 체평균	8,058 (45361.446)	6,680 (41777.237)	14,464 (61346.101)	2,917 (20207.259)	7,168 (43598.596)	8,095 (46160.638)	
	수급 여부	비수급가구(%)	450 (96.2)	541 (97.0)	52 (94.6)	47 (97.9)	110 (97.3)	120 (96.8)
		수급가구(%)	18 (3.8)	17 (3.0)	3 (5.4)	1 (2.1)	3 (2.7)	4 (3.2)
	수급가구 평균	209,514 (108786.876)	219,265 (105990.546)	270,000 (.000)	140,000 -	270,000 (.000)	250,938 (78178.315)	
기초연금 급여	전체 평균	75,588 (112776.494)	102,070 (125534.056)	58,929 (114854.510)	125,078 (132965.463)	65,196 (113295.233)	95,865 (126306.921)	
	수급 여부	비수급가구(%)	391 (68.2)	334 (59.9)	44 (78.6)	25 (52.1)	84 (74.3)	78 (62.9)
		수급가구(%)	149 (31.8)	224 (40.1)	12 (21.4)	23 (47.9)	29 (25.7)	46 (37.1)
	수급가구 평균	237,418 (38096.263)	254,265 (22147.599)	275,000 (33709.993)	261,033 (25861.992)	254,040 (40693.700)	258,418 (25801.865)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	전체 평균	114,893 (344950.467)	56,162 (177308.186)	25,563 (103852.527)	12,213 (49979.543)	63,038 (176746.627)	28,330 (154718.991)	
	수급 여부	비수급가구(%)	353 (75.4)	447 (80.1)	51 (91.1)	42 (87.5)	92 (81.4)	106 (85.5)
		수급가구(%)	115 (24.6)	111 (19.9)	5 (8.9)	6 (12.5)	21 (18.6)	18 (14.5)
	수급가구 평균	467,564 (566658.865)	282,327 (307828.901)	286,308 (234482.149)	97,708 (116002.200)	374,907 (266383.778)	250,919 (407850.011)	

- 주 1: 총급여-행복e음에서 관리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모든 급여, 모든 평균값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그 외 공적이전소득 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3: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
 4: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5) 빈곤심도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가구의 비중을 중위소득 분위 구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29>와 같음
 - 중위소득 30% 이하 신청탈락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64.58%(31가구), 중위소득 15~3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35.42%(17가구)로 나타나 중위소득 15~30% 구간보다 중위소득 1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남성가구주 가구 역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 이하인 가구가 69.64%(39가구)로 중위소득 15~3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비율 30.36%(17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가구주 가구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극빈층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61.29%(76가구)로 나타났으며, 남성가구주 가구는 50.44%(57가구)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75%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54.41%(148가구), 남성가구주 가구는 47.93%(104가구)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5~10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은 20.23%(69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비율은 21.66%(60가구)로 나타남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31.18%(174가구),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33.33%(156가구)로 나타남

〈표 5-29〉 수원시 여성가규주 가구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가구의 비중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중위소득 3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75%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탈락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신청탈락가구	
	남성가규주 가구	여성가규주 가구	남성가규주 가구	여성가규주 가구	남성가규주 가구	여성가규주 가구	남성가규주 가구	여성가규주 가구	남성가규주 가구	여성가규주 가구	남성가규주 가구	여성가 주 가구
중위소득 0~15% 이하	39 (8.33)	31 (5.56)	39 (69.64)	31 (64.58)	39 (34.51)	31 (25.00)	39 (17.97)	31 (11.40)	39 (14.08)	31 (9.09)	39 (12.50)	31 (8.07)
중위소득 15~30% 이하	17 (3.63)	17 (3.05)	17 (30.36)	17 (35.42)	17 (15.04)	17 (13.71)	17 (7.83)	17 (6.25)	17 (6.14)	17 (4.99)	17 (5.45)	17 (4.43)
중위소득 30~50% 이하	57 (12.18)	76 (13.62)	-	-	57 (50.44)	76 (61.29)	57 (26.27)	76 (27.94)	57 (20.58)	76 (22.29)	57 (18.27)	76 (19.79)
중위소득 50~75% 이하	104 (22.22)	148 (26.52)	-	-	-	-	104 (47.93)	148 (54.41)	104 (37.55)	148 (43.40)	104 (33.33)	148 (38.54)
중위소득 75~100% 이하	60 (12.82)	69 (12.37)	-	-	-	-	-	-	60 (21.66)	69 (20.23)	60 (19.23)	69 (17.97)
중위소득 100~120% 이하	35 (7.48)	43 (7.71)	-	-	-	-	-	-	-	-	35 (11.22)	43 (11.20)
중위소득 120% 초과	156 (33.33)	174 (31.18)	-	-	-	-	-	-	-	-	-	-
계	468 (100.0)	558 (100.00)	56 (100.0)	48 (100.0)	113 (100.0)	124 (100.0)	217 (100.0)	272 (100.0)	277 (100.0)	341 (100.0)	312 (100.0)	384 (100.0)

주 1: 전체가구-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전체

2: 대상자 추출 기준시점은 2019.1~9월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원자료

제2절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 실태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 기준의 모호성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함
- 이에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인 비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함

2) 조사설계

- 본 조사의 모집단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빈곤 사각지대 중 2019년 1~9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신청탈락 가구임
 -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19년 1~9월 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주이며, 표본집단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본 조사에 대한 참여동의서를 발송한 후 동의한 가구주의 가구임
 - 조사원칙은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노령 또는 장애 등의 이유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가구 내 적격대상자로 대체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함
 - 대체응답자 기준은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 성인 등을 우선순위로 대상가구의 소득, 자산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동거인'은 제외함
- 조사지역은 수원시이며, 조사방법은 가구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면접조사를 진행함
- 조사시기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212가구의 가구주(또는 대체응답자)를 대상으로 최종 212부의 자료가 분석데이터로 활용됨

〈표 5-30〉 조사설계

구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 2019년 1~9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주 중 조사에 동의한 자
조사지역	◦ 수원시
조사방법	◦ 가구방문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원 1:1 면접
조사시기	◦ 2020년 1월 20일 ~ 2월 21일(4주간)
조사단위	◦ 조사단위는 가구기준이며, 조사대상자는 대상가구의 가구주(또는 대체응답자) 개인임
최종 분석대상	◦ 총 212부

3) 조사내용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대상 설문조사의 조사항목은 응답자 일반사항, 가구 및 가구원 일반사항, 소득, 자산, 주거 및 생활환경, 건강, 사회보장수혜, 복지인식의 총 8개 영역으로 구분됨
 - 조사항목의 세부내용으로는 응답자 일반사항과 함께 가구 및 가구원 일반사항으로 가구원수, 가구형태, 수원시 거주기간 등과 가구원 정보, 급여 신청경험 및 신청탈락 이유 등이 포함됨
 - 소득 및 자산 영역 중 소득 관련 세부내용은 경제생활 상태와 경제적 문제 만족도, 월평균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등이 포함되며, 자산 영역에는 자산 및 부채현황, 부채 규모 변화 등이 포함됨
 - 주거 및 생활환경 영역은 주거생활 만족, 주거복지 관련 정부지원서비스 경험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영역은 병·의원 미진료 경험 및 미진료 이유, 건강보험료 종류 및 미납경험 등의 항목이 포함됨
 - 사회보장수혜 영역은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종류 및 지원 필요성과 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인식은 가구유형별 필요 생활비 정도, 항목별 복지인식과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됨
- 분석결과는 가구기준으로 조사대상 전체가구에 대한 결과와 함께 빈곤 사각지대의 대표적 가구유형인 노인가구주(65세 이상)와 여성가구주 대상의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특성을 비교함

〈표 5-31〉 조사항목

영역	세부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 가구주 생년월일, 응답자 성별, 응답자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 및 가구원 일반사항	◦ 가구원수, 가구형태, 수원시 거주기간, 주택유형, 주거형태, 가구원 개별정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경험, 급여수급 현황, 신청탈락 이유 등
소득	◦ 경제생활 상태, 경제적 문제 만족도, 가구의 소득 및 생활수준 변화,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지출, 생활비 지출 부담항목, 추가 필요 생활비, 경제적 어려움 경험여부 등
자산	◦ 자산현황, 부채현황, 부채용도, 최근 1년간 부채 규모 변화, 부채로 인한 어려움, 금융채무불이행 경험 여부, 재정 대비 준비사항
주거 및 생활환경	◦ 주거생활 만족, 거주주택 구조성능 및 환경, 주거복지 관련 정부지원서비스 경험여부 및 만족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순위
건강	◦ 병·의원 미진료 경험, 미진료 이유, 미진료로 인한 생활문제, 건강보험 종류,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건강보험료 미납이유, 의료비 가계부담 등
사회보장수혜	◦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종류 및 지원 필요성, 지원서비스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공공부조성 보조금 종류 및 급여액
복지인식	◦ 4인가구 기준 필요 생활비, 4인가구 기준 필요 저축액, 독거노인 기준 필요 생활비, 복지인식, 빈곤원인

2. 분석결과⁵⁾

1) 응답자 일반사항

- 응답자 일반사항으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만나이)과 가구주와의 관계가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성별은 응답자 총 212명 중 남성이 40.6%(86명), 여성이 59.4%(126명)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음
 - 응답자 연령(만 나이)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전체 45.8%(9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60대 28.3%(60명), 50대 12.7%(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만 66.5세였음
 -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본인)인 경우가 88.7%(188명)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 4.2%(9명), 배우자 3.8%(8명) 등으로 나타나 가구주 본인이 응답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5) 노인가구주와 여성가구주의 합이 전체 가구가 아님

〈표 5-32〉 응답자 일반사항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	남성	86 (40.6)
	여성	126 (59.4)
	계	212 (100.0)
연령 (만나이)	20대 미만	1 (0.5)
	20대	2 (0.9)
	30대	5 (2.4)
	40대	20 (9.4)
	50대	27 (12.7)
	60대	60 (28.3)
	70대 이상	97 (45.8)
	계	212 (100.0)
	평균연령(표준편차)	66.5(13.675)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본인)	188 (88.7)
	배우자	8 (3.8)
	자녀	9 (4.2)
	기타	7 (3.3)
	계	212 (100.0)

주: 가구주와의 관계 기타-손자, 손녀, 조카 등

2) 가구 및 가구원 일반사항

- 가구 일반사항 중 가구특성인 가구원수와 가구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구원수는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수치이며 전체가구 대상 가구원수 평균 1.61명, 노인가구주 평균 1.39명, 여성가구주 평균 1.51명으로 노인가구주 가구의 가구원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형태의 경우 전체,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단독가구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각각 60.8%(129가구), 69.7%(92가구), 65.0%(78가구)로 나타남
 - 단독가구 비율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형태는 전체가구의 경우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10.8%(23가구)로 가장 높았고,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노인부부가구(12.1%, 16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한부모가구(15.0%, 18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현황과 관련된 실거주 주택유형과 주거형태에 대한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택유형의 경우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다가구, 다세대 주택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각각의 비율은 46.7%(99가구), 42.4%(56가구), 44.2%(53가구)로 나타남
 - 전체가구 대상 주택유형 순위는 다가구, 다세대 다음으로 단독가구가 24.1%(51가구)로 가장 높았고, 노인가구주 가구 및 여성가구주 가구 역시 다가구, 다세대 다음으로 단독가구 유형이 각각 30.3%(40가구), 25.0%(30가구)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보증부월세가 34.9%(74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역시 보증부월세 비율이 각각 32.6%(43가구), 30.0%(36가구)로 가장 높았음
 - 주거형태 세부현황은 전체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보증부월세 다음으로 월세가 각각 23.6%(50가구), 27.5%(33가구)로 높았던 반면, 노인가구주 가구는 보증부월세 다음으로 전세가 24.2%(32가구)로 나타남
- 조사대상 가구주의 수원시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가구주는 평균 22.2년, 노인가구주 평균 25.1년, 여성가구주 평균 20.8년으로 나타나 수원시 거주기간은 노인가구주>전체대상 가구주>여성가구주 순으로 조사됨

〈표 5-33〉 가구 일반사항

(단위 : 명,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가구원수(명)		1.61 (1.063)	1.39 (.807)	1.51 (1.053)
가구형태	단독가구	129 (60.8)	92 (69.7)	78 (65.0)
	한부모가구	22 (10.4)	6 (4.5)	18 (15.0)
	노인부부가구	17 (8.0)	16 (12.1)	2 (1.7)
	장애인가구	23 (10.8)	9 (6.8)	13 (10.8)
	기타	21 (9.9)	9 (6.8)	9 (7.5)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주택유형	단독	51 (24.1)	40 (30.3)	30 (25.0)
	다가구, 다세대	99 (46.7)	56 (42.4)	53 (44.2)
	일반아파트	22 (10.4)	13 (9.8)	15 (12.5)
	영구임대아파트	29 (13.7)	17 (12.9)	15 (12.5)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기타	11 (5.2)	6 (4.5)	7 (5.8)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주거형태	자가	17 (8.0)	14 (10.6)	10 (8.3)
	전세	45 (21.2)	32 (24.2)	25 (20.8)
	보증부월세	74 (34.9)	43 (32.6)	36 (30.0)
	월세	50 (23.6)	29 (22.0)	33 (27.5)
	기타	26 (12.3)	14 (10.6)	16 (13.3)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수원시 거주기간(년) (표준편차)	22.2 (16.483)	25.1 (17.355)	20.8 (16.439)

주 1: 가구원수-응답자 본인 포함

2: 주거형태 기타-일반가구(n=19), 조손가구(n=2)

3: 주택유형 기타-상가주택(n=3), 원룸(n=3), 고시원(n=2), 오피스텔(n=1), 여관(n=1), 저소득고령자 전세주택(n=1)

4: 주거형태 기타-LH임대(n=18), 무상 거주(n=8)

- 다음은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일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로 가구원의 개별정보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이 대상임
 - 가구주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은 전체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는 자녀의 비율이 각각 16.7%(57명), 17.7%(32명)로 가장 많았고, 노인가구주 가구는 배우자가 11.5%(21명)로 가장 많은 특징을 보임
 - 가구원 성별의 경우 남성은 전체의 40.9%(140명), 여성은 59.1%(202명)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역시 여성의 비율이 각각 63.4%(116명), 83.4%(151명)로 남성보다 높았음
 - 가구원 평균 연령은 전체가구 대상 가구원 평균 연령은 만 57.6세,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각각 69.6세, 57.9세로 나타남
 - 조사대상 가구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가구원의 29.2%(100명)가 사별한 상태였으며,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원 역시 사별이 각각 44.8%(82명), 39.8%(72명)로 가장 많았음
 - 조사대상 가구원의 취업상태의 경우 전체가구 가구원 중 80.4%(275명)가 미취업 상태였으며,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각각 88.0%(161명), 81.8%(148명)가 미취업 상태로 나타남
 - 조사대상 가구원의 장애여부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가구원의 87.1%(298명)이 비장애이었으며,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원의 각각 88.0%(161명), 87.8%(159명)도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4〉 가구원 일반사항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212 (62.0)	132 (72.1)	120 (66.3)
	배우자	38 (11.1)	21 (11.5)	6 (3.3)
	부·모	13 (3.8)	2 (1.1)	6 (3.3)
	자녀	57 (16.7)	13 (7.1)	32 (17.7)
	손자·손녀	13 (3.8)	12 (6.6)	11 (6.1)
	기타	9 (2.6)	3 (1.6)	6 (3.3)
	계	342 (100.0)	183 (100.0)	181 (100.0)
가구원 성별	남성	140 (40.9)	67 (36.6)	30 (16.6)
	여성	202 (59.1)	116 (63.4)	151 (83.4)
	계	342 (100.0)	183 (100.0)	181 (100.0)
연령(만나이)		57.6세	69.6세	57.9세
혼인여부	기혼	88 (25.7)	47 (25.7)	19 (10.5)
	미혼	90 (26.3)	26 (14.2)	52 (28.7)
	사별	100 (29.2)	82 (44.8)	72 (39.8)
	이혼	62 (18.1)	26 (14.2)	36 (19.9)
	별거	1 (0.3)	1 (0.5)	1 (0.6)
	무응답	1 (0.3)	1 (0.5)	1 (0.6)
	계	342 (100.0)	183 (100.0)	181 (100.0)
취업상태	취업	67 (19.6)	22 (12.0)	33 (18.2)
	미취업	275 (80.4)	161 (88.0)	148 (81.8)
	계	342 (100.0)	183 (100.0)	181 (100.0)
장애여부	해당	44 (12.9)	22 (12.0)	22 (12.2)
	비해당	298 (87.1)	161 (88.0)	159 (87.8)
	계	342 (100.0)	183 (100.0)	181 (100.0)

주 1: 가구주와의 관계 기타-조카, 형제, 며느리 등

2: 취업상태-취업 중 가구원의 주로 하는 일(서비스직, 공공근로, 미화원, 일용직 등)

- 다음은 조사대상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연도에 대한 조사결과로, 본래 2019년 1~9월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가구가 조사대상이나 이전에 신청탈락경험이 있는 가구의 경우 최초 신청(탈락)연도를 기입하였음
 - 본 조사대상 가구는 과거에도 현재도 수급가구가 아닌 신청탈락가구가 대상임으로

2019년 1~9월 이전 시기로 표기된 신청탈락가구는 이전 시기와 2019년 1~9월 모두 신청탈락한 가구임

-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2019년 1~9월 중 급여신청을 하였다가 탈락한 가구가 각각 83.5%(177가구), 83.3%(110가구), 85.0%(102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함
- 이 외에도 2005~2015년 기간 중 신청탈락경험이 있는 가구비율은 전체가구는 3.3%(7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3.0%(4가구), 3.3%(4가구)로 나타나 이는 맞춤형 급여개편 이전에도 신청탈락경험이 있었으나, 개편 이후 완화된 기준선에도 부합하지 못하여 신청 탈락한 가구임을 의미함

〈표 5-35〉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연도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급여신청 연도	2005~2015년	7 (3.3)	4 (3.0)	4 (3.3)
	2016년	1 (0.5)	1 (0.8)	1 (0.8)
	2017년	5 (2.4)	4 (3.0)	2 (1.7)
	2018년	22 (10.4)	13 (9.8)	11 (9.2)
	2019년 1~9월	177 (83.5)	110 (83.3)	102 (85.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 다음은 조사대상인 2019년 1~9월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가구의 신청탈락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로 신청탈락 이유는 신청탈락 통지서(서면)에 기재된 탈락사유 또는 본인이 확인한 신청탈락 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임
 -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각각 38.2%(81가구), 45.5%(60가구), 40.8%(49가구)로 나타남
 -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잘 모름'이었으며, 각각 26.9%(57가구), 28.0%(37가구), 22.5%(27가구)로 나타남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와 '잘 모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신청탈락사유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소득 초과'가 각각 13.7%(29가구), 12.1%(16가구)였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소득 초과'와 '금융재산 초과'가 동일하게

13.3%(16가구)를 차지함

〈표 5-36〉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사유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소득 초과	29 (13.7)	16 (12.1)	16 (13.3)
부동산 초과	11 (5.2)	9 (6.8)	9 (7.5)
금융재산 초과	18 (8.5)	4 (3.0)	16 (13.3)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81 (38.2)	60 (45.5)	49 (40.8)
자동차 초과	6 (2.8)	2 (1.5)	1 (0.8)
스스로 포기	1 (0.5)	1 (0.8)	1 (0.8)
잘 모름	57 (26.9)	37 (28.0)	27 (22.5)
기타	9 (4.2)	3 (2.3)	1 (0.8)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주: 기타-나이 때문에, 해외여행 이력, 부모님 자산 등

- 조사대상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 후 생계유지 방법은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한다고 응답한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지원’으로 생계유지를 한 가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전체가구 대상은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이 26.9%(57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양의무자의 지원’이 24.1%(51가구),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가 20.3%(43가구), ‘친지 및 이웃의 도움’이 13.2%(28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주 가구 또한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이 32.6%(43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양의무자의 지원’ 25.0%(33가구),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15.9%(21가구), ‘친지 및 이웃의 도움’ 13.6%(18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가구주 가구는 ‘부양의무의 지원’이 25.8%(31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이 23.3%(28가구),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20.0%(24가구), ‘친지 및 이웃의 도움’ 16.7%(2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37〉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 후 생계유지 방법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부양의무자의 지원	51 (24.1)	33 (25.0)	31 (25.8)
친지 및 이웃의 도움	28 (13.2)	18 (13.6)	20 (16.7)
민간단체의 도움	3 (1.4)	1 (0.8)	2 (1.7)
빚을 내어서 생활	6 (2.8)	2 (1.5)	2 (1.7)
저축 등 재산을 줄여서 생활	9 (4.2)	5 (3.8)	5 (4.2)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57 (26.9)	43 (32.6)	28 (23.3)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43 (20.3)	21 (15.9)	24 (20.0)
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소득	3 (1.4)	2 (1.5)	1 (0.8)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기타	12 (5.7)	7 (5.3)	7 (5.8)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주: 생계유지 방법 기타-국민연금, 기초연금, 종교단체 도움, 주민센터 도움 등

3) 소득

- 다음은 신청탈락가구의 소득과 관련 현황에 대한 문항으로 가구주가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생활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임
 - 주관적 경제생활상태에 대한 전체가구 가구주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1점 '힘들다' 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35.4%(7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점 30.2%(64명), 3점 20.8%(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주의 경우 역시 1점 '힘들다'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34.1%(4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점 30.3%(40명), 3점 22.0%(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가구주의 경우 2점이 34.2%(4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점이 32.5%(39명), 3점 20.8%(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생활상태에 대한 평균 점수를 가구유형별로 비교하면, 1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2.18점, 노인가구주 평균 2.23점, 여성가구주 평균 2.19점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주가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생활상태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38〉 주관적 경제생활상태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주관적 경제생활상태	1점	75 (35.4)	45 (34.1)	39 (32.5)
	2점	64 (30.2)	40 (30.3)	41 (34.2)
	3점	44 (20.8)	29 (22.0)	25 (20.8)
	4점	19 (9.0)	10 (7.6)	8 (6.7)
	5점	9 (4.2)	7 (5.3)	7 (5.8)
	6점	0 (0.0)	0 (0.0)	0 (0.0)
	7점	1 (0.5)	1 (0.8)	0 (0.0)
	8점	0 (0.0)	0 (0.0)	0 (0.0)
	9점	0 (0.0)	0 (0.0)	0 (0.0)
	10점	0 (0.0)	0 (0.0)	0 (0.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평균(점)		2.18	2.23	2.19
(표준편차)		(1.180)	(1.221)	(1.140)

주: 10점 만점(1점: 힘들다 ~ 10점: 넉넉하다)

- 신청탈락가구 가구주에게 가구의 경제적 문제(소득, 생활비 지출, 노후보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가지 항목 모두 노인가구주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았고, 전체가구의 만족도 평균이 3가지 항목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과 관련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현재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가구는 평균 1.64점, 노인가구주 평균 1.68점, 여성가구주 평균 1.66점으로 나타나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가구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비 지출에 대한 현재 만족도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 1.67점, 노인가구주 평균 1.77점, 여성가구주 평균 1.68점으로 노인가구주의 생활비 지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보장에 대한 현재 만족도 평균은 전체가구 평균 1.83점, 노인가구주 1.95점, 여성가구주 평균 1.93점으로 노인가구주의 노후보장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39〉 경제적 문제에 대한 현재 만족도

(단위 : 점, 표준편차)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소득	1.64 (.699)	1.68 (.724)	1.66 (.692)
생활비 지출	1.67 (.770)	1.77 (.846)	1.68 (.788)
노후보장	1.83 (.878)	1.95 (.956)	1.93 (.900)

주: 5점 만점(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 다음은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및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지난 1년간 변화 경험과 향후 1년간 변화 예상에 대한 응답결과임
 - 소득에 대한 지난 1년간 변화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변화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51.9%(110가구), 60.6%(80가구), 52.5%(63가구)로 가장 많았음
 - 소득에 대한 지난 1년간 변화 경험에 응답에서 '변화 없음' 다음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응답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감소'가 각각 46.2%(98가구), 37.9%(50가구), 45.8%(55가구)로 나타남
 - 소득에 대한 향후 1년간 변화 예상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감소' 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구비율이 각각 55.7%(118가구), 49.2%(65가구)로 가장 많았고,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변화 없음'으로 응답한 가구가 53.3%(64가구)로 가장 많았음
 - 생활수준에 대한 지난 1년간 변화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변화 없음'이 각각 53.8%(114가구), 60.6%(80가구), 53.3%(64가구)로 가장 많았음
 - 생활수준에 대한 지난 1년간 변화 경험에 대한 응답 중 '변화 없음' 다음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응답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감소'가 각각 45.3%(96가구), 37.9%(50가구), 45.8%(55가구)로 나타남
 - 생활수준에 대한 향후 1년간 변화 예상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5.7%(118가구), 50.0%(66가구), 55.8%(67가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40〉 가구의 소득 및 생활수준 변화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소득	지난 1년(경험)	증가	4 (1.9)	2 (1.5)	2 (1.7)
		변화 없음	110 (51.9)	80 (60.6)	63 (52.5)
		감소	98 (46.2)	50 (37.9)	55 (45.8)
	향후 1년(예상)	증가	8 (3.8)	4 (3.0)	1 (.8)
		변화 없음	86 (40.6)	63 (47.7)	64 (53.3)
		감소	118 (55.7)	65 (49.2)	55 (45.8)
생활 수준	지난 1년(경험)	증가	2 (0.9)	2 (1.5)	1 (.8)
		변화 없음	114 (53.8)	80 (60.6)	64 (53.3)
		감소	96 (45.3)	50 (37.9)	55 (45.8)
	향후 1년(예상)	증가	7 (3.3)	3 (2.3)	5 (4.2)
		변화 없음	87 (41.0)	63 (47.7)	48 (40.0)
		감소	118 (55.7)	66 (50.0)	67 (55.8)

- 조사대상 가구에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월평균 가구지출(총 생활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 및 월평균 가구지출은 가구주(대체응답자)가 파악하고 있는 월평균 가구소득 및 월평균 가구지출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 전체를 포함한 결과임
 -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월평균 가구소득이 10만원 미만인 가구가 각각 55.7%(118가구), 64.4%(85가구), 59.2%(71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가구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하면, 전체가구의 경우 평균 45.7만원, 노인가구주 평균 28.2만원, 여성가구주 평균 45.1만원으로 나타나 전체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많고, 노인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지출(총 생활비)의 경우,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50~1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4.8%(95가구), 51.5%(68가구), 49.2%(59가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 월평균 가구지출을 비교하면, 전체가구의 경우 평균 81.2만원, 노인가구주 가구 평균 68.6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70.5만원으로 전체가구의 월평균 가구지출이 가장 많고, 노인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가구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가구의 최근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및 월평균 가구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전

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월평균 가구소득에 비해 월평균 가구지출이 약 1.5~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5-41〉 최근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총 생활비)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월평균 가구소득	10만원 미만	118 (55.7)	85 (64.4)	71 (59.2)
	10~50만원 미만	37 (17.5)	26 (19.7)	19 (15.8)
	50~100만원 미만	22 (10.4)	8 (6.1)	14 (11.7)
	100~200만원 미만	25 (11.8)	11 (8.3)	11 (9.2)
	200~300만원 미만	7 (3.3)	1 (0.8)	3 (2.5)
	300만원 이상	3 (1.4)	1 (0.8)	2 (1.7)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평균(만원)		45.7	28.2	45.1
(표준편차)		(101.660)	(74.775)	(119.774)
월평균 가구지출 (총 생활비)	10만원 미만	0 (0.0)	0 (0.0)	0 (0.0)
	10~50만원 미만	63 (29.7)	42 (31.8)	41 (34.2)
	50~100만원 미만	95 (44.8)	68 (51.5)	59 (49.2)
	100~200만원 미만	39 (18.4)	19 (14.4)	14 (11.7)
	200~300만원 미만	9 (4.2)	2 (1.5)	4 (3.3)
	300만원 이상	6 (2.8)	1 (0.8)	2 (1.7)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평균(만원)		81.2	68.6	70.5
(표준편차)		(64.130)	(51.690)	(51.739)

주 1: 가구소득-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의 총액

2: 가구생활비-주거관리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공(사)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전기·수도·난방비, 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민간보험, 기타 지출 등 가구기준 총 생활비

- 조사대상 가구에서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식료품비>의료비>주거비>전기·수도·난방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구지출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큰 부담항목을 조사한 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식료품비'가 각각 35.8%(76가구), 39.4%(52가구), 35.8%(43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다음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생활비 비율 부담항목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의료비'가 각각 28.8%(61가구), 31.8%(42가구), 27.5%(33가구)로

나타남

- 생활비 지출 중 부담 항목 순위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식료품비>의료비>주거비>전기·수도·난방비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42〉 생활비 지출 중 부담항목

(단위 : 가구, %)

구분	1순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식료품비	76 (35.8)	52 (39.4)	43 (35.8)
주거비	46 (21.7)	24 (18.2)	26 (21.7)
교통비	3 (1.4)	1 (0.8)	2 (1.7)
통신비	0 (0.0)	0 (0.0)	0 (0.0)
교육비	4 (1.9)	1 (.8)	4 (3.3)
전기·수도·난방비	16 (7.5)	12 (9.1)	9 (7.5)
의료비	61 (28.8)	42 (31.8)	33 (27.5)
사회보장부담금	0 (0.0)	0 (0.0)	0 (0.0)
민간보험료	0 (0.0)	0 (0.0)	0 (0.0)
부채 등 이자	6 (2.8)	0 (0.0)	3 (2.5)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생활유지를 위한 필요한 월평균 추가 생활비를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앞의 생활비 부담항목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부담이 큰 지출항목(〈표 5-42〉 참조)을 중심으로 생활유지를 위한 월평균 추가필요 생활비를 살펴보면, 먼저 식료품비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 11.1만원, 노인가구주 가구 평균 10.8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11.0만원의 추가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의료비 항목은 전체가구 평균 8.2만원, 노인가구주 가구 평균 8.3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7.0만원의 추가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거비 항목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 9.0만원, 노인가구주 가구 평균 7.2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8.9만원의 추가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수도·난방비 항목은 전체가구 평균 4.9만원, 노인가구주 가구 평균 5.1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4.6만원의 추가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유형별 월평균 추가필요 총 생활비를 비교하면, 전체가구 평균 45.8만원, 노인가

구주 가구 평균 41.4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44.1만원으로 나타나 전체가구가 추가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가 가장 많았고, 노인가구주 가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43〉 생활유지를 위한 월평균 추가필요 생활비

(단위 : 만원, 표준편차)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식료품비	11.1 (7.445)	10.8 (6.588)	11.0 (7.675)	의료비	8.2 (10.207)	8.3 (10.853)	7.0 (6.655)
주거비	9.0 (9.659)	7.2 (6.175)	8.9 (10.265)	사회보장 부담금	2.6 (4.516)	2.7 (4.727)	2.4 (4.638)
교통비	2.7 (3.492)	2.6 (2.883)	2.7 (2.979)	민간 보험료	1.7 (3.863)	1.9 (4.241)	1.7 (3.852)
통신비	2.2 (3.556)	1.7 (2.726)	2.0 (3.221)	부채 등 이자	2.3 (6.928)	0.8 (3.573)	2.1 (6.770)
교육비	1.1 (5.677)	0.2 (1.297)	1.7 (7.228)	기타	0.0 (.412)	0.0 (.000)	0.0 (.000)
전기·수도 ·난방비	4.9 (4.089)	5.1 (3.489)	4.6 (3.611)				
월평균 추가필요 생활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45.8 (28.188)		41.4 (23.452)		44.1 (26.16)		

- 최근 1년 동안 조사대상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각 항목별 경험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험하였던 항목 중 경험비율이 비해당보다 높은 항목은 ‘문화적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경험’으로 전체가구의 87.3%(185가구)가 이에 해당함
 - 그 외 항목에서는 ‘추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과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6.2%(98가구), 43.4%(92가구)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험하였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경험하였던 경우가 비해당보다 높은 항목은 전체가구와 동일하게 ‘문화적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경험’으로 노인가구주 가구의 85.6%(113가구)로 나타남

- 그 외 항목 중 다른 항목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험하였던 비율이 높은 항목은 '추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이 47.0%(62가구),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이 39.4%(52가구)로 나타남
-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비해당보다 높은 항목 역시 '문화적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경험'이 89.2%(107가구)로 나타남
- 그 외 항목도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응답결과와 동일하게 '추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43.3%(52가구),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이 49.2%(59가구)의 비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5-44〉 최근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예	65 (30.7)	36 (27.3)	30 (25.0)
	아니오	147 (69.3)	96 (72.7)	90 (75.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공과금 기한 내 납부 못한 경험	예	80 (37.7)	45 (34.1)	40 (33.3)
	아니오	132 (62.3)	87 (65.9)	80 (66.7)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 끊긴 경험	예	54 (25.5)	29 (22.0)	25 (20.8)
	아니오	158 (74.5)	103 (78.0)	95 (79.2)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추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예	98 (46.2)	62 (47.0)	52 (43.3)
	아니오	114 (53.8)	70 (53.0)	68 (56.7)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예	92 (43.4)	52 (39.4)	59 (49.2)
	아니오	120 (56.6)	80 (60.6)	61 (50.8)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문화적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경험	예	185 (87.3)	113 (85.6)	107 (89.2)
	아니오	27 (12.7)	19 (14.4)	13 (10.8)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빛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예	69 (32.5)	34 (25.8)	35 (29.2)
	아니오	143 (67.5)	98 (74.2)	85 (70.8)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집세가 밀렸거나 그	예	26 (12.3)	12 (9.1)	14 (11.7)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이유로 집을 옮긴 경험	아니오	159 (75.0)	100 (75.8)	87 (72.5)
	해당없음	27 (12.7)	20 (15.2)	19 (15.8)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자녀 공교육비 한달 이상 주지 못한 경험	예	11 (5.2)	2 (1.5)	7 (5.8)
	아니오	22 (10.4)	9 (6.8)	15 (12.5)
	해당없음	179 (84.4)	121 (91.7)	98 (81.7)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4) 자산

- 자산에 대한 조사항목은 2020년 1월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자산현황을 항목별(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살펴본 결과 일반재산 중 주택자산과 저축성예금, 주거용재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이루고 있고, 특징은 주거목적 재산인 주거용재산의 자산금액은 낮은 반면, 일반재산의 주택자산액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정확한 자산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준하여 자산현황을 조사함
 - 일반재산은 건축물, 주택(거주목적 외 주택 등 재산), 토지, 기타재산으로 구분됨
 - 먼저 건축물 자산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 전체 모두 보유하는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일반재산 중 주택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3.2%(28가구), 11.4%(15가구), 12.5%(15가구)로 나타났으며, 일반재산 주택 자산 평균은 전체가구 평균 4879.6만원, 노인가구주 가구 평균 5517.3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7027.3만원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택 자산액이 가장 높았음
 - 일반재산 중 토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가구 기준 1가구(0.5%)로 나타났으며, 토지 자산액은 600만원으로 나타남
 - 기타 재산은 전체가구 모두 보유한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재산은 저축성예금, 적금·보험, 기타 재산으로 구분됨
 - 금융재산 중 저축성예금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76.9%(163가구), 78.8%(104가구), 75.8%(91가구)였으며, 저축성예금 평균 자산액은 전체가구 평균 3401.9만원, 노인가구주 가구 3901.7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3940.3만원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저축성예금 자산액이 가장 높았음
 -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거용재산을 보유한 가

구는 전체가구 기준 2가구(0.9%)로 나타났으며,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2가구에 포함됨

- 주거용재산 평균 자산액은 259.5만원으로 나타남
-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6.1%(13가구), 3.0%(4가구), 2.5%(3가구)로 나타났고, 자동차 평균 자산액은 전체가구 평균 626.2만원, 노인가구주 가구 평균 350.0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330.0만원으로 전체가구의 자동차 자산액이 가장 높았음

〈표 5-45〉 가구의 자산현황_2020년 1월 기준

(단위 : 가구, %, 만원/표준편차)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일반 재산	건축물	유	0 (0.0)	0 (0.0)	0 (0.0)
		무	212 (100.0)	132 (100.0)	120 (100.0)
		평균 (표준편차)	- -	- -	- -
	주택	유	28 (13.2)	15 (11.4)	15 (12.5)
		무	184 (86.8)	117 (88.6)	105 (87.5)
		평균 (표준편차)	4879.6 (9330.452)	5517.3 (11599.625)	7027.3 (11781.580)
	토지	유	1 (0.5)	1 (0.8)	1 (0.8)
		무	211 (99.5)	131 (99.2)	119 (99.2)
		평균 (표준편차)	600.0 -	600.0 -	600.0 -
	기타 재산	유	0 (0.0)	0 (0.0)	0 (0.0)
		무	212 (100.0)	132 (100.0)	120 (100.0)
		평균 (표준편차)	- -	- -	- -
금융 재산	저축성예 금	유	163 (76.9)	104 (78.8)	91 (75.8)
		무	49 (23.1)	28 (21.2)	29 (24.2)
		평균 (표준편차)	3401.9 (9164.595)	3901.7 (11078.775)	3940.3 (11604.678)
	적금·보험	유	14 (6.6)	9 (6.8)	11 (9.2)
		무	198 (93.4)	123 (93.2)	109 (90.8)
		평균 (표준편차)	664.9 (1154.583)	930.4 (1391.647)	801.7 (1277.759)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기타 재산	유	20 (9.4)	11 (8.3)	15 (12.5)
	무	192 (90.6)	121 (91.7)	105 (87.5)
	평균 (표준편차)	215.7 (312.466)	257.4 (379.525)	153.7 (250.688)
주거용재산	유	2 (0.9)	2 (1.5)	2 (1.7)
	무	210 (99.1)	130 (98.5)	118 (98.3)
	평균 (표준편차)	259.5 (340.118)	259.5 (340.118)	259.5 (340.118)
자동차	유	13 (6.1)	4 (3.0)	3 (2.5)
	무	199 (93.9)	128 (97.0)	117 (97.5)
	평균 (표준편차)	626.2 (470.789)	350.0 (302.765)	330.0 (196.723)

주 1: 일반재산 중 주택-거주목적 외 주택 등 재산

2: 주거용 재산-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 부채보유 여부와 부채금액 현황은 조사당시 기준(2020년 1월)로 조사되었으며, 부채금액은 가구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확인 가능한 부채총액을 의미하고 금융기관을 제외한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임
 - 조사대상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부채보유 가구는 44.8%(95가구),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34.1%(45가구), 42.5%(51가구)로 나타남
 - 부채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채금액을 조사한 결과, 전체가구 부채금액 평균은 5844.5만원, 노인가구주 가구 평균 6910.6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7871.1만원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부채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46〉 부채보유 여부 및 부채금액

(단위 : 가구, %, 만원/표준편차)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부채보유	유	95 (44.8)	45 (34.1)	51 (42.5)
	무	117 (55.2)	87 (65.9)	69 (57.5)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부채금액	평균 (표준편차)	5844.5 (17349.473)	6910.6 (20539.344)	7871.1 (23417.581)

- 다음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채용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생활비(생계비)’가 각각 41.1%(39가구), 35.6%(16가구), 43.1%(22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부채용도 1순위 중 ‘생활비(생계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주택관련 자금’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18.9%(18가구), 26.7%(12가구), 23.5%(12가구)로 나타남

〈표 5-47〉 부채용도

(단위 : 가구, %)

구분	1순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교육(학자금 마련)	3 (3.2)	0 (0.0)	1 (2.0)
의료비	15 (15.8)	7 (15.6)	10 (19.6)
생활비(생계비)	39 (41.1)	16 (35.6)	22 (43.1)
주택관련 자금	18 (18.9)	12 (26.7)	12 (23.5)
소비물품 구입	2 (2.1)	2 (4.4)	0 (0.0)
관혼상제	1 (1.1)	0 (0.0)	1 (2.0)
사업자금 마련	15 (15.8)	6 (13.3)	3 (5.9)
기타	2 (2.1)	2 (4.4)	2 (3.9)
계	95 (100.0)	45 (100.0)	51 (100.0)

주 1: 부채 중 가장 높은 금액기준 우선순위

2: 부채용도 기타-보증

-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가구의 부채 규모 변화와 부채로 인한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채를 보유한 전체 95가구 중 부채 규모에 ‘변화없음’으로 응답한 가구는 54.7%(52가구)이었으며, 부채를 보유한 노인가구주 가구 45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 51가구 중 부채규모에 ‘변화없음’으로 응답한 가구는 각각 66.7%(30가구), 47.1%(24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다음은 부채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채로 인한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동일하게 ‘이자(원금상환)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각각 76.8%(73가구), 68.9%(31가구),

72.5%(37가구)로 나타남

- 그 외 부채로 인한 '어려움 없음'으로 응답한 가구도 전체가구 20.0%(19가구), 노인 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26.7%(12가구), 25.5%(13가구)로 나타남

〈표 5-48〉 최근 1년간 가구부채 규모변화 및 부채로 인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부채규모 변화	증가	26 (27.4)	7 (15.6)	16 (31.4)
	변화없음	52 (54.7)	30 (66.7)	24 (47.1)
	감소	17 (17.9)	8 (17.8)	11 (21.6)
	계	95 (100.0)	45 (100.0)	51 (100.0)
부채로 인한 어려움	어려움 없음(비해당)	19 (20.0)	12 (26.7)	13 (25.5)
	이자(원금상환)의 어려움	73 (76.8)	31 (68.9)	37 (72.5)
	불법채권추심	2 (2.1)	1 (2.2)	0 (0.0)
	부동산 등 처분 또는 경매	1 (1.1)	1 (2.2)	1 (2.0)
	압류경험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계	95 (100.0)	45 (100.0)	51 (100.0)

- 최근 5년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중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한 결과, 가구원 중 신용불량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경우 20.8%(44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9.8%(13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16.7%(20가구)로 가구원 중 신용불량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표 5-49〉 가구의 가구원 중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 경험여부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중 신용불량 경험	유	44 (20.8)	13 (9.8)	20 (16.7)
	무	168 (79.2)	119 (90.2)	100 (83.3)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 다음은 가구원 중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 경험자가 있다고 응답한 4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신용불량 상태에서 가구에 느낀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구원의 신용불량 상태에 대하여 대상가구는 생계유지, 심리적 압박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첫 번째 항목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및 필수적 지출 곤란'에 대한 응답결과 '약간 심함'으로 응답한 가구가 전체 59.1%(26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매우 심함'이 29.5%(13가구)로 높은 순으로 나타남
- '전화방문, 추심(독촉)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 대한 응답결과, '약간 심함'이 52.3%(23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심함'이 20.5%(9가구)로 높았음
- '현 일자리(사업)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응답결과, '매우 심함'이 34.1%(1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으로 응답한 가구가 22.7%(10가구)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운영 등) 자금운용의 곤란'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 '약간 심함'이 27.3%(1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거의 없음'이 22.7%(10가구)로 나타남
- '외부의 시선(눈총 등)'에 대한 응답결과, '약간 심함'이 31.8%(14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25.0%(11가구)로 나타남

〈표 5-50〉 가구원의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 대한 가구의 어려움

(단위 : 가구, %)

구분	전혀없음	거의 없음	보통	약간 심함	매우 심함
가구의 생계유지 및 필수적 지출 곤란	1 (2.3)	2 (4.5)	2 (4.5)	26 (59.1)	13 (29.5)
전화방문, 추심(독촉)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3 (6.8)	4 (9.1)	5 (11.4)	23 (52.3)	9 (20.5)
현 일자리(사업)에 대한 위협	4 (9.1)	8 (18.2)	10 (22.7)	7 (15.9)	15 (34.1)
(사업운영 등) 자금운용의 곤란	6 (13.6)	10 (22.7)	7 (15.9)	12 (27.3)	9 (20.5)
외부의 시선(눈총 등)	5 (11.4)	10 (22.7)	11 (25.0)	14 (31.8)	4 (9.1)

주: 가구 가구원 중 신용불량 경험 n=44

- 조사대상 가구에게 향후 재정이 필요할 것을 대비한 준비여부와 경제적인 준비와 보험 가입 두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준비(저축, 연금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94.8%(201가구), 93.9%(124가구), 92.5%(111가구)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 외 민간보험(의료보험, 생명보험 등)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90.1%(191가구), 91.7%(121가구), 86.7%(104가구)로 나타나 경제적인 준비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5-51〉 향후 재정 필요를 대비한 준비사항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비한 경제적인 준비(저축, 연금 등)	예	11 (5.2)	8 (6.1)	9 (7.5)
	아니오	201 (94.8)	124 (93.9)	111 (92.5)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사회보험 외 민간보험(의료보험, 생명보험 등) 가입	예	21 (9.9)	11 (8.3)	16 (13.3)
	아니오	191 (90.1)	121 (91.7)	104 (86.7)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 앞의 향후 재정을 위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재정(경제적인 준비 또는 민간보험 가입)을 대비하고 있는 주된 목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질병대비'로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69.0%(20가구), 56.3%(9가구), 69.6%(16가구)로 나타남

〈표 5-52〉 재정을 대비하고 있는 주된 목적_(1순위, 2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노후대비	4 (13.8)	3 (18.8)	3 (13.0)	4 (17.4)	2 (16.7)	4 (22.2)
질병대비	20 (69.0)	9 (56.3)	16 (69.6)	4 (17.4)	3 (25.0)	2 (11.1)
주택자금 마련	4 (13.8)	3 (18.8)	3 (13.0)	0 (0.0)	0 (0.0)	0 (0.0)
자식의 결혼대비	0 (0.0)	0 (0.0)	0 (0.0)	1 (4.3)	0 (0.0)	1 (5.6)
자녀교육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집안일 대비	1 (3.4)	1 (6.3)	1 (4.3)	13 (56.5)	7 (58.3)	10 (55.6)
기타	0 (0.0)	0 (0.0)	0 (0.0)	1 (4.3)	0 (0.0)	1 (5.6)
계	29 (100.0)	16 (100.0)	23 (100.0)	23 (100.0)	12 (100.0)	18 (100.0)

주: 재정준비 주된 목적 기타-상해 대비

5) 주거 및 생활환경

- 다음은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먼저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가 인식하는 가구의 주거생활(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등)에 대한 주관적 만족 수준을 조사하였음
 - 주거생활 만족도는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체가구 가구주의 경우 주거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27.4%(5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불만족’이 26.4%(56명), ‘보통’ 23.1%(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주의 경우 ‘불만족’과 ‘만족’이 동일하게 28.0%(3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보통’이 23.5%(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가구주의 경우 ‘보통’이 29.2%(3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불만족’이 26.7%(32명), ‘만족’ 25.8%(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구유형별 주거생활 만족도 평균을 비교하면 전체가구 가구주의 주거생활 만족도 평균은 2.66점, 노인가구주 평균 2.71점, 여성가구주 평균 2.69점으로 노인가구주가 인식하는 주거생활 만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53〉 주거생활(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등)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주거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43 (20.3)	23 (17.4)	20 (16.7)
	불만족	56 (26.4)	37 (28.0)	32 (26.7)
	보통	49 (23.1)	31 (23.5)	35 (29.2)
	만족	58 (27.4)	37 (28.0)	31 (25.8)
	매우 만족	6 (2.8)	4 (3.0)	2 (1.7)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평균 (표준편차)	2.66 (1.163)	2.71 (1.143)	2.69 (1.083)

주: 5점 만점(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 다음은 조사대상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가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상태에 대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영구건물로서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음에 양호한 수준’인지에 대한 조

- 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양호'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각각 76.4%(162가구), 78.8%(104가구), 80.0%(96가구)로 나타남
- '적절한 환기 및 채광설비'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양호'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각각 74.5%(158가구), 74.2%(98가구), 77.5%(93가구)로 나타남
 - '적절한 보온 및 난방설비'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양호'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각각 81.1%(172가구), 81.1%(107가구), 82.5%(99가구)로 나타남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생활하기 적절함'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양호'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각각 75.0%(159가구), 75.0%(99가구), 75.0%(90가구)로 나타남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함'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양호'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각각 78.8%(167가구), 78.0%(103가구), 81.7%(98가구)로 나타남

〈표 5-54〉 거주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주요 구조부 질이 내열·내화·방음에 양호한 재질을 갖춘	양호	162 (76.4)	104 (78.8)	96 (80.0)
	불량	50 (23.6)	28 (21.2)	24 (20.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적절한 환기 및 채광설비	양호	158 (74.5)	98 (74.2)	93 (77.5)
	불량	54 (25.5)	34 (25.8)	27 (22.5)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적절한 보온 및 난방설비	양호	172 (81.1)	107 (81.1)	99 (82.5)
	불량	40 (18.9)	25 (18.9)	21 (17.5)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생활하기 적절함	양호	159 (75.0)	99 (75.0)	90 (75.0)
	불량	53 (25.0)	33 (25.0)	30 (25.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함	양호	167 (78.8)	103 (78.0)	98 (81.7)
	불량	45 (21.2)	29 (22.0)	22 (18.3)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 조사대상 가구에게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부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지원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정부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나, 이 역시 받은 경험비율은 1/4 이하 수준이었음
 -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각각 25.0%(53가구), 22.7%(30가구), 21.7%(26가구)로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서비스 경험이 있는 가구의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전체가구 평균 3.38점, 노인가구주 가구 3.37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3.42점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4.2%(9가구), 3.0%(4가구), 1.7%(2가구)로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은 가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함
 -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서비스 경험이 있는 가구의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전체가구 평균 3.56점, 노인가구주 가구 3.50점, 여성가구주 가구 평균 3.50점으로 전체가구의 서비스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근로자·서민)’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 중 1가구(0.5%)만 이에 해당하였으며,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는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 1가구(0.5%)로 노인가구주 가구 역시 1가구에 해당함

〈표 5-55〉 주거복지 관련 정부지원서비스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가구, %, 점/표준편차)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있음	53 (25.0)	30 (22.7)	26 (21.7)
	없음	159 (75.0)	102 (77.3)	94 (78.3)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만족도 평균	3.38	3.37	3.42
	(표준편차)	(.740)	(.765)	(.758)
전세자금(용자) 지원(저소득·근 로자·서민)	있음	9 (4.2)	4 (3.0)	2 (1.7)
	없음	203 (95.8)	128 (97.0)	118 (98.3)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만족도 평균	3.56	3.50	3.50
	(표준편차)	(.527)	(.577)	(.707)
주택구입자금 (용자)지원 (근로자·서민)	있음	1 (0.5)	-	-
	없음	211 (99.5)	132 (100.0)	120 (100.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평균	4.00	-	-
	(표준편차)	-	-	-
주택개량·개보 수 지원	있음	1 (0.5)	1 (0.8)	-
	없음	211 (99.5)	131 (99.2)	120 (100.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평균	4.00	4.00	-
	(표준편차)	-	-	-

주: 만족도-5점 만점(1점: 매우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 조사대상 가구주에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지원정책에 대하여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정부지원정책 1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 가구주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모두 '영구임대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30.7%(65명), 29.5%(39명), 30.0%(36명)로 나타남
 - 우선순위 1순위 중 '영구임대주택' 다음으로는 전체가구 가구주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모두 '공공(국민)임대주택'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21.7%(46명), 22.0%(29명), 22.5%(27명)로 나타남
 - 그 외 '난방비 지원', '전세자금(용자) 지원' 등의 응답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정부지원정책 2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 가구

주의 경우 ‘저소득층 월세지원’이 24.4%(50명)로 가장 높았고, 노인가구주의 경우 ‘난방비 지원’이 25.8%(33명), 여성가구주의 경우 ‘저소득층 월세지원’이 25.9%(30명)로 가구유형별로 필요한 정부지원서비스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56〉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실시해야 할 지원정책_(1순위, 2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영구임대주택	65 (30.7)	39 (29.5)	36 (30.0)	30 (14.6)	21 (16.4)	15 (12.9)
공공(국민) 임대주택	46 (21.7)	29 (22.0)	27 (22.5)	45 (22.0)	27 (21.1)	25 (21.6)
전세자금(응자)지원	36 (17.0)	21 (15.9)	21 (17.5)	17 (8.3)	8 (6.3)	9 (7.8)
저소득층 월세지원	28 (13.2)	18 (13.6)	14 (11.7)	50 (24.4)	26 (20.3)	30 (25.9)
주택개량 및 보수사업	6 (2.8)	3 (2.3)	1 (0.8)	16 (7.8)	13 (10.2)	10 (8.6)
난방비 지원	31 (14.6)	22 (16.7)	21 (17.5)	47 (22.9)	33 (25.8)	27 (23.3)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205 (100.0)	128 (100.0)	116 (100.0)

6) 건강

- 건강과 관련한 조사문항 중 지난 1년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중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치과진료 포함)이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가구의 경우 42.0%(89가구)였으며 노인가구주 가구는 38.6%(51가구), 여성가구주 가구는 47.5%(57가구)로 조사대상 가구의 약 40% 내외로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받지 못한 경험이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56.1%(119가구), 59.8%(79가구), 50.8%(61가구)로 나타났으며, 병·의

원 진료나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9%(4가구), 1.5%(2가구), 1.7%(2가구)로 나타남

〈표 5-57〉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 미진료 및 중도포기 경험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예,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음	89 (42.0)	51 (38.6)	57 (47.5)
아니오, 받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음	119 (56.1)	79 (59.8)	61 (50.8)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음	4 (1.9)	2 (1.5)	2 (1.7)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 다음은 병·의원 진료나 검사를 받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미진료 및 포기사유에 대하여 질문함
 - 병·의원 미진료 및 포기사유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진료비 부담 때문에’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동일했으며, 각각 85.4%(76가구), 82.4%(42가구), 82.5%(47가구)로 나타남
 - ‘진료비 부담 때문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어서’가 각각 6.7%(6가구), 7.8%(4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일 중단시 수입(소득) 감소’가 7.0%(4가구)로 나타남

〈표 5-58〉 병·의원 미진료 및 포기사유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진료비 부담 때문에	76 (85.4)	42 (82.4)	47 (82.5)
일 중단시 수입(소득)감소	4 (4.5)	3 (5.9)	4 (7.0)
시간이 없어서	1 (1.1)	1 (2.0)	1 (1.8)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어서	6 (6.7)	4 (7.8)	3 (5.3)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0 (0.0)	0 (0.0)	0 (0.0)
식구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0 (0.0)	0 (0.0)	0 (0.0)
거동불편 또는 건강상 이유로	2 (2.2)	1 (2.0)	2 (3.5)
기타	0 (0.0)	0 (0.0)	0 (0.0)
계	89 (100.0)	51 (100.0)	57 (100.0)

- 병·의원 진료나 검사를 받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나 증세가 악화되는 등 현재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생활상의 문제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약간 문제가 있는 편이다’가 전체의 49.4%(44가구)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매우 문제가 많다’ 22.5%(20가구), ‘보통이다’ 16.9%(15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미진료 등으로 인하여 생활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5-59〉 미진료 등으로 인한 현재 생활상의 문제정도

(단위 : 가구, %)

계	전혀 문제가 없다	거의 문제가 없다	보통이다	약간 문제가 있는 편이다	매우 문제가 많다
89 (100.0)	3 (3.4)	7 (7.9)	15 (16.9)	44 (49.4)	20 (22.5)

- 조사당시 기준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가 어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가장 비율이 높은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지역)’으로 전체가구 가구주와 노인 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모두 각각 53.3%(113명), 51.5%(68명), 53.3%(64명)으로 나타남
 - ‘국민건강보험(지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강보험은 전체가구 가구주와 노인 가구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직장)’으로 각각 15.1%(32명), 16.7%(22명)로 나타났고, 여성가구주의 경우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이 18.3%(22명)로 나타남

〈표 5-60〉 건강보험 가입종류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국민건강보험(지역)	113 (53.3)	68 (51.5)	64 (53.3)
국민건강보험(직장)	32 (15.1)	22 (16.7)	17 (14.2)
의료급여 1종	3 (1.4)	1 (0.8)	1 (0.8)
의료급여 2종	31 (14.6)	21 (15.9)	12 (10.0)
미가입	7 (3.3)	4 (3.0)	4 (3.3)
모름	26 (12.3)	16 (12.1)	22 (18.3)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 조사대상 가구에게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2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미납경험이 있을 시 '있음'에 응답하도록 하였음
 - 지난 1년간 2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미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0.4%(22가구), 5.3%(7가구), 10.0%(12가구)로 나타남

〈표 5-61〉 지난 1년간 2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있음	22 (10.4)	7 (5.3)	12 (10.0)
	없음	190 (89.6)	125 (94.7)	108 (90.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 조사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62〉 건강보험료 미납이유_전체가구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
건강보험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0 (0.0)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22 (100.0)
내는 돈에 비해서 혜택이 적어서	0 (0.0)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0 (0.0)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	0 (0.0)
기타	0 (0.0)
계	22 (100.0)

- 조사대상 가구에게 조사당시 기준 지난 1년간 전반적인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가구, 노인가구, 여성가구주 모두 '다소 부담되었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인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다소 부담되었음'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40.6%(86

가구), 38.6%(51가구), 39.2%(47가구)로 나타남

- ‘다소 부담되었음’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동일하게 ‘매우 부담되었음’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27.4%(58가구), 26.5%(35가구), 29.2%(35가구)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절반 이상이 높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표 5-63〉 지난 1년간 전반적인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음	7 (3.3)	5 (3.8)	4 (3.3)
거의 부담되지 않았음	12 (5.7)	11 (8.3)	4 (3.3)
보통	49 (23.1)	30 (22.7)	30 (25.0)
다소 부담되었음	86 (40.6)	51 (38.6)	47 (39.2)
매우 부담되었음	58 (27.4)	35 (26.5)	35 (29.2)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 다음은 조사대상 가구에게 지난 1년간 의료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생활비로’ 충당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76.4%(162가구), 79.5%(105가구), 75.0%(90가구)로 나타남
 - 1순위 응답 중 ‘생활비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친지나 친구에게 도움받음’이 각각 7.5%(16가구), 6.8%(9가구)로 나타났고,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부모 또는 자식에게 도움받음’과 ‘친지나 친구에게 도움받음’이 동일하게 7.5%(9가구)로 나타남

〈표 5-64〉 지난 1년간 의료비 총당방식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생활비로	162 (76.4)	105 (79.5)	90 (75.0)
저축이용	1 (0.5)	1 (0.8)	-
전세비를 줄여서	4 (1.9)	1 (0.8)	3 (2.5)
재산처분으로	1 (0.5)	1 (0.8)	1 (0.8)
부모 또는 자식에게 도움받음	14 (6.6)	8 (6.1)	9 (7.5)
민간보험으로	1 (0.5)	1 (0.8)	-
친지나 친구에게 도움받음	16 (7.5)	9 (6.8)	9 (7.5)
금융기관대출	2 (0.9)	-	1 (0.8)
사채 등 빚으로	2 (0.9)	1 (0.8)	1 (0.8)
기타	9 (4.2)	5 (3.8)	6 (5.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주 1: 높은 금액 순임

2: 의료비 총당방식 기타-정부의료비지원, 차상위혜택, 병원안감, 의료급여 혜택, 종교단체 등

7) 사회보장수혜

- 조사대상 가구에 최근 1년 동안 가구기준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서비스)을 받은 경험여부와 함께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정도(1점 전혀 필요없음 ~ 5점 매우 필요함)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조사항목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및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으며, 현물지원(서비스)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현금지원 항목 중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9.4%(20가구), 7.6%(10가구), 8.3%(10가구)였으며, 생계비 지원 필요성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4.63점, 4.61점, 4.61점으로 나타남
 - 현금지원 항목 중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7.0%(36가구), 17.4%(23가구), 12.5%(15가구)였으며, 의료비 지원 필요성은 각각 평균 4.58점, 4.55점, 4.59점으로 나타남
 -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3.8%(8가구), 0.8%(1가구), 3.3%(4가구)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교육비 지원 필요성은 각각 평균 2.15점, 1.81점, 2.12점으로 나타남

-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25.9%(55가구), 25.8%(34가구), 25.0%(30가구)로 나타났으며, 주거비 지원 필요성 평균은 각각 4.30점, 4.21점, 4.27점으로 나타남
-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급여와 해산급여는 전체가구 중 각각 1가구(0.5%), 장제급여 지원경험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활급여 지원 필요성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2.82점, 2.69점, 2.72점이었고, 해산급여 지원 필요성 평균은 각각 1.85점, 1.80점, 1.92점이었으며, 장제급여 지원 필요성 평균은 각각 2.69점, 2.68점, 2.63점으로 나타남
- 현금지원 항목 중 생계, 생업 등 대출/융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0.9%(2가구), 0.8%(1가구), 0.8%(1가구)로 거의 없었으며, 지원 필요성 평균은 각각 2.74점, 2.54점, 2.63점으로 나타남
- 현물지원 및 서비스 지원 항목에 대한 항목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물지원 항목 중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38.7%(82가구), 41.7%(55가구), 39.2%(47가구)로 나타났으며, 물품지원 서비스 필요성 평균은 각각 4.34점, 4.33점, 4.38점으로 나타남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등)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2.4%(5가구), 3.8%(5가구), 4.2%(5가구)로 나타났으며, 가정봉사 서비스 지원 필요성 평균은 각각 3.34점, 3.50점, 3.32점으로 나타남
 - 주택서비스(집수리, 도배 등)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 중 0.9%(2가구)로 노인가구주 가구도 이에 해당함
 - 주택서비스 지원 필요성 평균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3.06점, 3.07점, 3.09점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 각각 0.9%(2가구), 0.8%(1가구)이었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등 지원 필요성 평균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2.43점, 2.08점, 2.21점으로 나타남
 -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 중 0.5%(1가구)로 여성가구주 가구도 이에 해당함

- 상담 지원 필요성 평균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1.97, 1.78점, 1.93점으로 나타남
- 현물지원 및 서비스 지원 중 ‘알코올(약물) 등에 관한 상담’,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자녀양육/교육 부모상담, 부모교육’, ‘각종 대출, 융자 상담서비스’의 경우 조사 대상 가구 모두 지원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지원 필요성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현금지원 서비스 중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생계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자활급여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물지원 및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항목 순위는 물품지원 > 가정봉사 > 주택서비스 > 직업 훈련 등 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65〉 최근 1년간 정부 및 공공(민간)기관 등의 지원경험 여부 및 지원 필요성

(단위 : 가구, %, 점/표준편차)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현금지원	생계비 지원	있음	20 (9.4)	10 (7.6)	10 (8.3)
		없음	192 (90.6)	122 (92.4)	110 (91.7)
		필요성 (점)	4.63 (.557)	4.61 (.534)	4.61 (.539)
	의료비 지원	있음	36 (17.0)	23 (17.4)	15 (12.5)
		없음	176 (83.0)	109 (82.6)	105 (87.5)
		필요성 (점)	4.58 (.606)	4.55 (.622)	4.59 (.587)
	교육비 지원	있음	8 (3.8)	1 (0.8)	4 (3.3)
		없음	204 (96.2)	131 (99.2)	116 (96.7)
		필요성 (점)	2.15 (1.604)	1.81 (1.436)	2.12 (1.562)
	주거비 지원	있음	55 (25.9)	34 (25.8)	30 (25.0)
		없음	157 (74.1)	98 (74.2)	90 (75.0)
		필요성 (점)	4.30 (1.003)	4.21 (1.084)	4.27 (1.043)
	자활급여 지원	있음	1 (0.5)	0 (0.0)	1 (0.8)
		없음	211 (99.5)	132 (100.0)	119 (99.2)
		필요성 (점)	2.82 (1.492)	2.69 (1.504)	2.72 (1.473)
해산급여	있음	1 (0.5)	0 (0.0)	1 (0.8)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지원	없음	211 (99.5)	132 (100.0)	119 (99.2)	
		필요성 (점)	1.85 (1.241)	1.80 (1.182)	1.92 (1.300)	
	장제급여 지원	있음	0 (0.0)	0 (0.0)	0 (0.0)	
		없음	212 (100.0)	132 (100.0)	120 (100.0)	
		필요성 (점)	2.69 (1.396)	2.68 (1.405)	2.63 (1.378)	
	생계, 생업 등 대출/용자	있음	2 (0.9)	1 (0.8)	1 (0.8)	
		없음	210 (99.1)	131 (99.2)	119 (99.2)	
		필요성 (점)	2.74 (1.426)	2.54 (1.350)	2.63 (1.415)	
	현물 지원 및 서비스 지원	물품지원 (식료품, 의류 등)	있음	82 (38.7)	55 (41.7)	47 (39.2)
			없음	130 (61.3)	77 (58.3)	73 (60.8)
			필요성 (점)	4.34 (.836)	4.33 (.852)	4.38 (.789)
		가정봉사 서비스 (청소, 세탁 등)	있음	5 (2.4)	5 (3.8)	5 (4.2)
없음			207 (97.6)	127 (96.2)	115 (95.8)	
필요성 (점)			3.34 (1.295)	3.50 (1.251)	3.32 (1.366)	
주택서비스 (집수리, 도배 등)		있음	2 (0.9)	2 (1.5)	0 (0.0)	
		없음	210 (99.1)	130 (98.5)	120 (100.0)	
		필요성 (점)	3.06 (1.356)	3.07 (1.360)	3.09 (1.390)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있음	2 (0.9)	1 (0.8)	0 (0.0)	
		없음	210 (99.1)	131 (99.2)	120 (100.0)	
		필요성 (점)	2.43 (1.394)	2.08 (1.252)	2.21 (1.289)	
상담 (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있음	1 (0.5)	0 (0.0)	1 (0.8)		
	없음	211 (99.5)	132 (100.0)	119 (99.2)		
	필요성 (점)	1.97 (1.221)	1.78 (1.155)	1.93 (1.179)		
알코올(약물) 등에 관한 상담	있음	0 (0.0)	0 (0.0)	0 (0.0)		
	없음	212 (100.0)	132 (100.0)	120 (100.0)		
	필요성 (점)	1.49 (.770)	1.43 (.764)	1.51 (.810)		
학대 혹은	있음	0 (0.0)	0 (0.0)	0 (0.0)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가정폭력 상담	없음	212 (100.0)	132 (100.0)	120 (100.0)
	필요성 (점)	1.45 (.743)	1.36 (.669)	1.47 (.777)
자녀양육/교육 부모상담, 부모교육	있음	0 (0.0)	0 (0.0)	0 (0.0)
	없음	212 (100.0)	132 (100.0)	120 (100.0)
	필요성 (점)	1.53 (.851)	1.38 (.694)	1.50 (.810)
각종 대출, 용자 상담 서비스	있음	0 (0.0)	0 (0.0)	0 (0.0)
	없음	212 (100.0)	132 (100.0)	120 (100.0)
	필요성 (점)	1.66 (.958)	1.46 (.756)	1.62 (.891)

주: 만족도-5점 만점(1점: 전혀 필요없음 ~ 5점: 매우 필요함)

- 최근 1년 동안 가구가 지원받은 기관의 종류와 함께 해당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 생활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1점 전혀 도움 안됨 ~ 5점 매우 도움됨)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부 및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도움 정도의 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시청 혹은 구청>그 외 공공기관>그 외 민간기관>동주민센터>복지관 순으로 나타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도움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시청 혹은 구청’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22.6%(48가구), 28.8%(38가구), 24.2%(29가구)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은 가구가 느낀 도움 정도는 각각 평균 4.79점, 4.87점, 4.83점으로 높게 나타남
 -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71.2%(151가구), 75.8%(100가구), 71.7%(86가구)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은 가구가 느낀 도움 정도는 각각 평균 4.35점, 4.32점, 4.37점으로 나타남
 -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4.2%(30가구), 18.2%(24가구), 15.8%(19가구)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는 각각 평균 4.17점, 4.17점, 4.21점으로 나타남

- ‘그 외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3.3%(7가구), 3.8%(5가구), 3.3%(4가구)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는 각각 평균 4.57점, 4.80점, 4.75점으로 나타남
- ‘그 외 민간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2.3%(26가구), 11.4%(15가구), 11.7%(14가구)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는 각각 평균 4.50점, 4.60점, 4.57점으로 나타남

〈표 5-66〉 최근 1년간 정부 및 공공(민간)기관 등 지원기관 종류 및 도움 정도

(단위 : 가구, %, 점/표준편차)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시청 혹은 구청	있음	48 (22.6)	38 (28.8)	29 (24.2)
	없음	164 (77.4)	94 (71.2)	91 (75.8)
	도움정도 (점)	4.79 (.544)	4.87 (.414)	4.83 (.468)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있음	151 (71.2)	100 (75.8)	86 (71.7)
	없음	61 (28.8)	32 (24.2)	34 (28.3)
	도움정도 (점)	4.35 (.568)	4.32 (.584)	4.37 (.575)
복지관	있음	30 (14.2)	24 (18.2)	19 (15.8)
	없음	182 (85.8)	108 (81.8)	101 (84.2)
	도움정도 (점)	4.17 (.379)	4.17 (.381)	4.21 (.419)
그 외 공공기관	있음	7 (3.3)	5 (3.8)	4 (3.3)
	없음	205 (96.7)	127 (96.2)	116 (96.7)
	도움정도 (점)	4.57 (.787)	4.80 (.447)	4.75 (.500)
그 외 민간기관	있음	26 (12.3)	15 (11.4)	14 (11.7)
	없음	186 (87.7)	117 (88.6)	106 (88.3)
	도움정도 (점)	4.50 (.583)	4.60 (.507)	4.57 (.514)

주: 도움정도-5점 만점(1점: 전혀 도움 안됨 ~ 5점: 매우 도움됨)

- 조사당시 기준으로 조사대상 가구에서 정부 또는 시청(구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조금 (현금)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사당시 기준으로 정부 또는 시청(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현금)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가구 84.9%(180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99.2%(131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86.7%(104가구)로 조사대상 가구의 거의 대부분이 현금성 보조금을 수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67〉 현재 정부, 또는 시청(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현금) 수혜여부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수혜여부	있음	180 (84.9)	131 (99.2)	104 (86.7)
	없음	32 (15.1)	1 (0.8)	16 (13.3)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 다음은 조사당시 기준으로 정부 또는 시청(구청)으로부터 보조금(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 종류와 월평균 보조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보조금 종류와 보조금액은 가구 및 가구원 개별지원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 결과임
 - 정부 또는 시청(구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현금) 종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기초연금으로 보조금 수혜가구 전체기준으로 65.1%(138가구),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99.2%(131가구), 71.7%(86가구)로 나타남
 - 기초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기초연금 월평균 금액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33.09만원, 33.11만원, 30.97만원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다음으로 지원받는 비율이 높은 보조금(현금)은 주거급여(주거비, 주거수당 등)로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16.5%(35가구), 15.2%(20가구), 17.5%(21가구)로 나타남
 -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급여 월평균 금액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14.91만원, 13.40만원, 14.81만원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주거급여 다음으로 지원받는 비율이 높은 보조금(현금)은 장애수당으로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8.0%(17가구), 4.5%(6가구), 7.5%(9가구)로 나타남
 - 장애수당 월평균 금액은 전체가구 및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가구 각각 평균 19.06만원, 15.67만원, 8.89만원으로 나타남

〈표 5-68〉 현재 정부, 또는 시청(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현금) 종류 및 월평균 금액

(단위 : 가구, %, 만원, 표준편차)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기초연금	빈도	138 (65.1)	131 (99.2)	86 (71.7)
	평균(만원)	33.09 (7.820)	33.11 (7.759)	30.97 (4.241)
주거급여(주거비, 주거수당 등)	빈도	35 (16.5)	20 (15.2)	21 (17.5)
	평균(만원)	14.91 (8.424)	13.40 (5.325)	14.81 (7.672)
장애수당	빈도	17 (8.0)	6 (4.5)	9 (7.5)
	평균(만원)	19.06 (22.692)	15.67 (18.530)	8.89 (14.667)
국민연금	빈도	10 (4.7)	10 (7.6)	5 (4.2)
	평균(만원)	28.90 (16.347)	28.90 (16.347)	23.4 (8.385)
쌀 구입비	빈도	10 (4.7)	7 (5.3)	6 (5.0)
	평균(만원)	2.20 (.789)	1.86 (.690)	1.83 (.753)
교육비	빈도	5 (2.4)	0 (0.0)	3 (2.5)
	평균(만원)	12.60 (6.025)	- -	12.67 (4.041)
기타	빈도	47 (22.2)	18 (13.6)	17 (14.2)

주 1: 전체 대상자 기준 지원받는 보조금(현금) 종류의 빈도순으로 나열(중복지원이 반영된 결과임)

2: 보조금 기타-교육비, 긴급복지지원금, 독립유공자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에너지감면, 통신비감면 등

3: 기타 항목에는 다수의 감면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평균금액을 제시하지 않음

8) 복지인식

- 복지인식은 국가의 복지, 제도 또는 복지현상에 대해 가지는 가치, 신념,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사대상 가구주가 인식하는 우리나라 복지현황 및 복지제도 등에 대한 문항들을 조사함
- 복지인식과 관련하여 4인 가구(부부와 두 자녀)를 기준으로 월평균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생활비 기준은 주거와 난방, 자녀교육, 공과금 납부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포함함
 - 4인 가구 기준 최소한의 필요 생활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 가구주와 노인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모두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가구주가 각각

43.9%(93명), 49.2%(65명), 45.0%(5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5-69〉 4인가구 최소필요 생활비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150만원 미만	0 (0.0)	0 (0.0)	0 (0.0)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 (4.7)	5 (3.8)	4 (3.3)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93 (43.9)	65 (49.2)	54 (45.0)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0 (33.0)	40 (30.3)	39 (32.5)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32 (15.1)	17 (12.9)	18 (15.0)
350만원 이상	7 (3.3)	5 (3.8)	5 (4.2)
잘 모르겠음	0 (0.0)	0 (0.0)	0 (0.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주: 4인가구-부부와 두 자녀

- 다음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내집 마련, 자녀결혼, 노후대비 등을 위해 월평균 최소한 얼마정도의 저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임
 - 전체가구 가구주와 노인가구주의 경우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의 저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주가 각각 39.2%(83명), 42.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가구주의 경우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가구주가 40.8%(49명)로 가장 많았음

〈표 5-70〉 4인가구 최소필요 저축액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30만원 미만	15 (7.1)	10 (7.6)	6 (5.0)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76 (35.8)	50 (37.9)	49 (40.8)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83 (39.2)	56 (42.4)	42 (35.0)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2 (15.1)	15 (11.4)	20 (16.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 (1.9)	0 (0.0)	1 (0.8)
200만원 이상	2 (0.9)	1 (0.8)	2 (1.7)
잘 모르겠음	0 (0.0)	0 (0.0)	0 (0.0)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주: 4인가구-부부와 두 자녀

- 65세 이상 1인 노인가구(독거노인)이 소득이 전혀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가구와 여성가구주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데 반해 노인가구주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가구 가구주는 최소한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주가 49.1%(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27.8%(59명),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7.5%(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주는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이 53.8%(7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3.5%(31명), '30만원 미만' 19.7%(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이 52.5%(6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25.8%(31명),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6.7%(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71〉 독거노인 최소필요 생활비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	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30만원 미만	0 (0.0)	26 (19.7)	0 (0.0)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37 (17.5)	71 (53.8)	20 (16.7)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4 (49.1)	31 (23.5)	63 (52.5)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59 (27.8)	3 (2.3)	31 (25.8)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9 (4.2)	0 (0.0)	4 (3.3)
200만원 이상	2 (0.9)	0 (0.0)	1 (0.8)
잘 모르겠음	1 (0.5)	1 (0.8)	1 (0.8)
계	212 (100.0)	132 (100.0)	120 (100.0)

- 다음은 조사대상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보장 및 복지지출 등과 관련된 각각의 항목별 복지인식에 대한 조사결과임
 - '국가는 소득격차를 줄여야할 책임이 있다'에 대한 조사결과, '약간 그렇다'가 37.3%(7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32.1%(68명), '별로 그렇지 않다' 16.0%(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가는 기초적인 주거보장의 책임이 있다'에 대한 조사결과, '매우 그렇다'가 전체 40.6%(8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 31.6%(67명), '보통'

- 21.7%(4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가는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매우 그렇다’가 34.4%(7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 32.5%(69명), ‘보통’ 23.6%(5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가는 실직자의 기초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약간 그렇다’가 42.5%(9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38.7%(82명), ‘보통’ 11.3%(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보통’이 29.7%(6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 28.8%(61명), ‘별로 그렇지 않다’ 19.8%(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에 대한 조사결과, ‘보통’이 29.7%(6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 28.8%(61명), ‘약간 그렇다’ 17.5%(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약간 그렇다’가 34.0%(7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32.1%(68명), ‘보통’ 19.8%(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빈곤 및 소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약간 그렇다’가 35.4%(7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 32.1%(68명), ‘매우 그렇다’ 18.4%(3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72〉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는 소득격차를 줄여야할 책임이 있다	68 (32.1)	79 (37.3)	27 (12.7)	34 (16.0)	4 (1.9)
국가는 기초적인 주거보장의 책임이 있다	86 (40.6)	67 (31.6)	46 (21.7)	12 (5.7)	1 (.5)
국가는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73 (34.4)	69 (32.5)	50 (23.6)	17 (8.0)	3 (1.4)
국가는 실직자의 기초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82 (38.7)	90 (42.5)	24 (11.3)	12 (5.7)	4 (1.9)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건어야 한다	37 (17.5)	61 (28.8)	63 (29.7)	42 (19.8)	9 (4.2)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	22 (10.4)	37 (17.5)	63 (29.7)	61 (28.8)	29 (13.7)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	68 (32.1)	72 (34.0)	42 (19.8)	27 (12.7)	3 (1.4)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빈곤 및 소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9 (18.4)	75 (35.4)	68 (32.1)	27 (12.7)	3 (1.4)

- 우리 사회의 빈곤 원인에 대한 조사대상 가구주의 인식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빈곤 원인으로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에 대한 조사결과 '매우 중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9%(110명)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은 '약간 중요함'이 25.0%(53명)로 가장 많았음
 -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과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에 대한 조사결과 두 항목 모두 동일하게 '매우 중요함'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47.2%(100명), 50.5%(107명)로 나타남
 -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에 대한 응답은 '약간 중요함'이 46.7%(99명)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의 경우 '매우 중요함'이 39.6%(84명)로 가장 많았음
 -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과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에 대한 조사결과 두 항목 모두 '매우 중요함'이 각각 55.2%(117명), 39.2%(8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과 '빈곤층 및 일부 진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항목 모두 '매우 중요함'이 각각 56.6%(120명), 50.9%(108명), 51.9%(11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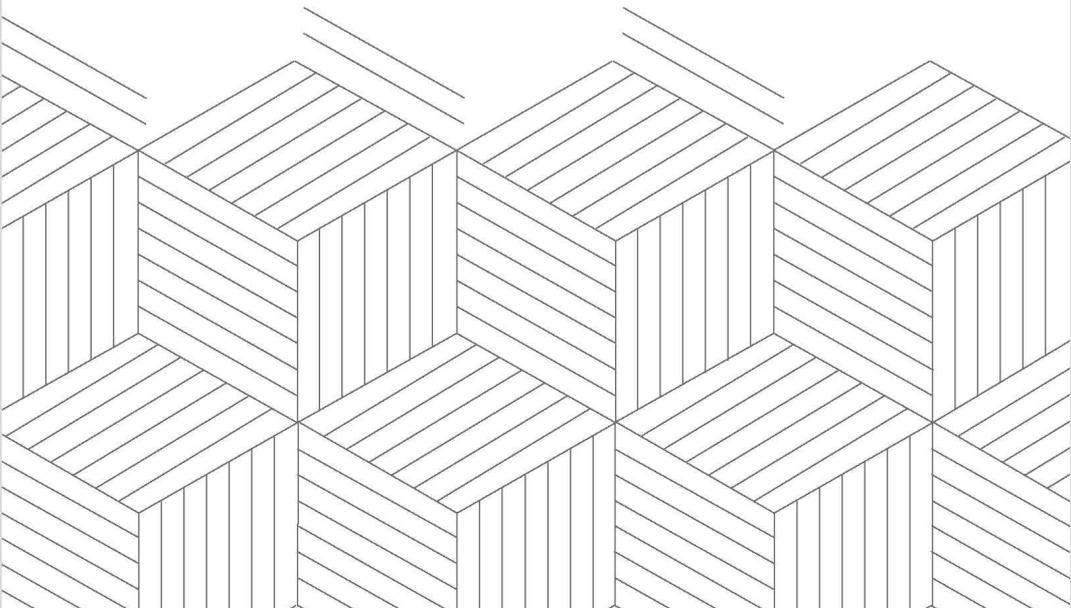
〈표 5-73〉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110 (51.9)	66 (31.1)	31 (14.6)	5 (2.4)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5 (2.4)	53 (25.0)	39 (18.4)	9 (4.2)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100 (47.2)	57 (26.9)	45 (21.2)	10 (4.7)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107 (50.5)	68 (32.1)	32 (15.1)	5 (2.4)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96 (45.3)	99 (46.7)	16 (7.5)	1 (.5)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84 (39.6)	66 (31.1)	43 (20.3)	19 (9.0)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117 (55.2)	66 (31.1)	25 (11.8)	4 (1.9)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83 (39.2)	78 (36.8)	43 (20.3)	8 (3.8)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120 (56.6)	77 (36.3)	13 (6.1)	2 (.9)
빈곤층 및 일부 진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108 (50.9)	67 (31.6)	34 (16.0)	3 (1.4)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110 (51.9)	66 (31.1)	33 (15.6)	3 (1.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하였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수원형 기초보장제도의 도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쟁점 및 변화

-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적인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28차 개정(2019.9월까지)을 시도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제 및 재산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제도 간의 연계성’, ‘주거급여의 적정성’,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로 인한 사각지대’ 등의 한계가 나타남
- 이에 정부는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동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을 밝힘
 - 4인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 약 40,691원 증액,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선은 44%에서 45%로 확대, 교육급여는 초·중·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1.4%로 인상할 계획임
 -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통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수립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한겨레, 2019.04.16.)
 - 제2차 종합계획(‘21~’23)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예정임(복지로, 2019.07.30.)

2)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한계

- 맞춤형 급여개편 전후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함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빈곤 사각지대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 지역에서는 동일하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동반적 변화, 2) 소득 역전 현상, 3)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빈곤 사각지대 발생, 4) 사각지대 발굴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의 실효성 등이 한계로 나타남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와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결국 빈곤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될 때마다 동반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체계임
 - 수급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될수록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실질적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밖에 없음

3) 수원시 저소득 현황 및 지원정책의 특성

- 맞춤형 급여개편 이후인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1.5%~1.7%로 전국(3.1~3.6%)과 경기도(2.0~2.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수원지역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가 타가구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은 65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수원시에서 수급자 및 저소득을 위한 지원정책은 총 88개(384,744,519천원)로 나타남
 - 2019년 수원시 정책 중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출한 결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의해 시행되는 의무정책은 70개(383,925,890천원), 수원시 자체 정책은 18개(818,629천원)로 나타남

4) 수원시 빈곤 사각지대의 특성 및 욕구분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원시 빈곤 취약가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 노인 가구주가 가장 많았으며, 소득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이 신청탈락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 탈락가구주의 연령대는 매년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40대 신청탈락 가구 가구주는 2016~2018년에 비해 증가함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주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탈락 사유가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파악되며, 노인가구주 가구는 대부분 1인가구로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음
 - 신청탈락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 수가 더 많았고, 소득의 대부분은 이전소득 중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 수급 탈락 가구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45.5%에 달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원시 비수급가구에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
 - 수원시 비수급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 후 생계유지 방법은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하거나 ‘부양의무자의 지원’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조사됨
 -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월평균 45.7만원)에 비해 생활비 지출(월평균 81.2만원)이 약 1.5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특히 생활비 지출 중 부담항목은 ‘식료품비’ 구입과 ‘의료비’가 대다수를 차지함
 -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이 겪는 어려움 중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가구는 5.2%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42.0%에 이르렀고, 그 주된 이유의 85.4%가 ‘진료비 부담’ 때문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현물 및 서비스 지원보다 현금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았으며, 그 중 생활비와 의료비 현금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음

2.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1) 고려사항

- 수원시에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의 인력 및 예산 등의 투입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1) 인력 확대 및 조직의 신설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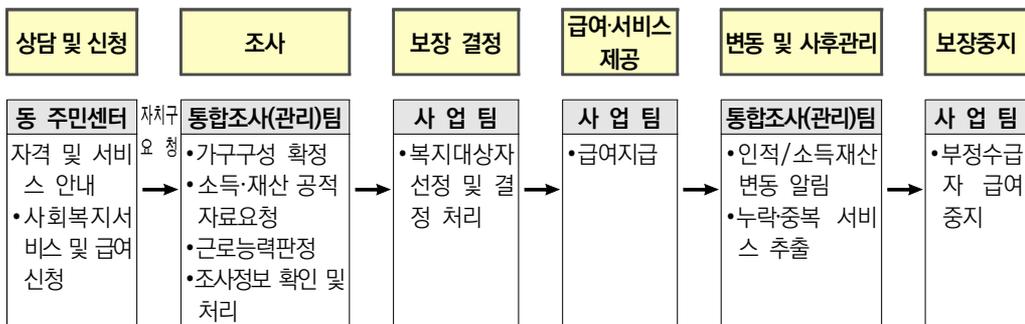
- 수원시에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이를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대상자의 발굴 및 신청을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여 신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였고, 현재도 전담인력이 배치됨
 -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발굴함

〈표 6-1〉 2013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시 인력 확충사항

인력 확충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복지인력 확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사회복지직 정원 순증 및 행정직 공무원 재배치 등 총 591명 확충 - 2013년 총 300명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소요예산: 3,027백만원) - 초기상담과 조사안내 임시 보조인력 475명(자치구 1~4명, 동 1명) 3개월(13.6~8월) 확충(소요예산: 1,911백만원)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업무팀장 및 직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팀장·실무자(2명 이상), 423개동 복지담당(1명 이상): 총 500여명 2회
-------------------------	--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그림 6-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업무 프로세스



주: 별도의 업무분장이 된 경우 업무 분장한 바에 따라 추진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2)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가능성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도입·운영과정에서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인건비, 홍보비, 기초보장급여비, 시스템 운영비 등이 필요함
 - 2020년 기준, 자체 재원으로 서울시는 19,935백만원, 부산 875백만원, 광주 575백만원을 편성함

〈표 6-2〉 2020년 지자체별 기초보장제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항목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계	19,935,000	875,000	575,000
기초보장급여	19,700,340	800,000	500,000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1,000	75,000	75,000
기타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	43,200	-	-

주: 부산 및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예산항목 중 기타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관련 소요예산은 확인되지 않음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020).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2020). 2020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계획, 광주광역시(2020). 2020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확정내시 및 교부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서울시의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6-3〉 2020~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요예산(추계)

(단위 : 명, %)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자	수급률	수급규모	급여액 (천원)	소요예산 (백만원)	시행시기	
1단계	소계	28,214	-	12,386	220	19,087		
	기존 수급	4,712	100%	4,712	220	12,439		
	신규	중증장애인	1,300	61.5%	800	220	2,110	'20.1~
		75세 이상	22,914	30%	6,874		4,537	'20.10~
2단계	소계	21,673	-	15,172	220	40,053		
	기존 수급	12,386	100%	12,386	220	32,698	'21.1~	
	신규 70세 이상	9,287	30%	2,786	220	7,355	'21.1~	
3단계	소계	54,172	-	26,985	220	71,239		
	기존 수급	15,172	100%	15,172	220	40,053	'22.1~	
	신규 65세 이상	39,377	30%	11,813	220	31,186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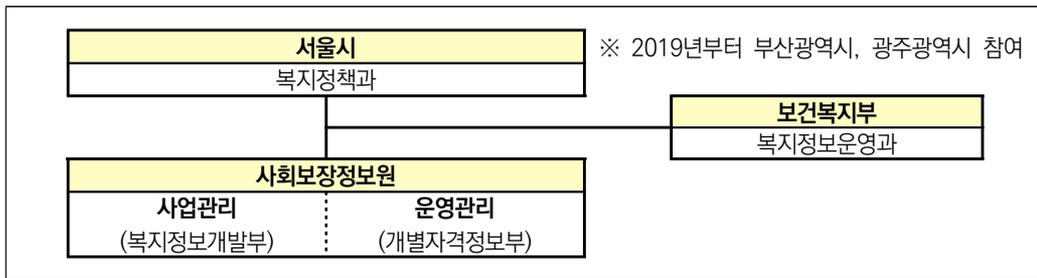
주 1: 20~22년 소요예산(추계)-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대규모 예산 소요 추계(3개년 계획추진)

2: 산출-신규수급률(30%) 및 서울형기초수급자 평균급여액의 월평균을 곱하여 산출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020).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 기초보장제도 운영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53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보장제도 전산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위탁함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2019)
- 서울시(복지정책과): 사업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회보장정보원)
- 보건복지부(복지정보운영과):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 및 관계 기관 협의
- 사회보장정보원(복지정보개발부, 개별자격정보부): 수탁사업 사전협의 및 운영계획 수립, 변경관리 등 행정사항

〈그림 6-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추진체계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시스템 운영 계획

- 현재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시스템은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운영비를 지불함
- 시스템 운영 예산(지원): 총 416백만원(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기획부-83(2020.1.8.)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는 운영비를 각각 분담하여 지출함

〈표 6-4〉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시스템 운영 분담비(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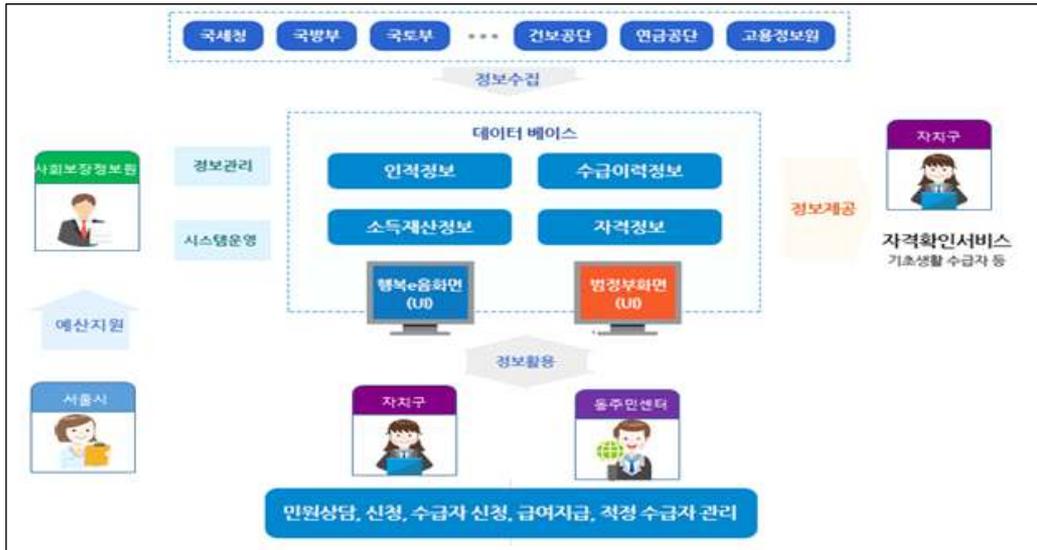
(단위 : 원)

시도	수급자 비율(%)	기본분담(60%)	수급자분담(40%)	합 계
소 계		249,858,600	166,572,400	416,431,000
서울특별시	77.62	62,464,650	129,280,072	191,744,722
부산광역시	7.46	62,464,650	12,430,776	74,895,426
광주광역시	7.46	62,464,650	12,430,776	74,895,426
전라북도	7.46	62,464,650	12,430,776	74,895,426

주: 대상 가구 수 비율로 지자체별 분담(지원)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020).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그림 6-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스템 운영 업무 흐름도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시스템 운영 계획

(3) 수원시 지원정책 및 대상자의 중복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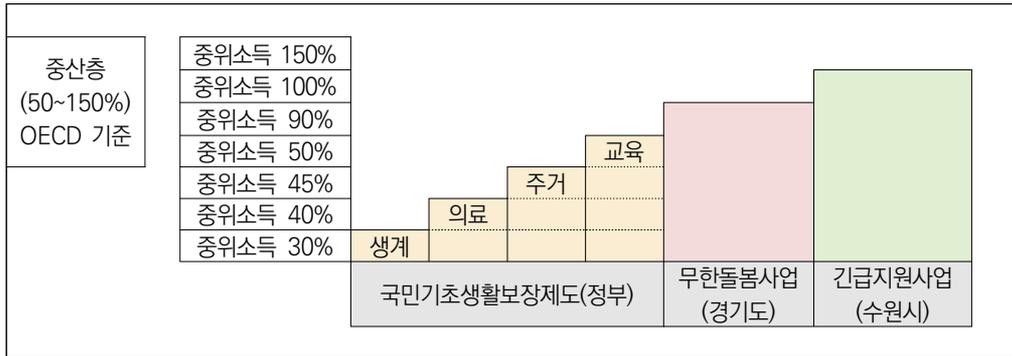
- 수원시에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와 유사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과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긴급지원 사업이 있어 이들과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선정할 때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원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지원대상을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적 검토가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무한돌봄사업, 긴급지원 사업이 서로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무한돌봄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함
 - 경기도는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1월 15일부터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3가지 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을 완화함

〈표 6-5〉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확대 내용

구분	종전(2019년)	개편(2019.11.15)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150백만원 이하(군 지역 95만원)	242백만원 이하(군 지역 152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자료: 수원시(2019). 202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그림 6-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한돌봄사업, 수원시 긴급지원사업 대상자의 중위소득



주: 대상자의 중위소득 기준만 제시

〈표 6-6〉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긴급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기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편성예산	20,000,000(2019년 기준)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의 100%이하의 공적지원이 불가한 위기가구 지원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기타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 된 자 ※ 위기상황의 정의는 경기도 무한돌봄사업과 동일하나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 인정하는 조항만 추가														
지원내용	생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가구당 200만원 한도) (단위: 천원/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가구규모</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r> </thead> <tbody> <tr> <td>지원금액</td> <td>440</td> <td>750</td> <td>970</td> <td>1,190</td> <td>1,410</td> <td>1,630</td> </tr> </tbody> </table> ※ 7인 이상가구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21,000원씩 추가지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40	750	970	1,190	1,410	1,630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40	750	970	1,190	1,410	1,630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구분	내용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200만원 한도 - 기 납부한 금액, 상급병실이용료, 선택 진료비 등 생명의 유지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음. -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의 비 급여 항목의 지원만 가능함 - 생명유지와 관련 없는 상급병실이용료, 선택적 진료비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진단서등에 선택 진료비 등 불가피한 사유명시필요) - 공적지원서비스를 받기위한 준비 비용 - 기초생활수급 진행을 위한 2개월 병원 입원 시 사례관리기관에서 1개월 지원 후 2개월째 비용 -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6개월간 통원치료비 등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200만원 한도(LH임대주택 보증금 300만원 한도) - 체납된 월세 액,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LH 임대주택 거주대상자의 생계곤란에 따른 3개월 이상 체납된 월세액 - LH 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보증금마련이 어려운 세대 											
그밖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동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단위: 천원/회) <table border="1" data-bbox="454 940 1160 1005"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가구규모</th> <th style="width: 25%;">월동난방비</th> <th style="width: 25%;">해산비</th> <th style="width: 25%;">장제비</th> </tr> </thead> <tbody> <tr> <td>지원금액</td> <td>500</td> <td>1,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가구규모	월동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금액	500	1,000	1,000
가구규모	월동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금액	500	1,000	1,00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결정											
지원절차	동 주민센터 긴급지원요청 ⇒ 공적지원 유무 파악 ⇒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의뢰 ⇒ 휴먼서비스센터 긴급선정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 대상자 지급											

자료: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내부자료

2)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안적 성격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좀 더 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 제도이기 때문에 빈곤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존립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약해질 것으로 예측됨

- 현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폐지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제도가 될 수 밖에 없음
- 이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되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충족되어 탈락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면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의 일부는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것으로 예측됨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는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서울시처럼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를 위해 자체적으로 별도의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구조이며, 가용예산도 부족하고, 행정적 투입 대비 실효성도 낮을 것으로 예측됨
- 별도 인력충원이 되지 않으면 기존인력이 수원형 기초보장제도의 업무를 부가적으로 맡아야 하는 상황임
 - 수원시에서는 이미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에서 최소 1명~최대 2명의 전담 인력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통합조사관리 1·2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 대상자 신규 발굴 및 지급, 개편 등 막대한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도 낮음
- 또한 수원시에는 이미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와 유사한 경기도 무한돌봄이나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긴급지원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자 또한 중복적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의 특성,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외부환경 변화,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시 수원시의 인력 및 예산투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 시점을 기준으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함

제2절 정책제언

- 현 시점에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비수급 빈곤층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필요함
- 이에 본 절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1.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 빈곤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분담하여 다층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정부는 실제 시장소득 기준을 반영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급여 선정기준 적용과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로 1차적인 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함
 - 지방정부는 민관 협력,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지역특성과 빈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여 비수급 빈곤층 발굴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이기 때문에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현금급여 지급을 넘어서 지역사회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방법적 한계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도를 마련 중에 있음
 -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9개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 신중 위기변수를 반영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 추가 연계 필요(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도 추가 입수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 임차료 체납정보 등)(보건복지부, 2019)
 - 정부: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예정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행복e음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전면 재구조화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모색(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의 한계(최현수, 2020))
 -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정보, 수급이력 정보 공유
 - 사회보장정보원: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데이터에 적용해 대상자 발굴률 향상을 위한 연구 진행
 - 축적된 데이터(과거 이력 등) 유형의 대상자 정보 분석결과를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공한 후 데이터 변화에 기반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 방문진행 등의 발굴 방안 확장(이우식 외, 2018)
- 수원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위험 예측모형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지원정책의 단계적 확대

- 수원시에서는 이미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과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긴급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지원정책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하여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긴급지원사업과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긴급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동 사업의 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확대하거나, 프로파일 조사결과와 같이 사례관리 체계와 연동해 특정수요에 대한 과감한 지원(예: 의료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경우, 지역사회 병원과 협력체계를 통해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한부모와 40대 가구 등은 근로유인 방안 정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프로파일 결과, 수원시 비수급 탈락자 중 1인 노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많고 앞으로 노인의 수명 또한 연장되어 노인의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노인가구는 사실상 '일하는 수급제도'를 통한 탈빈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여를 제공하는 일방향 지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반면 한부모, 여성가구주, 청년가구 등은 근로 인센티브 확대나 자산형성을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최근 지자체별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을 신설하여 차상위 계층 대상의 합리적인 근로유인 방안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3.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과 지원정책을 연계한 복지플랫폼 구축

- 수원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소 등에서 총 88개 정책, 384,744,519천원이 지원되고 있음
 - 공적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빈곤층을 위한 지원정책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민관의 지원정책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담당부서 및 기관별로 지원되고 있어 서비스가 누락되고 비효율적으로 전달됨
 - 현재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가 직접 알아보고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원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적 전달체계 과정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 이에 수원시에서는 지역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비수급 빈곤층과 지원정책 등을 연계한 수원시 복지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수원시 비수급 빈곤층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작업 후 그 특성에 따른 데이터들은 연계하여 수원시 복지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함
 -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정책을 개발하거나 중복을 방지하는데 용이하고, 즉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적재적소 지원할 수 있어 효율적임
 - 플랫폼을 통해 민관의 지원정책(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정책의 개발 및 중복방지, 개인별 지원계획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연계가 가능함
 - 제도적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측면의 빅데이터 활용이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과 같은 동시적 지원도 필요함
 - 예를 들어 위기가구 유형 및 집단, 지역별로 세분화된 분류(1인가구, 2인가구 이상, 청년가구, 노인가구 등) 작업을 통해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위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구축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핵심사항은 정보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임

| 참고문헌 |

- 강신욱(2016),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 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pp.20-30
- 강신욱·유진영·이주미(2016), 2016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http://www.gg.go.kr/gg_care/
- 관계부처 합동(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안)
- _____ (201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 교육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의료급여법”, <http://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국민권익위원회(2015), 주택·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
- _____ (201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지원축소 민원 빈발
-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국토교통부 고시(2019),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회예산정책처(2019),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 김경혜(1998),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시연구, 4호, pp.263-278
- 김경혜·장동열(2015),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서울: 서울연구원
- 김서기(2016),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7권 3호, pp.117-140
- 김수신·정홍익(1997),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김승연·이혜림·문진영·한경훈(2018),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김을식·이지혜 (2017),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대상자 선정 및 급여방식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 노대명(2016),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와 경과 그리고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pp.6-19
- 대구광역시(201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_____ (2017), 2017년 시민행복보장제도 사업안내
- 동아일보(2019.10.04.), “'줬다 뺏는' 기초연금...빈곤노인 4만9천명 신청조차 못해”, <http://www.donga.com/>
- 문진영(20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성과와 개선방안, 복지타임즈
- _____ (201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상호발전사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로,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문진영·김미곤·여유진·김진욱·김윤영·이정기·권진·김성은(2014),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박경하·진재문·배지영·김종진·유은경·정주영(2015),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방안 연구,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20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
- 보건복지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_____ (2019),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_____ (2019), 2019 의료급여사업안내
_____ (2019), 2019년 자활사업안내(I)
_____ (2018),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_____ (2018),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_____ (2017),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_____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정보 보고서
_____ (2016),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_____ (2016),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1년...수급자 27% 증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_____ (2015),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2015.07.2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
지 큰 틀 마련", <http://www.mohw.go.kr/>
- 복지로(2019),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http://www.mohw.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부산광역시(2019), 2019년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 부산복지개발원(2016),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도입 방안 연구
- 부산시청(2018),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공약사항 달성 등) 추진실적 보고
_____ (2017), 2017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추진 계획
- 서울특별시(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_____ (2017),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_____ (2016),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_____ (201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시스템 운영 계획
_____ (201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 _____ (2013), 2013년도 정책자료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 손병돈(2019),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275호), pp.32-45
- 손병돈·구인회·노법래·한경훈(2016),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평택대학교·산학협력단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 이승선·김연명(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방안으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의의와 한계, 한국사회정책, 21권 4호, pp.45-79
- 이우식·박선미·이인수(2018),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률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 이정기·문진영(2015),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생명연구, 35권, pp.13-65
- 임완섭(2019),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발생 유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통권 365호), pp.1-12
- 재단법인 동천(2019), 공공부조로서의 주거급여,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가?, 동천칼럼, <http://www.bkl.or.kr/>
- 전재경(1992), 생활보호법제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정은희(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 개선 방안, 보건복지포럼, pp.46-58
- 최현수(2020),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포용과 혁신의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보건복지포럼, (통권 274호), pp.53-61
- 한겨레(2019.04.16.), 박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겠다", <http://www.hani.co.kr/>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2009),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 <https://www.kdata.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2019), "생활보호법",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_____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호, pp.1-8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9), 데이터 프로파일링 절차, <https://www.tta.or.kr/>
- 한은희·노법래·박규범(2018),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증지자 특성 및 재진입 연구, 서울: 사회보장정보원
- e-나라지표 (2019). <http://www.index.go.kr/>

| 부 록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수원시민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 제시를 통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수원시민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중한 의견은 수원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주 관 기 관		수원시정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suwon.re.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구)농업과학도서관 ● 문 의 : 수원시정연구원 한연주 연구위원, 김용희 위촉연구원(031-220-8022)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홈페이지 : http://www.kric.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2 허버허바빌딩 ● 문 의 : 김재현 컨설턴트(02-3415-5111)

가구ID	<input type="text"/>	조사표 ID	<input type="text"/>
Q1.가구주 성명		Q2.가구주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 ___ 세

※ 응답자 일반사항

Q3.주 소	수원시 _____ 구 _____ 동 (세부주소: _____)	Q4. 응답자 성명	
Q5.응답자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Q6.연락처 (휴대전화)	
Q7.응답자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 ___ 세	Q8.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기타()

Q9. 조사일시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소요시간: 총 _____ 분)	조사원 성명	(서명)
Q10. 조사원 확인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		

B6. 귀 가구에서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식료품비 ② 주거비 ③ 교통비 ④ 통신비 ⑤ 교육비 ⑥ 전기수도난방비
 ⑦ 의료비 ⑧ 사회보장부담금 ⑨ 민간보험료 ⑩ 부채 등 이자 ⑪ 기타()

B7. 최근 1년을 기준으로 귀 가구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입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추가 필요금액	항목	추가 필요금액	항목	추가 필요금액
(1) 식료품비	만원	(2) 주거비	만원	(3) 교통비	만원
(4) 통신비	만원	(5) 교육비	만원	(6) 전기수도난방비	만원
(7) 의료비	만원	(8) 사회보장부담금	만원	(9) 민간보험료	만원
(10) 부채 등 이자	만원	(11) 기타	만원	(12) 기타	만원

B8. 최근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분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1)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2)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3)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4)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5)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6) 문화적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①	②	
(7) 빚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8)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자가 또는 무상인 경우 ③ 해당 없음	①	②	③
(9)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자녀가 없는 경우 ③ 해당 없음	①	②	③

C. 자 산

C1. 귀 가구의 현재(2020년 1월) 자산현황을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보유여부	금액	항목	보유여부	금액
일반 재산	(1) 건축물	① 있음 ② 없음	금융 재 산	(1) 저축성예금	① 있음 ② 없음
	(2) 주택	① 있음 ② 없음		(2) 적금·보험	① 있음 ② 없음
	(3) 토지	① 있음 ② 없음		(3) 기타 재산	① 있음 ② 없음
	(4) 기타재산	① 있음 ② 없음			
주거용재산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자동차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 일반재산 (2) 주택: 거주목적 외 주택 등 재산

※ 주거용재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C2. 귀 가구의 현재(2020년 1월) 부채현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부채	① 있음
	② 없음

→ (C1-1 ~ C1-4번 응답) **C2-1. 부채금액**
 → (C2 번으로)

구분	총 부채액
부채금액	총 _____ 만원

C2-2. (부채가 있는 경우만)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부채용도에 대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교육(학자금마련) ② 의료비 ③ 생활비(생계비)
- ④ 주택관련 자금 ⑤ 자동차, 기타 소비물품 구입 ⑥ 관혼상제(결혼, 장례 등)
- ⑦ 사업자금 마련 ⑧ 기타()

C2-3. (부채가 있는 경우만) 최근 1년간 귀 가구의 부채 규모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증가 ② 변화 없음 ③ 감소

C2-4. (부채가 있는 경우만) 귀 가구에서 부채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① 어려움 없음(비해당) ② 이자 및 원금 상환의 어려움
- ③ 불법채권추심 ④ 부동산 등 처분 또는 경매
- ⑤ 압류 경험 ⑥ 기타 ()

C3. 최근 5년간 귀 가구의 가구원 중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 ① 있음 → (C3-1 번으로)
- ② 없음 → (C4 번으로)

C3-1. (가구원 중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 경험자가 있는 경우만) 가구원의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서 귀 가구는 다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항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약간 심함	매우 심함
(1) 가구의 생계유지 및 필수적 지출 곤란	①	②	③	④	⑤
(2) 전화방문을 통한 추심(독촉)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①	②	③	④	⑤
(3) 현 일자리(사업)에 대한 위협	①	②	③	④	⑤
(4) (사업운영 등) 자금운용의 곤란	①	②	③	④	⑤
(5) 외부의 시선(눈총 등)	①	②	③	④	⑤

C4. 귀 가구에서는 향후 재정이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구분	예	아니오
(1)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비해 경제적인 준비(저축, 연금 등)를 하고 있다	①	②
(2) 사회보험 외에 민간보험(의료보험, 생명보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	①	②

→ ① 응답자 C4-1번으로
 → ① 응답자 C4-1번으로

(↳ C4번에서 두 문항 모두 ②번 응답자 D1번으로 이동)

C4-1. (C3의 대비하고 있는 경우만) 향후 재정(경제적인 준비 또는 민간보험 가입)을 대비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노후대비
- ② 질병대비
- ③ 주택자금 마련
- ④ 자식의 결혼대비
- ⑤ 자녀교육비
- ⑥ 기타 집안에 딱칠 큰일에 대비하여
- ⑦ 기타 ()

D. 주거 및 생활환경

D1. 귀하는 주거생활(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등)에 대해 현재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만족

D2. 현재 귀 가구가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합니까?

구분	양호	불량
(1) 영구건물로서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음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2) 적절한 환기 및 채광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3) 적절한 보온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4)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절하다.	①	②
(5)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D3. 현재까지 주거복지와 관련된 다음 보기의 정부지원서비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경험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경험여부'에서 '① 있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만족도'에 체크함

항목	경험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맞춤형임대) 등 주택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근로자·서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D4. 귀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영구임대주택
- ② 공공(국민)임대주택
- ③ 전세자금(용자)지원
- ④ 저소득층 월세지원
- ⑤ 주택개량 및 보수사업
- ⑥ 난방비 지원
- ⑦ 기타 ()

E. 건강

E1. 지난 1년간 귀 가구에서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치과진료 포함)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신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① 예,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음 → (E1-1 ~ E1-2 번으로)
 ② 아니오, 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 (E2 번으로)
 ③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음 → (E2 번으로)

E1-1.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만) 치료를 포기하거나 받지 못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진료비 부담 때문에
 ② 일을 중단하면 수입(소득)이 줄기 때문에
 ③ 시간이 없어서
 ④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어서
 ⑤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⑥ 식구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⑦ 거동이 불편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
 ⑧ 기타()

E1-2.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나 증세가 악화되는 등 현재 생활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 ① 전혀 문제가 없다 ② 거의 문제가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문제가 있는 편이다 ⑤ 매우 문제가 많다

E2. 귀하는 현재 다음 중 어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국민건강보험지역 ② 국민건강보험직장 ③ 의료급여 1종 ④ 의료급여 2종 ⑤ 미가입 ⑥ 모름

E3. 귀 가구에서는 지난 1년간 2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E3-1 번으로) ② 없다 → (E4 번으로)

E3-1.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보험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③ 내는 돈에 비해서 혜택이 적어서
 ④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⑤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
 ⑥ 기타()

E4. 지난 1년간 전반적인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다 ② 거의 부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부담 되었다
 ⑤ 매우 부담 되었다

E5. 지난 1년간 의료비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셨습니다까?

① 생활비로 ② 저축이용 ③ 전세비를 줄여서
 ④ 재산처분으로 ⑤ 부모 또는 자식에게 도움 받음 ⑥ 민간보험으로
 ⑦ 친지나 친구에게 도움 받음 ⑧ 금융기관대출 ⑨ 사채 등 빚으로
 ⑩ 기타()

F. 사회보장수혜

F1. 최근 1년 동안 귀 가구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복지기관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은(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지원 및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십니까?

지원 /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지원 필요성				
		있음	없음	전혀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현금 지원	생계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주거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자활급여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해산급여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현물 지원	장제급여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생계, 생업 등 대출/융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및 서 비 스 지 원	가정봉사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주택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알코올(약물) 등에 관한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자녀 양육/교육의 부모상담, 부모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각종 대출, 융자 상담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F2. 최근 1년 동안 귀 가구는 아래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도움을 받으셨다면 귀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도움 받은 경험여부'에서 '① 있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도움 정도'에 체크함

분 야	도움 받은 경험		도움 정도				
	있음	없음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시청 혹은 구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동주민센터(동사무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복지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그 외 공공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그 외 민간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F3. (현재기준) 귀 가구에서 정부, 또는 시청(구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조금(현금) 종류와 액수를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 (F3-1 번으로)
→ (G1 번으로)

F3-1.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현금) 종류 및 액수

종류	보조금 액수
(1)	월평균 _____ 만원
(2)	월평균 _____ 만원
(3)	월평균 _____ 만원
(4)	월평균 _____ 만원
(5)	월평균 _____ 만원

※ 정부 또는 시청(구청) 지원보조금 종류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지원(i-사랑카드), 긴급복지지원금, 사회서비스바우처, 학비지원(국가장학금 등), 근로장려세제, 에너지 감면 보조, 통신비 감면 및 보조, 세제지원 등

G. 복지인식

G1.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주거와 난방, 자녀교육, 공과금 납부, 사회생활 등에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기 위해 최소한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50만원 미만 ②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④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⑥ 350만원 이상
- ⑦ 기타 () 만원 ⑧ 잘 모르겠음

G2.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내집마련, 자녀결혼, 노후대비, 기타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기 위해 매달 최소한 얼마 정도의 저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0만원 미만 ②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③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④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⑤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⑥ 200만원 이상
- ⑦ 기타 () 만원 ⑧ 잘 모르겠음

G3. 65세 이상 1인 노인가구가 소득이 전혀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의식주, 난방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생활하기 위해 최소한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0만원 미만 ②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③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④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⑤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⑥ 200만원 이상
- ⑦ 기타 () 만원 ⑧ 잘 모르겠음

G4. (현재 기준) 다음 각각의 항목별로 평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귀하의 의견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국가는 소득격차를 줄여야할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국가는 기초적인 주거보장의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국가는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국가는 실직자의 기초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u>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u>	①	②	③	④	⑤
(6)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u>스스로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u>	①	②	③	④	⑤
(7)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u>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u>	①	②	③	④	⑤
(8)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빈곤 및 소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G5.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들이 우리 사회의 빈곤 원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의 의견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①	②	④	⑤
(2)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①	②	④	⑤
(3)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①	②	④	⑤
(4)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①	②	④	⑤
(5)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①	②	④	⑤
(6)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①	②	④	⑤
(7)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①	②	④	⑤
(8)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①	②	④	⑤
(9)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①	②	④	⑤
(10) 빈곤층 및 일부 진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①	②	④	⑤
(11)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①	②	④	⑤

※ 긴 시간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저자 약력 |

한연주

사회복지정책 전공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joanna1118@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2017, 수원시)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증상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 개발 연구」(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사회보장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연구」(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2019, 수원시정연구원)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yalee@suwon.re.kr

김용희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현)

E-mail : yong6645@suwon.re.kr

